교정동우회가
퇴직 교정공무원과 함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연혁

- 1963. 10. 1. 퇴직교정기관장들이 교우회 발족
- 1983. 11. 4. 정부 방침으로 전국규모의 교정동우회 출범
- 2013. 7. 29.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공포 시행

목적

- 회원들의 교정경험과 지식을 공유
- 교정발전에 기여
- 국민들의 법질서 의식 함양, 교정의 선진화 등 공익 실현
-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상부상조 및 친목도모 등

조직

- 임원진 :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대의원
- 지　회 : 36개 지회 (정우회 포함)
- 회　원 : 정회원 3,630여명
  ※ 명예회원 : 현직 교정공무원 16,776명

주요사업 및 활동사항

- 회원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사업
- 상부상조 및 친목도모 사업
- 현직 직원과의 유대강화·교정참여
- 수용자 교정교화 및 출소자 재사회화 사업
- 도서출판 및 판매업등 수익사업
- 국민의 법질서의식 함양 사업
- 지역사회 유대강화 및 봉사활동 사업 등

가입문의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34 교정공제회 역삼빌딩 10층
  문의: 02-521-2026, FAX 02-6952-2023
  홈페이지: http://www.kncova.or.kr
- **전국 지역별 각 지회**
  퇴직 시 소속 교정기관 총무과 (서무담당) 에 문의

전국 각 지회 현황

2024. 8. 1. 기준

지역별	지회별	회장	사무국장
서울지역	서울	박수호	안승용
	동부구	백봉기	안외섭
	남부구	진기대	류성현
	남부교	이종근	김범남
경기지역	안양	박상재	조성주
	인천	강명학	장재학
	수원	유병성	한춘택
	평택	권윤식	구자현
	의정부	조상필	김왕윤
강원지역	춘천	채용석	홍병걸
	원주	이기남	문정현
	강릉	권혁무	강기원
경북지역	대구	조천해	이종완
	대구구	정화선	이영준
	안동	김수현	김성배
	김천	이근재	김진홍
	경주	서경석	최현찬
	청송	김형선	이오우
경남지역	부산	김운섭	조경종
	부산강서	김영귀	전준석
	창원	김종우	주강돈
	진주	한윤갑	조호제
	울산	정진훈	공정술
충청지역	대전	김영복	최관규
	천안	송창호	양해문
	공주	명제능	김세환
	홍성	이용화	윤태희
	청주	오호성	남익우
전북지역	전주	김재영	이만호
	군산	나종철	김형섭
전남, 제주지역	광주	배정배	이성재
	목포	조규도	박종화
	순천	조점기	김은섭
	장흥	이상실	강근배
	제주	신원식	김남경
서울	정우회	이국주	정명철
	본 회	**송영삼**	**정명철**
계	**본회, 36개 지회 (1정우회)**		

* 연락처는 개인정보 관계로 생략하였습니다.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Vol.580. 2024. SEPTEMBER
법무부 교정본부

ORRECTIONS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교정 논문
교정 시설 내 마약류 사범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연구
- 이수명령을 받은 마약류 사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정 리포트
교정시설 치료공동체에 대한 질적 메타 종합 연구(하)

교정 백과
통계와 사례로 이해하는 미국의 교정현안 및 문제점

09
Vol.580. 2024. SEPTEMBER
법무부 교정본부

Contents

VOL.580. 2024. SEPTEMBER

COVER STORY

9월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있지만, 절기상 밤의 길이가 점차 길어지고, 낮의 길이는 짧아지는 '추분(秋分)'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드는 '추분(秋分)'은 24절기 중 하나로, 농업적으로는 가을 수확기를 의미하며, 농사를 짓는 문화권에서는 중요한 절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월간 〈교정〉은 수확과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발행인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4년 9월 13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엎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Corrections PLACE
교정 플레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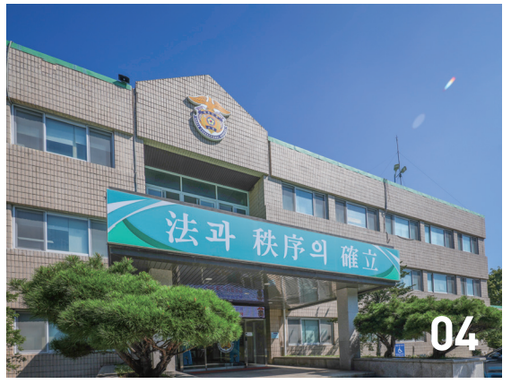

04 역사와 오늘
57개국 수용자가 모인 '교정 지구촌'
천안교도소

10 교정의 공간
'일당백 정신'으로 실현한
한계 없는 수용 관리
천안교도소 보안과

14 외부 칼럼
Z세대의 독서 트렌드
텍스트힙

Corrections ARCHIVE
교정 아카이브

16 교정 포커스
전근대 한국행형사(4)
금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

44 교정 논문
교정 시설 내 마약류 사범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연구
- 이수명령을 받은 마약류 사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
장민기 광주지방교정청 심리치료센터 교사

88 교정 리포트
교정시설 치료공동체에 대한 질적메타 종합연구(하)
유숙경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96 칼럼
천륜을 저버린 범죄, 친족 성범죄
최우진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

104 교정 판례
엄중 관리 대상자 관련 판례 연구(하)
김자영 서울지방교정청 교감, 변호사

122 교정 백과
통계와 사례로 이해하는 미국의 교정현안 및 문제점
홍원태 샘휴스턴주립대학교 형사정책 대학원 교감

136 교정 NEWS

145 모범 공무원

146 독자마당

57개국 수용자가 모인 '교정 지구촌'

천안교도소

소년교도소로 출발한 덕분에 사방으로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천안교도소에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수용 생활에 임하는 이국적인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로서 수용자의 절반이 외국인이며, 국적 또한 57개국으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작지만 다채로운 '교정 지구촌'에 엄정한 법 집행과 교정교화를 더하기 위해, 천안교도소 직원들은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전국 유일의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

1939년 인천소년형무소로 개청한 뒤 줄곧 소년 수용자 전담 교정시설의 역할을 담당해 온 천안교도소는 2009년 소년 수용자 처우 및 교정교화 업무를 김천소년교도소에 넘겼다. 대신 이듬해 2월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다국적 수용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현재는 수용자 중 절반이 외국인일 정도로 외국인 수용자 비중이 늘어났으며, 국적도 57개국으로 대폭 확대됐다.

천안교도소는 외국인 수용자를 국제적 규범에 걸맞게 처우하기 위해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 지정 직후 국제협력과를 신설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안교도소에만 있는 이 부서는 각국 대사 접견, 외국인 고충 상담, 신입 수용자 조사, 각종 통·번역 등을 담당한다. 또한 인문 강좌 프로그램 '굿모닝 코리아'를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수용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다.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인 만큼 수준급 외국어 실력을 갖춘 직원도 상당수다. 중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 그들의 언어와 풍습 등에 발맞춘 처우를 수행하고 있는 것. 아울러 우리나라의 음식이 생소한 외국인 수용자들을 위해 식단을 한식, 양식, 이슬람식으로 구분해 배식함으로써 법 집행과 교정교화에 원활함을 더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배관 공정 직업훈련을 시행해 외국인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이끌고 있다는 것도 천안교도소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핵심 포인트다.

남다른 운영으로 키우는 내일의 희망

천안교도소 한편에는 최신식 설비를 갖춘 식품 작업장이 존재한다. 빨간 포인트 외벽이 인상적인 이곳에서는 하루 800kg 내외의 어묵을 생산하며, 이를 교도소에 납품한다. 일일 작업을 끝마친 작업장은 민간 제조공장 못지않은 청결함을 뽐냈는데, 작업장 관리 직원은 "전국에서 이보다 더 위생적인 어묵 제조시설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천안교도소는 전국에서 5개 기관에만 있는 심리치료과도 갖추고 있다. 정신질환 및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및 치료를 담당하는 이곳에서는 타 기관의 심리치료과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 바로 실외 교육장이다. 야외 심리치료 및 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최근 마련된 실외 교육장은 출입구 쪽을 제외한 세 방향의 벽을 여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수용자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자연과 함께 날카로운 언행을 부드럽게 가다듬는다.

천안교도소에는 법원의 보호감호 명령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들이 지내는 감호생활관도 존재하는데, 이 또한 전국 유일의 시설이다. 교도소 내에서 생활하지만 형기가 끝났기에, 피보호감호자들은 수용자와 차별화된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생활관 안에 마련된 작업장에서 근무하며 사회 복귀 시 필요한 기술과 밑천을 착실하게 마련하고 있는 이들은 희망의 끈을 강하게 부여잡으며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살아 나가고 있다.

지속적 발전을 향한 분주한 발걸음

수용 구분이 다양한 데다가 타 기관에서 보기 드문 시설과 처우를 두루 수행하다 보니, 천안교도소 직원들은 하나같이 바쁜 일상을 보낸다. 이런 와중에도 직원들의 단합력 증진과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보안청사 내에 마련된 직원 카페 '타드슈'가 대표적 사례다. 이곳에서는 직원들에게 원두커피와 각종 간식류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덕분에 많은 직원들이 부서를 넘어서는 다각적 소통과 교류를 나누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고스란히 천안교도소의 강력한 팀워크로 이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천안교도소는 교도소 담장을 넘어선 교류와 공감대 형성에도 큰 힘을 쏟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교정 캐릭터 인형탈을 활용해 천안서북경찰서 및 시민들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6월에는 마약 퇴치의 날에 맞춰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마약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꾸준히 후원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며, 부서별로 '1과 1가정' 결연을 맺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상반기 중앙통제실 현대화 사업, 1개 수용동 증축공사, 심리치료과 실외 교육장 설치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환경과 수용자들의 수용 환경을 한결 쾌적하게 만든 천안교도소는 올해 4분기에도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옥상 방수를 위한 수용동 지붕공사, 수용동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외단열 공사, 전 수용동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가 예정돼 있다. 천안교도소는 이외에도 추가적인 개선 소요를 꾸준히 파악, 수집해 교도소의 지속적 발전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했다. 천안교도소의 혁신적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다.

‘일당백 정신’으로 실현한 한계 없는 수용 관리

천안교도소 보안과

천안교도소는 타 기관 대비 수용 구분이 다채롭다. 그러다 보니 보안과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상당하다. 그러나 천안교도소 보안과 직원들은 다양한 업무를 완벽하게 해내고 말겠다는 이른바 ‘일당백 정신’으로 교도관의 수용 관리에는 한계가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어려움을 이기고 멀티 플레이어로 성장하다

수용자의 처지가 다르면 처우와 수용 관리도 달리 해야 마땅하다. 이런 측면에서 천안교도소 보안과의 업무는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을 띠고 있다. 먼저 절반씩을 차지하는 내국인 수용자와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를 구분해야 한다. 외국인 수용자들의 국적도 57개국이나 되는 만큼 각국의 특성과 문화를 수용 관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해 한·미행정협정사건(SOFA) 수용자, 교정심리치료센터 교육 대상 수용자, 중간처우시설인 아산희망센터의 수용자, 피보호감호자까지 각각 별도로 수용 관리해야 하니, 천안교도소 보안과 직원들은 멀티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김소영 과장의 설명이다.

“우리 소는 미결 수용자가 약 2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출정과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 출정 계호 등 출정과의 여러 업무 또한 보안과의 소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도소는 대지가 넓어 수용자 동행 및 계호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 1명당 관리해야 하는 수용 인원이 전국 최상위권이기에 이러한 상황이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다각적인 수용 관리, 엄정한 법 집행, 수용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균형과 소통을 위한 각별한 노력

천안교도소 보안과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는 ‘균형’이다. 수용 구분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수용자들은 각자 자신이 받는 처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크게는 내국인 수용자와 외국인 수용자 사이의 처우 불평이 생길 수 있으며, 국가별 불만도 심심치 않게 생

긴다. 따라서 보안과 직원들은 수용 관리 역량과 처우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둘째는 '소통'이다. 내국인 수용자와의 소통은 언어와 문화가 같기에 비교적 원만한 편이지만, 외국인 수용자와의 소통은 결이 다르다. 서로의 성향, 생각, 행동, 문화가 낯설다 보니 각국에 대한 개괄적 공부가 필수적이며, 일상적 수용 관리가 가능한 정도의 외국어 학습도 중요하다. 보안과 직원들이 국가별 문화와 언어에 대해 틈틈이 들여다보고 그룹 스터디를 진행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다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용자들에게 단호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동순찰팀은 위급 상황용 지시어 매뉴얼을 언어별로 만들어 비상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업무 속에서 피어난 경험과 보람

워낙 다방면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천안교도소 보안과 직원들의 머릿속에는 각기 다른 에피소드가 새겨져 있다. 2009년 러시아어 특채로 들어온 정희민 교감은 유창한 러시아어로 유난히 거칠고 사나운 러시아인 수용자들을 모범 수용자로 만들어 나간 과정 속에서 보람을 느꼈다. 심진호 교사는 야간 근무 당시 CCTV로 자살 시도를 하려는 수용자를 빠르게 식별하고 조치함으로써 귀중한 생명을 살린 경험을 떠올렸으며, 한지웅 교도는 난동을 부리는 덩치 큰 외국인 수용자를 기동순찰팀원들과 함께 안전하게 제압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정성대 교위는 피감호보호자들이 더 많은 작업량을 요구했을 때 해당 기업과 면밀하게 조율한 끝에 일감을 늘렸고, 우민희 교사는 돌조차 지나지 않은 아기를 접견하는 여성 수용자를 바라보며 교정교화에 대한 각오를 새로이 다졌다.

직원들의 에피소드를 유심히 경청한 김소영 과장은 "직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직접 들으니 우리 과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앞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교도소는 수용 규모가 비슷한 다른 기관에 비해 보안과 직원 수가 적은 편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점차 개선해서 직원들의 고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소망 섞인 다짐을 전했다.

천안교도소 변화의 믿음직한 밑바탕

천안교도소는 올해 들어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앙통제실 현대화 사업, 수용동 증축 공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데 이어 수용동 지붕공사 및 외단열 공사 등 다양한 공사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안정적인 수용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김소영 과장은 "보안과가 천안교도소 변화의 튼튼한 밑바탕이 되겠다"며, 특히 공사 기간 동안 수용 관리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다. 수용 인원 증가로 인해 생활용수가 부족해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급수펌프 추가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징벌자와 정신질환 수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조사징벌 수용동 내에 있는 보호실을 별도의 공간에 신축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들 모두 관련 부서 및 교정본부와 함께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김소영 과장은 관련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 모든 계획의 최종 목표는 '행복'입니다. 직원들이 행복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수용자의 생활과 교정교화에도 효과성과 행복이 더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려운 목표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장으로서 모두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nterview 보안과 **김소영** 과장

"우리 모두 '붉은 대추'가 됩시다!"

우리 교도소 직원 식당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다양한 시련과 고난을 이겨 내야 비로소 인생이라는 대추가 맛 좋고 보기 좋게 익을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죠. 우리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험하고, 배우고, 교훈을 얻는 모든 일들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정한 교도관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도관 인생에서의 붉은 대추를 맺어 봅시다.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그 맛은 어떤 대추보다도 달콤하고 영양가 높을 것입니다.

Z세대의 독서 트렌드 텍스트힙

TEXT_HIP

가을을 수식하는 표현 중 하나는 '독서의 계절'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을은 1년 중 책 판매가 가장 저조한 시기다. 가을철 도서 판매량이 부진해서 사람들이 책을 읽도록 하기 위해 출판업계에서 지어낸 말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요즘 Z세대 사이에서 때아닌 독서 열풍이 불고 있다. 이른바 '텍스트힙'이라는 독서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는 것.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이들이 아날로그 감성인 책에 빠져든 이유는 무엇일까?

글 송유진 문화칼럼리스트

쇼츠의 시대, 독서에 열광하는 청년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는 소셜미디어와 짧은 영상(쇼츠) 등 스마트폰 중심의 디지털 콘텐츠에 매우 익숙하다. 그런데 최근 일부 Z세대 사이에서 독서 열풍이 불면서 '텍스트힙'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텍스트힙(Text Hip)'은 글자를 뜻하는 'Text'와 개성 있고 멋지다는 뜻의 'Hip'을 합성한 신조어로 독서하는 것이 멋지다는 의미에서 등장한 말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디지털 기기가 범람하는 환경에서 성장하며 이미지와 영상에 익숙해진 Z세대들이 어느 순간 비주류 문화가 된 책 읽는 행위가 멋지다고 여기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외국의 청년층 사이에서도 책을 읽는 행위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보다 힙하게 여겨진다는 기사가 무수히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독서는 섹시하다(Reading is Sexy)'라는 제목으로 영국 10·20세대 사이에서 불고 있는 '종이책 읽기 열풍'을 조명했다. 세계적인 모델 카이아 거버(Kaia Jordan Gerber)가 독서 클럽을 만들면서 "독서는 정말 섹시하다(Reading is so Sexy)"라고 말한 인터뷰를 인용한 제목으로, 지난해 영국의 책 판매량은 역대 최고 수준인 6억 6,900만 권을 기록했다.

디지털 세대에게 책은 신선한 콘텐츠

텍스트힙 열풍은 늘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남들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다. 기성세대에게는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독서가 Z세대에게는 색다르고 희소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모두가 숏폼이나 릴스 등 짧고 자극적인 영상을 즐길 때, 자신의 책 읽는 모습이나 읽고 있는 책의 표지 사진을 SNS에 노출함으로써 남들과 다른 소비를 한다는 일종의 과시 욕구와 지적인 이미지에 대한 만족감이 충족되면서 독서는 Z세대에게 새로운 놀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Z세대에게 만연한 '디지털 피로감'이 텍스트힙 열풍의 요인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양한 영상 콘텐츠 소비에 지친 이들이 길고 느슨한 콘텐츠인 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의 한 방법이다.

> 이렇게 Z세대가 독서 트렌드를 이끌어나가면서 고리타분하게 여겨졌던 독서는 이제 소수의 멋진 사람들만 하는 특별한 행위가 됐다.

여기에 독서의 매력에 빠진 유명 연예인들도 텍스트힙의 인기를 이끌고 있다. 최근 팬들과 책으로 소통하는 연예인이 많아졌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행동과 취향을 따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독서 열풍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인기 연예인이 방송에서 노출한 책들은 항상 이슈가 되면서 책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걸그룹 뉴진스의 버블검(Bubble Gum) 뮤직비디오에서 멤버 민지가 잠옷 차림으로 책을 읽는 장면이 나온다. 그 책은 1870년대 미국 뉴욕 상류층의 이야기를 담은 고전 소설 〈순수의 시대〉로 뮤직비디오 공개 직후 책 판매량이 8배나 뛰었다. 평소 독서광으로 알려진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허윤진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책을 읽어 주목을 받았다. 한 온라인 서점에 따르면 그녀가 방송에서 추천한 도서 〈다른 방식으로 보기〉의 20대 판매량은 방송 전월 대비 93.8%나 상승했다. 또한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이 방탄소년단(BTS) 음악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BTS 멤버 RM의 책 읽는 장면이 노출되면 그 책은 항상 팬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서점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단순 독서를 넘어 '공유'와 '소통'으로

지난 6월에 열린 '2024 서울국제도서전'에서도 텍스트힙 열풍이 증명되었다. 행사가 열린 5일 동안 지난해 13만 명보다 15.4% 많은 15만 명이 다녀갔으며, 특히 도서전을 찾은 관람객의 73%가 20대(45%)와 30대(28%)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4월에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도 텍스트힙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성인 평균 독서율(1년에 책을 1권 이상 읽은 비율)은 43%로 기록됐다.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에 책을 1권도 읽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20대 독서율은 74.5%로 전체 성인 평균 독서율을 훌쩍 웃돌았다.

이렇게 Z세대가 독서 트렌드를 이끌어나가면서 고리타분하게 여겨졌던 독서는 이제 소수의 멋진 사람들만 하는 특별한 행위가 됐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디지털로 모든 것을 접하기 시작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답게 SNS에 인증 사진을 올리고, 여럿이 함께 책을 읽는 동호회에 참가하는 등 혼자 조용히 하던 독서에서 자랑하고 공유하는 독서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젊은 세대의 책 읽기 유행이 과시욕에 따른 것으로 폄하되기도 하고, 독서마저 보여주기식이 되느냐며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욕망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나쁠 것이 없다는 의견이 더 많다. 독서율이 급락하고 문해력까지 떨어지는 시대에 책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을 높인다는 장점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독서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좋은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전근대 한국행형사(4)

금용명
전 안동교도소장, 교도소연구소 소장

목차

제1편 상고사(상고시대부터 삼국통일시대까지)
제2편 중고사(고려시대)
제3편 근세사(조선시대)
제4편 근대전기(구한국정부시대)

제4편 최근세사(구한국정부시대)

제1절 감옥관제

조선이 청일전쟁으로 중국으로부터 벗어나 한국이라고 칭하기에 이르러 독립국가에 해당하는 체면을 정비할 필요상 모든 행정의 혁신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형정(刑政) 상에도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그 결과 1894년 7월[1] 내부아문(內部衙門) 관할 하에 경무청을 창설하는 동시에 좌우포도청을 폐지하고, 전옥서는 감옥서로 개칭하고 경무청 직할하에 두었으며, 포도청의 좌우 양옥은 당연히 폐청이 되었다. 종래 직수(直囚)의 여러 관청이 가지고 있었던 옥사의 전부도 역시 폐지하고, 한성부 내의 죄수는 감옥서에 집금하였다. 또 의금부도 개명하여 법무아문 권설재판소로 하여 순수한 재판기관으로 하는 동시에 종래 소속이었던 금부옥도 이를 폐지하고 그곳의 죄수는 모두 감옥서에 인계하였다.

각 지방에서의 감옥에 대해서는 다음 해인 1895년에 칙령으로 '각 지방에도 감옥서를 설치하고, 종래 존재한 옥사를 이에 충당한다.' 라고 정하였으나 조직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해서는 아무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수도 경성의 감옥서의 조직 및 관리에 대해서는 1896년 4월 개정된 경무청 관제 중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경무청 관제(발초)

하나, 경무청에 아래 직원을 둔다.

경무사	1인	칙임
경무관	12인 이하	진임
주사	8인 이하	판임
감옥서장	1인	판임
총순	30인 이하	판임
감옥서기	2인 이하	판임
간수장	2인 이하	판임

하나, 경무사는 내부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아 오직 한성부 내의 경찰, 소방 및 감옥 사무를 총괄한다.

1) 이 해부터 개국기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기원이란 태조 즉위의 년, 즉 1392년이 원년으로 하여 년을 셈한 것이다.

하나, 감옥사무는 아래와 같다.
1) 재감인의 출입, 명적(名籍), 원소(願訴), 급여품, 투입물(投入物) 및 소지화물(所持貨物)에 관한 사항
2) 재감인의 작업에 관한 사항
3) 재감인의 계호 및 서신 접견에 관한 사항
4) 재감인의 행장(行狀)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편찬, 보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하나, 감옥서장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감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관리를 감독한다.
하나, 감옥서기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그 서의 사무에 종사하고, 간수장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간수 이하를 지휘감독한다.

본 관제는 대체로 당시 일본의 예를 모방한 것이다. 그리고 관제상 간수의 직을 인정해 두었지만 실제로는 설치하지 아니하고 재래의 압뢰(押牢)에 해당하는 용인(傭人)계급의 직명을 가진 자를 두고 간수에 대용하고 있었다.
지방의 감옥서에 대해서는 1896년 2월 7일[2]에 이르러 내부령으로 내부대신이 정하는 「지방경무장정」 중에서 아래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였을 뿐이었다. 지방의 감옥사무는 경찰사무와 겸해서 경찰서로 하여 취급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달리 관제상에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나, 각 지방경찰서 이하 순검은 경무규정을 실행함으로써 본분(本分)으로 한다.
하나, 감옥사무는 재감인의 출입, 명적과 원소, 급여품, 투입물 및 소지화물과 재감인의 작업과 계호, 서신 및 접견과 행상 및 상여와 징역처분[3]에 관한 사항을 검거하는 것

이와 같이 아직 불완전한 점도 있지만 어느 사이에 중앙 및 지방의 옥무에 대해 통일을 가지기에 이른 것은 감옥제도 상 실로 획기적인 개혁이었다고 해야 한다. 그 후 1906년에 이르러 다시 관제 개정을 실시하여 내부관제에는 감옥에 관해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감옥감독권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였다.

하나, 내부대신은 지방행정, 경찰, 감옥, 위생, 지리, 출판, 호적 및 구휼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지방관 및 경무사를 감독한다.
하나, 내부에는 아래 3국을 둔다.
- 지방국
- 경무국 : 경찰에 관한 사무 외에 감옥에 관한 사항 및 감옥 일체의 경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회계국

개정된 경무청 관제 중 한성부 내 감옥사무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경무청관제(1906년 2월 개정) (발초)

하나, 경무청은 내부 관할에 속하고, 한성부의 경찰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한성의 각 경찰서 및 감옥서를 통할한다.
하나, 경무청에 아래 직원을 둔다.

경무사		1인
경무관		8인
주사		6인
총순		24인
감옥서장		1인
감옥서	주사	2인
감옥서	간수장	2인
감옥서	의사	2인

하나, 한성부 내에 감옥서를 둔다.
하나, ① 감옥서에 감옥을 두고 아래와 같이 2종으로 구분한다.
남 감옥
여 감옥
② 남감옥은 범죄를 한 죄인을 수감하고, 여 감옥은 범죄를 한 여자를 수금하며, 남녀를 혼금할 수 없다.
하나, 감옥서장은 경무사 및 검사의 명을 받아 재감인 범죄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관리를 지휘한다.

2) 개국 505년으로 건양원년이라고 정하였으나 다음 해 이를 폐지하고 다시 광무원년으로 개정하였다.
3) 징벌의 의미가 아님

위 개정 관제에서 감옥서에 의사를 두기로 한 것은 행형의 일대 진보라고 해야하지만 실제로는 실행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또 관제 중에 남감옥, 여감옥의 두 가지를 둔 것 및 남녀의 혼금을 금하는 등과 같이 행형법규에 들어가야 할 사항을 여기에 규정한 것은 입법기술이 미숙한 것에 의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당시 감옥서장이었던 사람은 나중에 중추원 참의의 직에 있었던 김상설(金相卨, 1880~1938)이었으나, 경무고문 시대에 이르러 나중에 해주감옥 전옥 이노에 신노스케(井上信之助)가 경부로서 서장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1907년에 이르러 제2차 한일협약 체결의 결과로 다시 정치상의 대개혁이 실시되면서 그때 감옥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아래와 같은 독립의 관제가 선포되기에 이르렀다.

감옥관제(1907년 12월 13일 칙령 제52호)

제1조 감옥은 법부대신의 관리에 속하고, 형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감옥의 위치 및 명칭은 법부대신이 이를 정한다.

제3조 공소원 검사장은 법부대신의 명을 받아 관할지 내에 있는 감옥을 감독한다.

제4조 각 감옥을 통하여 아래 직원을 둔다.

전옥	9인	주임(奏任)
간수장	전임 54인	판임(判任)
감옥의	전임 12인	주임 또는 판임
통역	전임 9인	판임

제5조 전옥은 감옥의 장으로서 법부대신과 검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감옥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부하 관리를 감독하며, 간수 이하의 진퇴를 맡아 처리한다.

제6조 간수장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감옥사무에 종사하고, 간수 이하를 지휘감독한다.

제7조 감옥의(監獄醫)는 상관의 명을 받아 의료업무에 종사한다.

제8조 통역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통역 및 문서 번역에 종사한다.

제9조 ① 감옥에는 제4조에 열거한 직원 외에 간수 및 여감취체(取締)를 두고 판임의 대우를 한다.

② 간수 및 여감취체에 관한 규정은 법부대신이 이를 정한다.

제10조 ① 법부대신은 필요에 따라 분감을 둘 수 있다.

② 분감장은 간수장으로 이에 충당한다.

③ 분감장은 전옥의 지휘를 받아 분감 사무를 처리하고, 부하를 지휘 감독한다.

제11조 전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상석 간수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분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역시 같다.

부칙

본령은 1908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감옥은 종래 내부 계통에 속하여 사실상 경찰이 겸장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관제에 따라 독립관청이 되었고 법무대신의 관할로 옮기는 동시에 공소원 검사장 감독 하에 두었다. 일본에서는 감옥은 사법대신이 직접 감독임이데 불구하고 공소원 검사장으로 하여 감독하도록 하는 중간감독제도를 채용한 것은 구금행형에 관해서는 감옥과 검사국과는 특히 관계가 밀접한 것을 고려하여 양자의 원활한 교섭을 도모함으로써 행형 상에 유감이 없도록 하는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감옥설비의 위치는 중앙 및 지방을 통해 가장 중요한 장소인 8개소를 지정하고, 즉 지방재판소 소재지와 같은 경성, 공주, 함흥, 평양, 해주, 대구, 진주 및 광주로 정하였으며 공소원 검사장의 감독구역은 경성공소원 검사장에게는 경성, 공주, 함흥, 평양공소원 검사장에게는 평양, 해주, 대구공소원 검사장에게는 대구, 진주, 광주로 하였다. 또 감옥을 조직하는 직원은 관제 중에 열거되어 있는 대로이지만 그중에 전옥은 9인으로 감옥 수에 비해 1인이 많은 것은 나중에 경성에 감옥을 증설하여 2개로 하는 것을 예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관제에서

보이는 큰 결점은 직원 중에 행형상 가장 중요한 임무를 부담하는 교회사를 결여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즉 조선 특유의 사정에 연유하는 것으로 큰 이유는 없었다. 그리고 신관제에 의한 직원을 모두 새롭게 채용하였고 특히 전옥 이하 판임 이상의 직원은 대부분 지식, 경험이 풍부한 일본인 감옥관을 빙용하였다. 이리하여 크게 진용을 정비하고 한편으로 감옥은 재래의 옥사 또는 경찰서 부속 유치장에 대해 응급의 공사를 더하여 이에 충당하고 1907년 6월, 7월 무렵까지 점차 개청 준비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경찰 측으로부터 사무인계를 받고 먼저 본감만 집무를 개시하였다.

감옥 최고감독관청에 해당하는 법무 관제는 아래와 같다.

법부관제(1907년 12월 13일 칙령 제51호)

제1조 법무대신은 재판소 및 검사국을 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지휘하며, 민사 형사 비송사건 및 감옥에 관한 사무 기타 제반 사법행정사무를 관리한다.

제2조 대신관방에는 관제 통칙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아래 사무를 관장한다.

1. 재판소의 설립과 폐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2. 변호사에 관한 사항
3. 법관 양성에 관한 사항

제3조 법무에 아래 2국을 둔다.

1. 민사국
2. 형사국

제4조 민사국에서는 민사 및 비송사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 형사국에서는 형사, 검찰, 감옥 및 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조 법부서기관은 전임 9인으로 한다.

제7조 법부사무관은 전임 4인으로 한다.

제8조 법부통역관은 전임 3인으로 한다.

제9조 법무주사는 전임 43인으로 한다.

부칙

제10조 본령은 19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법부에서 추진한 감옥 창설 업무은 주로 형사국에 재근하는 법부서기관 카미노 타다다케시(神野忠武)가 담당하였다. 처음 그는 빙용에 응해 법부서기관에 취임하여 먼저 감옥관제에 부수하는 각종 법령 입안의 일을 담당하였고, 한편 빙용 감옥관의 인선 및 감옥설비 등 창업의 준비에 종사하여 점차 일단락을 올리기에 이를 무렵에 각지 감옥에 전옥의 착임을 보기에 이르렀으며, 신제도에 의한 감옥 창설의 기초는 실로 카미노(神野)의 손에 의해 쌓아올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옥개설 시 감옥관계의 중요한 직원으로 창업의 일에 관여한 자는 아래와 같다.

법부대신(前任)	조중응(趙重應)	법무대신(後任)	고영희(高永喜)
법부차관	倉富勇三郎	형사국장	김낙헌(金洛憲)
법부서기관	松寺竹雄	법부서기관	神野忠武
법부사무관	臼井水城	법무주사	則近喜代熊
법부주사	中村俏男	법무주사	中橋政吉
경성공소원 검사장	世古祐次郎	평양공소원 검사장	向井 巖
대구공소원 검사장	黑川 穰	경성감옥 전옥	神尾虎之助
공주감옥 전옥	山田虎一郎	함흥감옥 전옥	諏訪善太郎
평양감옥 전옥	三井久陽	해주감옥 전옥	芊川正義
대구감옥 전옥	富山要次郎	진주감옥 전옥	松村政記
광주감옥 전옥	古垣宗次郎		

1909년에는 인천, 춘천(경성감옥 관할), 청주(공주감옥 관할), 원산, 경성(鏡城)(함흥감옥 관할), 의주(평양감옥 관할), 전주, 목포(광주감옥 관할), 부산(진주감옥 관할)의 9개소의 분감을 설치하고, 여기에 신감옥관제 실시에 따른 감옥 본감 및 분감 예정의 설치를 완료하고 점차 감옥사무의 쇄신과 개선의 실마리를 보기에 이르렀다.

1909년 7월 12일에는 일본과의 사이에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약정이 성립된 결과 1909년 11월 1일부로 통감부 감옥관제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감옥사무는 통감부 감옥사무에 인계되었다. 그리고 통감부 감옥관제는 아래와 같으며, 그 실시에 따라 한국감옥과 통감부 이사청감옥이 합쳐져서 통감부 감옥이 되었으며 이에 감옥은 한국인과 일본이 모두 함께 구금되었다.

통감부 감옥관제

제1조 ① 통감부 감옥은 통감의 관리에 속한다.
② 감옥의 설비 및 폐지는 통감이 이를 정한다.

제2조 공소원 검사장은 통감의 명을 받아 그 관할내에 있는 감옥을 감독한다.

제3조 각 감옥에는 아래 직원을 둔다.

전옥	9인	전임
간수장	75인	판임
통역생	9인	판임

제4조 ① 전옥은 통감 및 공소원 검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감옥사무를 관장하며 부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전옥은 판임대우 직원의 진퇴를 전담한다.

제5조 간수장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감옥사무에 종사하고 간수, 여감취체를 지휘감독한다.

제6조 통역생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번역 및 통역에 종사한다.

제7조 ① 감옥에는 제3조에 열거하는 직원 외에 감옥의, 교회사, 교사, 약제사, 간수 및 여감취체를 두고 정원, 직무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통감이 이를 정한다.
② 감옥의, 교회사은 주임관(奏任官) 또는 판임관의 대우를 하고 교사, 약제사, 간수 및 여감취체는 판임관 대우를 한다.

제8조 ① 통감은 필요에 따라 분감을 둘 수 있다.
② 분감장은 간수장으로 이에 충당한다.
③ 분감장은 전옥의 지휘감독을 받고, 분감의 사무를 관장하며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 전옥 사고가 있는 때는 상석 간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분감장 사고가 있는 때는 상석 간수장 또는 간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칙

본령은 19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 관제와 동시에 감옥 본감 및 분감의 명칭 및 위치는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명칭	위치
경성감옥	경성
동 인천분감	경기도 인천
동 춘천분감	강원도 춘천
영등포감옥	경기도 영등포
공주감옥	충청남도 공주
동 청주분감	충청북도 청주
함흥감옥	함경남도 함흥
동 원산분감	함경남도 원산
동 청진분감	함경북도 청진
평양감옥	평안남도 평양
동 신의주분감	평안북도 신의주
해주감옥	황해도 해주
대구감옥	경상북도 대구
부산감옥	경상남도 부산
동 진주분감	경상남도 진주
광주분감	전라남도 광주
동 전주분감	전라북도 전주
동 목포분감	전라남도 목포

통감부 감옥관제 제정과 동시에 통감부 사법청 관제의 공포에 따라 사법행정 및 감옥사무의 감독기관에 해당하는 통감부 사법청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중에는 서무, 직원, 민사 및 형사의 4분과를 두고, 한국 구법무차관 쿠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郎)가 사법청장관에 임명되어 구 법부 사무를 승계하였다. 그리고 감옥사무는 형사과의 주관이 되었고 과장에는 구 법무서기관 야스스미 도키타로(安住時太郎)이 취임하였으며, 새롭게 감옥사무관을 두고 전적으로 감옥사무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면서 구 법부서기관 카미노 타다다케시(神野忠武)에게 명하여 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 통감부 이사청에서 취급하고 있었던 감옥사무는 완전하게 일본에 속하는 감옥사무로 한국 감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통감부 감옥관제의 실시에 따라 양자가 합쳐져서, 모두 통감의 관리 하에 두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사청감옥의 연혁도 함께 여기에서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어 그 개요를 보면 즉 아래와 같다.

종전 한국에 재류일본인에 대한 재판 및 행형은 일본영사관이 이를 취급하고 있었으나 1905년 1월에 이르러 그 무렵 체결된 소위 제1차 한일조약 제3조에 '일본

국 정부는 대표로 하여 한국에 1명의 통감을 두고 또한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그밖에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가진다.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재한 일본 영사에 속하는 일체의 직권을 집행한다. 등등'에 기초하여 통감부를 두고 동시에 영사관을 철수하고 한국내 주요 지역에 이사청을 설치하고 이사관을 두게 되었던 것으로 종래 영사가 취급하고 있었던 재판 및 감옥사무는 완전히 이사관의 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1906년 1월 통감은 이사청을 철치할 장소를 부산, 마산, 군산, 목포, 경성, 인천, 평양, 진남포, 원산, 성진, 대구, 신의주, 청진의 13개소로 정하고 각 청에는 모두 옥사를 부설하고 일본인에 대한 구금 및 행형은 모두 그곳에서 집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후 나날이 일본인 거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감자도 역시 증가하여 도저히 각 이사청 부속 옥사로서 수용을 다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통감부는 집치제(集治制)를 채택하고 1907년 3월는 지역을 영등포를 선정하고 수용인원을 168명으로 정원으로 한 상당한 대규모 독립감옥을 건축하고 영등포감옥이라고 명명하였다. 간수장 4인, 간수 18인, 기타 의사, 교회사 등도 설치하고 같은 해 4월 1일부터 개청하여 상석간수장 나마즈에 신지로(鯰江震治郞)로 하여 전옥의 직무를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래 경성이사청의 부속 옥사를 경성부내 전동에 설치하였다. 옥사에는 미결수만을 구금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수형자는 모두 영등포이사청감옥으로 이송하였으며 동시에 부산, 대구, 마산의 각 이사청 판결에 관련한 형기 5년 이상의 자, 원산, 성진, 청진, 진남포 평양 및 신의주의 각 이사청 판결에 관련한 형기 2년 이상의 자, 인천이사청 판결에 관련한 자 전부, 각 이사청 여자 수감자 전부, 군법회의의 판결을 받은 군인 군속에 해당하는 신분을 상실한 기결수 전부를 집금하는 것으로 정하고 모두를 이전 수용한 결과 영등포감옥의 1907년 4월 수형자 인원은 11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리고 당해 감옥의 사무는 당시 통감부 총무장관으로부터 일본의 감옥칙(監獄則)을 준용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의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치한다는 통첩을 하였으나 그후 감옥법을 제정하고 나서는 다시 동 장관으로부터 장래에는 감옥법 빛 시행규칙에 준거하여 취급하고 만약 규정에 의거하기 어려운 경우는 적의 조치하도록 하라는 통첩을 발하였다. 그 후 영등포감옥의 제반 사무는 모두 일본의 감옥과 조금도 다른 바가 없었다. 그리고 이사청 부속 감옥 중 그 설비가 완전한 것은 위 영등포감옥 외에 부산, 청진 및 평양의 각 감옥이었다. 모두 작은 규모이지만 구조 및 배치는 새로운 양식에 의한 것이고 또 간수장 이하 직원도 상당히 배치되었다. 그 밖의 각 이상청의 옥사는 대부분 경찰유치장 정도의 것으로 직원도 2, 3인의 간수가 배치되어 있었을 뿐이었지만 그 관리는 모두 경찰에 위임하고 통감부 감옥실시 때까지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

통감부 감옥관제 실시 후에는 진남포, 마산 및 군산의 세 분감이 증설되었으나 특별한 변천은 없었다. 1910년에 이르러 한일합병이 된 결과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게 되어 그에 따라 통감부 감옥관제도 역시 개정되었으며 불과 11개월째인 같은 해 10월 1일부로 조선총독부 감옥관제의 실시를 맞이하였다.

제2절 감옥설비

1894년 서정혁신에 따라 감옥제도에 대해서도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아울러 그것은 거의 제도상만에 그치고 실제 상으로는 종전과 큰 차이는 없었다. 즉 전옥, 금부옥, 포도청옥 및 직수의 여러 관아가 가지고 있었던 옥사는 모두 이를 합병하고 감옥서로 하였지만 그 옥사는 종전의 전옥서 옥사를 승계하여 이를 사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였고, 또한 지방의 감옥서도 재래의 옥사로 이에 충당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를 모양에서 보면 간판이 변했을 뿐이었다. 그 후 경성의 감옥서는 수도 다운 체면상에서도 이를 개량할 필요가 인정되어 옛 위치에서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 구옥사는 완전히 흔적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으로 개축되엇다. 옛날부터 전해져 온 둥근 담장도 그때에 철폐하였다. 이 개축옥사는 바깥 둘레와 감방은 흑색의 중국벽돌로 쌓아올리고, 종전에 비하면 매우 체제가 좋게 되었다. 그리고 옥사와 그밖의 건물의 종류 및 배치상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종로감옥서(구전옥서)

감방은 전부 판자바닥으로 하고, 각 방의 앞뒤에 높은 창을 설치하고, 다른 부분은 모두 벽돌벽으로 하였으며, 전면에는 몸을 오그리고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입구를 두었고, 여기에 열쇠가 딸린 튼튼한 감옥인 목조의 문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감방은 기결수를 수용하는 곳과 미결수를 수용하는 곳을 구획하고, 전자는 대혼거식으로 하여 17, 8실을 두고, 한 실에는 평균 14, 5인을 수용할 수 있으며, 후자는 독거 및 소혼거식으로 하여 8실을 두고 그 1실에는 2, 3인을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에 1, 2실은 부녀실로 사용하였다. 또 각방 모두 높이는 7, 8척이 안되는 낮은 천정으로 하고 사방 벽의 벽돌 두께는 반장 쌓기에 불과하며 더구나 벽돌은 거칠게 제작되어 구조가 위태롭고 약하기 때문에 가볍게 차더라도 파괴가 용이하였고, 계호상 조금도 믿기에는 부족하였다. 그렇지만 감방 배치는 중정을 두고 그 주위에 사각형으로 배열되었고, 또한 감방 외측은 순행계호에 편리하고 특히 기결감구역에는 감방에 이어져 설치된 감옥 문에 인접하여 계호소를 두었기 때문에 직접 계호를 하는 데는 매우 편리하였다. 그래서 1908년 한 번 중대한 반옥사건이 발발한 적이 있었지만 그 전후에는 지방의 감옥에서 빈발하였던 것과 같은 파옥사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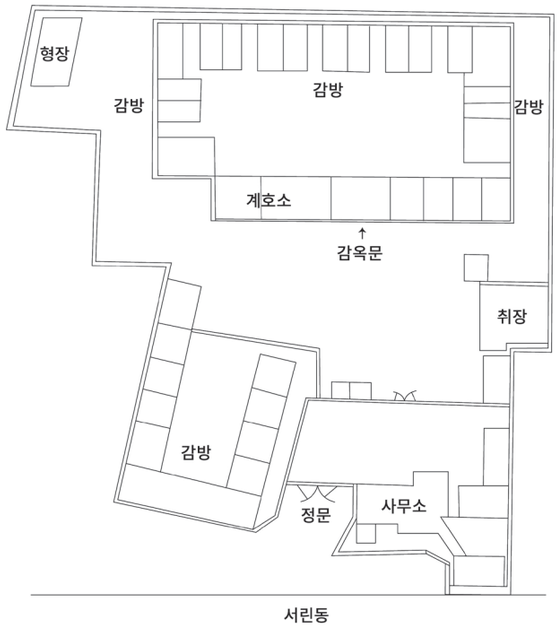

<종로감옥(원 전옥서)>
평방도 60분의 1

발생하지 아니한 것은 재방자 다수에게 가유(枷杻)를 시용하고 있었던 것에 연유하였지만 주는 계호상에 편리한 위치에 계호소를 두고 있었던 덕분이었던 것같다. 이 개축감옥의 양식은 조선식도, 중국식도 아니고, 또 당시 일본식도 아니며 비추어 서양식에 가까운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어디서 본보기를 가져왔는가 판명되지 아니하지만 영국인 파트 비숍 여사가 저술하고 쿠도우 시게오(工藤重雄)이 번역한 『외국인이 본 30년 전의 조선』이라고 제목의 책 속에 1898년의 경성의 한 구절에 '1897년에 실시된 큰 변화의 하나는 감옥의 개선일 것이다. 이 개선사업은 경찰 고문 스토리 프링에게 힘입은 바가 많다. 그는 이전에 상해 경찰에 있던 사람으로 조선에 초빙되어 지난 번에 일본인에 의해 제창(提唱)되었던 바에 따라 인도적 계몽적주의에 따라서 개혁을 실행하고 있는 첫 번째로 고문(拷問)을 폐지하였다. 다만 최근까지 정치범인이 가혹한 고문과 마주하고 있다는 소문도 났기 때문에 과연 전부 철폐되었는가는 의문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되며, (중략) 나는 경성의 구 감옥도 보았다. 그 인상은 생생하게 나에게 남아있다. 그런데 신 감옥은 크게 옛날 모습을 혁파하고 있었다. 사각의 큰 중정(中庭) 중앙에는 감수실(監守室)이 세워져 있고, 감방은 이미 오래전 옛날의 혈장(穴藏)[4]과 같은 것은 아니다. 방의 배치는 넓고 광선을 충분히 받아드리고, 통풍에 신경쓰고, 마루는 높고 다다미 판으로 되어 있다.등등'이라고 하는 연유로 보면 감방신축 설계에는 위 영국인의 헌책(獻策)이 크게 보태졌다고 생각된다.

위 개축감옥의 구금인원은 당초에는 아마 300인이 최대 정도인 것같다. 그리고 그 무렵의 사정에 의하면 매우 많은 편이었지만 그 후 점차 사회의 진보에 따라 범죄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1907년에는 감옥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하는 것이 예상되는 시기에, 군대해산의 사건이 있어 해산병이 불평으로 폭도화되는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재감자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에 감옥확장의 급무를 통감하기에 이르러 현재 위치에서는 지역이 협소하여 절대 증축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대규모 감옥을 신출할 필요가 인정되어, 부지를 서대문 인왕산 기슭 금계동(金鷄洞)으로 하고 경비 약 5만 원을 투자하여 일본 전옥이었던 시텐노 카즈마(四王天數馬)의 고안에 기초하여 설계를 하고 신축에 착수하여 1907년에 준공을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해 1908년 신관제가 발표되어 감옥 8개소를 설치하게 되었지만 그때 비교적 감옥다운 형태를 구비한 설비가 있었던 것은 경성 종로에 있는 재래 감옥과 위 신축감옥 뿐으로 그 밖의 각 지방 감옥에는 경찰 부속물에 해당하는 구 옥사

4) 혈장(穴藏) 토굴.

즉 매우 불완전한 온돌식 감방 2, 3실이 있었을 뿐이었고, 직원이 집무하는 장소조차도 없었다. 그래서 관제실시에 따른 감옥 개청을 하기에 앞서 사무실, 감방 및 취사장과 목욕탕과 같이 없어서는 안될 설비를 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법부는 최우선으로 시행에 착수하였다. 이리하여 각지 감옥에도 점차 응급한 설비가 준공을 올리게 되어 이에 개청의 진척에까지 이르렀다. 그리나 1908년 6월 8개 감옥의 감방 수용면적[5]을 집계하면 겨우 293.3평에 불과했다. 다만, 경성 서대문 밖 신감옥이 감방면적을 합산하면 상당한 수용력을 가졌지만 당시 경성에는 폭도화한 군대 해산병이 돌아다니고, 특히 성밖에는 매우 소란스러웠고 새로운 황제 즉위 후 정무가 혼잡하였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신감옥도 개청이 불가능하고, 폐쇄된 채 잡초 속에 내버려져 있었다. 사법기관 창설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종로의 재래 감옥은 점점 더 수용난을 호소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성 내외도 평온을 되찾아 치안이 유지되게 되었기 때문에 이에 신감옥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미결수만은 구감옥에 남겨두고 판결확정수는 모두 신감옥으로 이송하여 수용조절을 도모하였다.

이 신축감옥은 바깥담의 전면 정문 근처의 일부를 모양이 좋은 벽돌쌓기로 하고 다른 곳은 모두 아연판을 붙인 거친 것이다. 건물은 전부 목조로 하고 청사 및 부속 건물은 80평 정도, 옥사와 부속건물은 480평으로 하고 모두 신식의 구조법에 따른 것으로 감방은 순찰, 시찰, 환기 및 방한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丁)자형으로 하여 전부 환거식에 의해 중앙복도와 외초(外哨)를 설계하여 이를 순회로로 하였다. 계호상으로는 매우 편리할 수 있었지만 외초식으로 하여 양쪽 벽이 사이가 깊었기 때문에 감방 안은 낮에도 어두워 몹시 음울하여 이 점만은 결점이었다. 그렇지만 공장과 욕실이 있었으며 그 밖에 대강은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재래의 옥사로 하여 급한 대로 쓰고 있는 각 감옥에 비하면 실로 큰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수용력은 500인 정도였다. 이 신감옥의 사용을 시작하고 나서는 일시 크게 수용난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한편 재감인은 거의 저지할 수 없는 기세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수용난을 호호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응급책으로 1909년에 서대문밖에 있는 원 조선포병대의 영사(營舍)[6]를 빌려서 감방으로 대용하였고 이것을 경성감옥 태평동(太平洞)출장소라 이름하였다.

재감인 증가는 경성에서만이 아니라 지방 감옥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당시 8개 본감 외에 위 9개의 분감이 신설되어, 전체 감방면적은 이미 560.5평을 헤아리기에 이르

5) 서대문 밖 신감옥의 면적을 제외한다.
6) 당시 위수(衛戍)감옥으로 쓰였다.

렀지만 그래도 협소하였고 수용 상 곤란을 호소하고 있는 실상이었기 때문에 경성에 한 개 소의 근대식 양식에 의한 대감옥을 건설하고 여기에 각 지의 장기수를 집금하여 전 조선의 구금완화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수 집치제(集治制)를 실시하고 그 처우의 적실(適實)을 도모하며, 동시에 지방에서의 계호를 확보하는 제안이 있어 신축 위치의 선택에 착수하였다. 여기저기 답사한 끝에 용산(龍山) 청파(靑坡)[7]에 땅을 찾아 기공하고, 약 2만 원을 들여 토목공사만을 거의 다 종료할 무렵, 그 지역에서 감옥설치반대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다시 다른 곳에 땅을 찾아 기공하는 것으로 하고 일시 건축을 중지하였다.[8] 그 무렵 평양 및 대구 양 감옥의 신축도 도모하여 기공하였지만, 가까스로 통감부 감옥시대 말경에 이르서 낙성(落成)을 알렸다. 다만, 그때까지 동안 약간의 굴곡이 있었지만 각 감옥에서도 응급 증축을 실시하였고 또한 이사청 소속의 감옥을 계승하는 등을 하여 전 감옥의 수용면적은 733.6평을 헤아리기에 이르렀으며, 새로이 조선총독부 감옥관제 실시 무렵에는 현저하게 증가하여 수용면적 계 1,479.4평에 달하였다. 그리고 독거방 뿐만이 아니고 그밖의 제반 설비에 대해서도 이에 비례하여 점차 충실하게 정비를 보기에 이르렀다.

덧붙여 말하면, 경성부 밖 공덕리에 신축한 감옥은 1912년 9월 경성감옥(京城監獄)이라 명명하는 동시에, 종전의 경성감옥은 서대문감옥(西大門監獄)으로 이름

7) 지금의 선린상업학교 부지이다.
8) 이 계획은 조선총독부 시대에 들어와 경성부 밖 공덕리에 땅을 구해 공사를 기공하여 1912년에 낙성하였으며, 경성감옥이라 명명하였다.

을 바꾸었다. 그리고 서대문감옥의 건물은 그 후 여러 차례 개축을 하여 이제는 이미 최초의 면영(面影)의 일부분만 남겨지게 변하였다. 또한 종로에 있었던 감옥서 건물도 이미 헐어져서 흔적도 없어졌다.

제3절 구금

1894년(고종 31년) 군국기무소(軍國機務所)[9]는 의안으로 '대소(大小) 관원(官員)에 대하여 뇌물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가동(家僮)[10]을 대수(代囚)[11]하고 장전(贓錢)[12]을 책납(責納)하도록 함으로써, 도형(徒刑)에 연시(延施)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실효가 없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본인을 잡아가둔 후 죄를 논할 것'라고 정하고 이를 실시하였다. 대수의 예는 아주 옛날부터 행해져 온 것이지만 오직 정처수금(正妻囚禁)과 부형대수(父兄代囚)만은 인륜에 반한다는 이유로 역대의 국왕은 여러 차례 이를 금하는 영을 내렸다. 그 이외 다른 사람으로하여 대수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도 거의 공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렵에 이르기까지 행해지고 있었던 것 같다.

1894년 서정혁신에 따라 경성의 감옥을 개축하여 10월에는 감옥규칙을 새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감옥규칙 중에 구금에 관한 규정으로는 (1) 감옥은 기결감과 미결감의 두 종류로 구별한다. (2) 공범자는 그 감방을 각각 달리 한다. (3) 새롭게 수감하는 경우에는 재판소 또는 경찰서가 발행한 문서의 사열(査閱)을 요한다. (4) 대동유아는 3년까지 이를 허락할 수 있다. (5) 옷과 식사의 급여 및 그 정액의 제도를 정한다. 등과 같은 것이 주요한 점이었다. 그리고 미결감과 기결감을 구별한 것은 종전에는 실제상 형벌집행을 하기 위한 구금 즉 기결수용은 거의 없었고 단지 미결구금만이 존재한 것에 그쳤으며, 전옥서, 금부옥, 포도청옥 등의 감옥도 그실상은 오로지 미결감 즉 구치감이었다. 이와 같이 당시 감옥은 구치감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데 그치고 있었던 이유는 생각건대 종전에는 형벌로는 오늘날의 자유형과 같은 시간제 형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도형은 있어도 이름에 그치고 거의 그 실질이 없으며 많은 것은 사형이나 체형 또는 유형의 종류만 있어 어느 것도 결심이 선고되면 즉시 그 집행을 종료하고 말 수 있기 때문에 재판 후는 행행을 위하여 또는 일정 기간 신체를 구속해 둘 필요가 없고 따라서 기결감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郎)도 그의 저서 『조선법제사(朝鮮法制史)』 중에 '전옥서에 있는 미결의 수인을 구금하는 것처럼 사형이면 기시(棄市)하고, 태장이면 결배(決配)하며, 속금(贖金) 몰수면 수령이 이를 결행하고 그리고 여러번 대사면이 있어 체옥의 자가 없다. 등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1894년 이후는 여러 차례 형률의 변천이 시행되었고 실제상으로 징역형, 금고형 등 자유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러 기결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에 기결감과 미결감을 두는 것으로 하였던 것이다. 또한 새로 입감하는 경우에는 권한이 있는 자가 발령한 수감증명 문서의 사열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행해져 온 체수, 대수 등의 폐는 근절하기 용이하게 되었고, 또 재감중의 식량은 종전부터 관급의 길이 열렸지만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예였기 때문에 수금된 자가 있는 때는 가족은 옷과 식사의 차입의 편의와 자금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익숙한 고향의 집도 밭도 모두 이를 팔아 감옥 소재지로 이사해 오는 일이 거의 관습이 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도 있었지만 규칙상 관급이 되고나서는 오랫 동안의 폐단도 개선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 감옥규칙은 구제도에 비해 개선된 점이 아주 많았지만 그래도 또한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을 고려하여 1899년에 이르러 개정을 도모하고 다시 「감옥규칙」과 그 시행법에 해당하는 「감옥세칙」을 제정 발포하였다.

〈옥바라지〉

개정 감옥규칙 중에는 구금에 관해 구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1) 부녀의 감방은 엄중하게 분리하고 직원 또는 죄수는 공무 외에 부녀감방에 들어가거나 또는 사사로이 부탁하는 말을 해서는 아니된다. (2) 서장은 항상 요원(僚員)을 계칙(戒勅)하여 죄수를 학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수인을 호송하는 때는 남녀를 구별해야 한다. (4) 계구는 수갑과 족쇄에 한한다. 그밖에 (5) 작업, (6) 보건, (7) 교통, (8) 상여, (9) 징벌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저하게 그 내용의 충실을 보기에 이르렀다. 구 규칙이 제정된 후 불과 3년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사이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불비부당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세사의 발전으로 그렇게 된 바로, 역시 감옥사무의 급속한 진보발전이 촉진된 이유이다.

당시 경성감옥의 구금실상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외국인이 눈으로 본 30년전이 조선』 중에 아래와 같은 기술이 있다. 즉 내가 시찰한 당일은 춥고 화씨 18도의 기온이었으며, 수인은 떨었고 특히 나의 모습을 보자 동정을 구하는 것처럼 고의로 심하게 떨고 있었다. 다행인 것은 수인에게는 일본식 큰목욕탕이 있고, 식사는 하루 두 번 쌀밥을 큰 그릇에 담고 좋은 질의 국물이 지급되었다. 노동을 나갈 때는 세 번의 식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었다. 식비는 하루 분이고 한끼는 4분의 1이다. 하나의 감방에는 대체로 12명 내지 18명을 수용하였고, 미결수 50명은 하나의 방에 감금

9) 갑오혁신의 중심이 된 신정부의 기관으로 1894년 7월 26일에 만들어져 같은 해 12월 17일 폐지되었다.
10) (역자주) 가동(家僮) 집안심부름을 하는 어린 사내아이.
11) (역자주) 대수(代囚) 죄인을 가두지 못하는 사정에 처했거나 진범인을 잡지 못했을 경우 관계자나 근친자를 대신 가두는 일.
12) (역자주) 장전(贓錢) 옳지 못한 짓으로 얻은 돈.

하고 있었다. 사형수 2명은 길고 큰 수가(首枷)를 차고 있었지만 족가(足枷)는 볼 수가 없었다. 수인들은 각각 방석을 휴대하고 입감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침구에 몸을 옆으로 하고 베개로 하는 것이 하루의 즐거움이다. 대체로 그들은 청결하고 시중(市中)의 힘든 일 보다도 훨씬 청결하다. 마루 위에 몇 개인가 뚤린 구멍이 있었다. 횡목(橫木)[13]이 있는 것은 수인의 발을 묶어 두는 나무이다. 병실은 약간 어두운 온돌이었지만 어떻게든 밝은 창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전체 수인 225명 모두 남자였다. 범죄별로 분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범, 날치기가 같은 방에 있는 경우가 있고, 모반죄로 추궁받은 연대장이 중죄범인과 함께 생활하고, 하잘 것 없는 한 시민의 고소에 의해 수뢰죄로 추궁되어 종신형의 선고를 받은 고관(高官)이 수가(首枷)를 차고 혈장(穴藏)과 같은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형기는 반드시 죄의 대소에 비례하지 않게 보이고, 비실비실한 아비가 남의 산의 소나무를 베어 땔나무로 가지고 돌아온 죄과로 3년의 징역에 처해진 일이 있고, 몸은 원래 천하지 않은 사리에 어두운 노인이 남의 선동에 의해 묘지를 파헤쳤기 때문에 10년 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살펴보면 감옥개선은 이미 많은 것이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야 할 많은 것이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수인의 분류가 가장 먼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경성의 감옥은 중국의 감옥에 비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 외 동양제국의 구식감옥에 비하면 훨씬 뛰어났다. 고문은 명목상으로는 폐지되었고 목을 효시(梟示)하고 죽은 시체를 매질하던 야만적 풍습은 끝을 고했다. 나는 정오가 지나서 감옥시찰을 끝냈을 때에 불과 2년 전에 세 개의 대나무에 매달려 있는 생수(生首)를 보기도 하였고 머리없는 몸통이 피범벅으로 길가에 나뒹굴고 하였던 일이 마치 꿈과 같았고 자기자신이지만 진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보면 잠시 동안에 개선된 점이 적지 아니한 것 같았다. 그렇지만 여기에 개선하였다고 하는 것은 옛날의 암흑시대와 비교하여 말한 매우 낮은 정도의 개선을 의미한 것같다. 예를 들면 미결감과 기결감을 구별한다고 하여도 실제로는 여전히 혼동하고 있거나 계구도 수갑과 족쇄에 한한다고 하지만 가유질곡(枷杻桎梏)의 구식 계구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남녀는 구별하더라도 바로 옆방에 수용하고 아무런 분계(分界) 설비도 없으며, 특히 여수실(女囚室) 만은 방문을 개방하여 남자의 접근이 용이하였기 때문에 취사부와 같은 경우는 멋대로 여감에 출입하고, 때로는 유아를 데리고 와서 달래고 노는 것같은 일이 있어도 관리는 감히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거나, 또 재감자의 휴대품은 실제로 보관하지 않고 소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사망한 때는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은 다투어 사망자의 의복은 물론이고 소지품 전부를 탈취하여 자신의 물건으로 하는 관습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또 감방에는 항상 두는 기구 중 변기를 두는 규정이 있어도 실제로는 방 밖에 나와서 배수구에 방뇨하도록 하는 것을 예사로 하는 것처럼,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어도 매일 하는 일 없이 먹고 놀게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밖에 옥수의 무기율 무절제는 실로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정도였고, 그것이 영국인 비아드 비숍 여사가 시찰한 때보다도 약 10년 여 후인 1908년 개혁무렵까지 이와 같았다. 수도인 경성에서 이와 같았기 때문에 지방 감옥에서는 미루어 알 수 있는 이유이다.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郎)는『조선법제사(朝鮮法制史)』에서 '오랜만에 허갈(虛喝)[14]의 말에 업신여기는 조선에서는 감옥의 이름이 있어도 실질이 없었으나 1908년「형법대전」개정 후에 점차 개조되었다. 그 이전에는 짐승을 묶러두는 것과 같은 일은 일반적이었고, 수인은 비좁은 옥사에 앉아서 가학(加虐)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았다. 당시 종로 또는 수원의 옥사에서 가(枷)가 채워진 수인을 보았다.' 라고 하고, 짐승을 매어두는 것과 같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1908년 개혁 시에는 종로의 경성감옥에 구금되어 있던 재감자는 총수 309명으로, 그 중에 미결수가 123명, 기결수가 186명[15]이었다. 서울의 감옥상태에 대해 이미 전술한 것과 같은 때에 청결정돈의 이행상태 그리고 행형의 발전에 놀라운 것은 경기도 수원읍에 설치된 감옥이다. 당해 감옥은 경기감옥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원 경기도 관찰사 청사가 수원에 있었을 무렵 그 관할의 감옥이었다. 구내는 그다지 넓지도 않았으나 높은 벽돌벽으로 사각으로 둘러싸이고, 그 속에 있는 감방은 용마루가 이

13) (역자주) 횡목(橫木) 가로질러 놓은 나무

14) (역자주) 허갈(虛喝) 허세를 부려 공갈함

15) 금옥 86명, 징역 100명

어진 온돌식이지만 남감(男監)과 여감(女監)을 구별하였고, 그 외에 취사장도 있고 교형장까지도 설치되어 있었다. 감방은 전부 8실로 총면적 26.6평이고, 당시[16] 그곳에 수용되어 있었던 재감자는 기결수만으로 징역 종신 8명, 징역 15년 14명, 징역 10년 2명, 징역 5년 2명, 징역 3년 1명, 징역 2년 3명, 징역 1년반 1명, 징역 1년 2명, 금고수 8명, 여자 1명 계 42명이 있었다. 그리고 여자수감자에게는 사복을 착용시키고 밝은 방내에서 재봉을 하도록 하였으나, 남자수감자는 취사부 2명을 남기는 외에는 전부 외역에 나아가 시가지 청소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취업자에게는 일정한 노동복을 지급하고 또 작업상여금으로 얼마간의 금전을 석방시에 평소 성적과 귀향여비 등을 참작하여 지급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본에서 마침 그해부터 실시된 감옥법에 따른 작업상여금제도와 동일하였다. 경기감옥은 그 지방의 경찰이 관리하고 있었지만 그 후 경성감옥에 인계되었다.

신제도에 의한 감옥설치 후 각지 경찰서가 보관해 오던 구재판에 관련한 기결수 전부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설 감옥에 인계되었으나 그 때문에 또는 재판 및 경찰기관이 정비됨에 따라 각지 감옥의 재감자는 갑자기 증가하여 감옥개청 후 겨우 3, 4개월이 막 경과한 1908년 10월 말 구금인원은 2,019명에 달하였다. 현재 이것을 감옥별로 조사하면 아래와 같다.

인원 / 감옥명	기결수	미결수	계
경성감옥	514	321	835
공주감옥	174	74	248
성흥감옥	41	39	80
평양감옥	132	46	178
해주감옥	97	36	133
대구감옥	161	91	252
진주감옥	97	35	132
광주감옥	60	103	163
계	1,274	745	2,019

본 표에 열거하는 인원 외에 민사유치인이라 불리는 자가 약간 있었다. 이는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채무자를 속박한 것으로 종래 법령 상에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관습으로 행해져 온 제도였기 때문에 1908년 「민형사소송규칙」을 제정할 때 그 중에 규정한 것으로, 사법권 위임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16) 1908년 12월 24일

각 지방의 감옥은 설치와 동시에 새로이 빙용(聘用)에 응하여 착임한 일본인 사옥관(司獄官)에 의해 각각 개선에 착수하였으나, 옥사의 신증축은 재정상 관계로 급속한 기공으로 이어지기에 이르지 못하여 어쩔수 없이 구(舊)옥사를 사용하였다. 그 동안에 재감자는 점차 증가하여 1908년 말에는 이미 2천명을 넘었기 때문에 감방 면적 1평에 대한 평균 수용인원은 7명에 달하였고 결국 옥사는 가득차서 넘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가득 채워 수용했기 때문에 1평 평균 수용인원은 10수명이라고 하는 많은 수를 넘어섰다. 그 무렵 재방자는 각자 베개를 나란히 하고 편안하게 자는 것 등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재방자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씩 교대로 누워 자도록 하였다. 당시 대구감옥의 감방은 전부 세 개로 15평 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재감자 150명을 수용했다. 그때는 방내의 벽에서 벽으로 줄을 가로지르고, 그곳에 양다리를 걸치고, 상반신 만을 마루 위에 옆으로 누워자도록 하는 궁책(窮策)을 강구하였다. 또 공주감옥에서는 방내에 변기를 들일 정도의 여지도 없었기 때문에 감방 앞에 4두(말)짜리 술통(樽)을 두고 맥주병의 바닥을 제거하여 홈 형태의 새는 누두(漏斗)를 만들고 이것으로 비계(棧) 사이를 통해 방 내에서 오줌을 누게 하고 있었다. 또 함흥감옥에서는 감방 내에 선반을 설치하고 상하 2단으로 나누어 마치 2층처럼 지어 이에 의해 수용력을 배가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다만, 천장이 낮은 온돌방을 2단으로 하였기 때문에 옆으로 자고는 있지만 일어설 수 없었다. 그 외의 각 감옥도 협소한 점에서는 어디나 대동소이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리에 몰두하여 고생하여 수용하였다. 그렇게 하였기에 1평당 평균 수용인원이 십수명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많은 수를 구금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구금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름에 방내는 무더위 때문에 모기나 파리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였고, 밤과 같은 때는 재방자로 하여 서로 큰 부채로 누워자는 사람을 부쳐주고, 이로써 간신히 고열을 이겨냈다. 이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생상태는 매우 불량하였고, 열사병(熱射病)이나 괴혈병(壞血病) 등이 속출하고 따라서 사망률도 매우 높았다. 감방은 이와 같이 협소하였기 때문에 몹시 비위생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조가 위약하고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계호 상 위험도 매우 높았고, 파옥 반옥(反獄)과 같은 일은 매우 쉬운 일이었다. 그런 연유로 재방자는 구금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감방이 얇고 약하자 계호 관리의 허술함에 편승하여 반옥 또는 파옥을 기도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위와 같이 구금상태는 감옥의 신축 개축을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나, 통감부 감옥시대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조선총독부 감옥관제 실시 무렵까지는 거의 모습을 일신할 수 있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 감옥관제의 실시일 즉 1910년 10월 1일부터 만 3개월을 경과한 같은 해 12월 31일 감방 총

면적은 1,479.4평이었고, 재감인원은 7,021명이었기 때문에 한평당 평균 수용인원은 4.7명보다 많았으나 이전의 구금밀도에 비하면 거의 절반 이하로 완화되었다.

제4절 행형

1. 형제

1894년의 개혁은 형제의 변화를 촉진하여 이전의 야만적인 형을 폐지하는 것을 급선무로 하여, 칙령으로 '무릇 대벽(大辟)[17]의 처참(處斬) 능지(凌遲) 등의 형률은 지금부터 폐지하고, 법부(法部)에서 형률을 시행할 적에는 교(絞)만 시행하고, 군율(軍律)에 따라 형률을 시행할 적에는 포형(砲刑)만 적용한다.' 라고 정하여 군법 처단 이외의 사형에는 교(絞) 1종이 되었다. 이어서 1895년에는 법률 제4호로 「유형의 등급 나눔 및 가감례」를 제정공포하여 종래 유배지에의 거리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그 경중을 헤아리는 유형(流刑)의 이정제(里定制)를 개정하여 유배기간의 장단으로 하는 기간제로 변경하였다. 또 같은 해 법률 제6호로 아래와 같이 「징역처단례(懲役處斷例)」를 제정 공포하여 유형(流刑)은 오직 국사범(國事犯)에게 적용하고 징역형은 보통 사범에게 이를 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즉 도형(徒刑)을 폐지하고 보통사범에게 과하는 형으로 강제복역을 실질로 하는 징역제를 채용하였다.

징역처단례(懲役處斷例)

제1조 통상 범죄에 과하는 유형(流刑)을 징역으로 바꾸어 아래 표와 같이 처단한다.

도형(徒刑) · 유형(流刑)	징역
유형(流刑) 종신	종신 징역
유형(流刑) 15년	징역 15년
유형(流刑) 10년	징역 10년
유형(流刑) 3년	징역 3년
유형(流刑) 2년반	징역 2년 6월
유형(流刑) 2년	징역 2년
유형(流刑) 1년반	징역 1년 6월
유형(流刑) 1년	징역 1년

제2조 국사(國事)에 관한 범죄에는 유형(流刑)을 존치하고 도형(徒刑)은 징역으로 바꾸되 취역(就役)[18]을 면한다.

1896년에 이르러서는 법률 제3호로 「형률명례(刑律名例)」를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종래의 형명은 모두 폐지하고 새로이 아래와 같이 형명에서 형기를 하나로 정하였다.

형률명례(刑律名例)(발초)

제1조 형명(刑名)은 아래와 같이 4종으로 나눈다.

1. 사형(死刑)
2. 유형(流刑)
3. 역형(役刑)
4. 태형(笞刑)

제2조 사형(死刑)은 교수형으로 한다.

'1900년 법률 제6호로서 사형은 아래에 (참형 또는) 추가하고, (참형에 처하는 자는 적산(籍産)을 부가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한다.'

제3조 유형(流刑)은 아래와 같이 10등급으로 나눈다.

종신, 15년, 10년, 7년, 5년, 3년, 2년반, 2년, 1년반, 1년

제4조 역형(役刑)은 아래와 같이 19등급으로 나눈다.

종신, 15년, 10년, 7년, 5년, 3년, 2년반, 2년, 1년반, 1년, 10개월, 8개월, 6개월, 4개월, 2개월, 1개월 20일, 1개월 10일, 1개월, 20일

제5조 태형(笞刑)은 아래와 같이 10등급으로 나눈다.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제6조 교형(絞刑)은 군법(軍法) 외의 일반 국민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 시행한다.

'1900년 법률 제6호로 제6조를 "참형(斬刑)은 황실범과 국사범에, 교형(絞刑)은 일반적으로 그 밖의 범인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이른 자에게 시행한다."라고 개정한다.'

17) (역자주) 대벽(大辟) 사형.

18) (역자주) 취역(就役) 노동일에 종사함.

위와 같이 「형률명례(刑律名例)」의 제정에 따라 형벌제도는 완전히 달라져, 옛로부터 오랫동안 행해져 온 장형(杖刑)도 그 모습이 사라졌다. 또한 사형은 한동안 교형(絞刑)의 한 종류에 한정하여 실시되었으나 다시 참형(斬刑)을 부활하고, 황실범(皇室犯) 및 국사범(國事犯)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당시 국정이 다시 참혹한 형벌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독립하여 한국이라 칭하기에 이른 후 이와 같이 여러 차례 형률의 개정을 실시한 이유는 이제야말로 외국의 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아니한 중국의 법전 즉 「대명률」을 기본법전으로 하고 있는 사실은 한 나라의 체면상 허용될 수 없다는 바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완전한 형법전을 짧은 시일에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과도기의 잠정법인 단행법으로 수 회에 걸쳐 형률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였던 것이다.

1895년 한국 황제는 대묘(大廟)[19]에 고하고 「홍범(洪範) 14조」를 조상의 혼령에 서약하였는데, 그중에 '민법, 형법을 제정하여 함부로 감금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함'이라고 하는 한 조가 있었다. 그때 이미 사법기관의 개혁과 형전(刑典)의 큰 성과를 기하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했던 대로 얼마 안 되어 「재판소구성법」을 정하여 새로운 재판소를 설치하였고 한편 정부는 일대 형법전 편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 1905년에 이르러 성립된 것이 즉 전문(全文) 680조로 구성된 방대한 「형법대전」이었다. 그리고 공포를 하는 동시에 이전에 잠정법으로 발표한 단행법은 모두 폐지하였다.

「형법대전(刑法大全)」은 실로 하나의 신기원의 선을 그은 새로운 법전으로 범례에서 '본 법률은 「대전회통」과 「대명률」과 새롭게 반포한 법률을 참작하여 집성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역시 「명률(明律)」을 모체로 탄생된 법전이었다. 생각하기에 「형법대전」이 만들어진 것은 1905년에 해당하며 일본의 현행 형법 실시보다 2, 3년 빨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세기 이전의 유물에 해당하는 명률(明律)을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이 시대에 뒤진 낡은 투인 것은 물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는 필경 당시의 입법자가 민도(民度)[20]의 여전한 유치함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에게 새롭게 빠른 것을 삼가하며, 법제상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게다가 국정(國情) 습속(習俗)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외는 아니었다.

19) (역자주)대묘(大廟) 종묘

20) (역자주) 민도(民度)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

「형법대전」 중 형제에 관한 부분만을 초록하면 아래와 같다.

「형법대전」(발초)

제93조 주형(主刑)은 다음과 같이 5종으로 구별한다.

1. 사형(死刑)
2. 유형(流刑)
3. 역형(役刑)
4. 금옥형(禁獄刑)
5. 태형(笞刑)

제94조 사형(死刑)은 다음과 같다.

1. 교수형(絞首刑)

제95조 유형(流刑)은 섬지방에 압부(押付)[21]하여 보수(保授)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10등급으로 구별한다. 다만, 도망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감옥에 수금(囚禁)한다.

1. 종신
2. 15년
3. 10년
4. 7년
5. 5년
6. 3년
7. 2년 반
8. 2년
9. 1년 반
10. 1년

제96조 역형(役刑)은 감옥에 수금(囚禁)하여 역(役)에 복역하게 한다. 등급의 수는 제95조 유형과 같다.

제97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된 자로 다음의 10등급으로 구별한다.

1. 10개월
2. 9개월
3. 8개월

21) (역자주) 압부(押付) 죄인을 압송하여 넘김.

4. 7개월
5. 6개월
6. 5개월
7. 4개월
8. 3개월
9. 2개월
10. 1개월

제98조 태형(笞刑)은 작은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리고 다음과 같이 10등급으로 구별한다.[22]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제106조 사형은 일반범죄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 시용한다.

제107조 유형(流刑)은 반란의 사죄를 제외하고 그 외 관원의 공죄(公罪, 국가의 공익을 해한 죄)에 의해 금옥(禁獄)에 과해지는 죄를 범한 자에게 시용한다.

제108조 역형(役刑)은 반란 또는 관원의 공죄(公罪)를 제외하고 그 외에 금옥(禁獄)에 과할 죄를 범한 자에게 시용한다.

제109조 금옥(禁獄)은 태형(笞刑)을 과할 죄를 범한 자에게 시용한다.

제110조 태형(笞刑)은 경죄에만 적용하고, 부녀에게는 간죄(姦罪)는 거의수형(去衣受刑)[23] 하고 다른 죄는 단의수형(單衣受刑)[24]한다.

제111조 역형(役刑) 처하는 사람은 부녀 또는 60세 이상 15세 이하 남자에게는 통상 정역(定役)을 면하고 그 체력에 상당되는 역(役)에 복역하도록 한다.

「형법대전」은 그 후 한 두차례 부분 개정을 한 적이 있었으나 법전의 골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경도 하지 않았다. 1908년 새로운 정치를 실시하면서 대폭 개정을 하여 삭제된 조문만도 260여개 조를 헤아렸다. 이와 같이 대폭 개정을 한 것은 「형법대전」에는 절차법 및 행형법에 속하는 규정까지도 혼재하여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외하고 순수한 형법전답게 하고, 오히려 실체법에 속하는 규정 중에서도 당시의 세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문은 가장 먼저 이를 폐지하는 한편 형벌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개정을 하였다. 그리고 개정으로 인해 형제 상으로 변경을 가져온 것은 다음과 같다.

1. 유형(流刑)에 처해진 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는 때는 해당 지방의 감옥에 수금(囚禁)하는 예를 '필요한 경우에는 섬지방 또는 육지의 감옥에 수금(囚禁)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유형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옥 수금(囚禁)의 방침을 취하였다.
2. 역형(役刑)은 유형(流刑)과 같이 형기 1년 이상에서 종신까지의 기간을 10등급으로 구별하고 있었던 것을 '종신, 15년, 10년, 7년, 5년, 3년, 2년반, 2년, 1년반, 1년, 10개월, 9개월, 8개월, 7개월, 6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의 20등급으로 개정하는 한편, 1년 이하의 형에 금옥(禁獄)이란 형명을 부쳤던 것을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을 한 것은 장래 새로운 시대의 법전으로서 완전한 형법의 제정을 보기에 이를 때까지의 과도기 법령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였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09년에는 사법권 위임의 시대가 출현하였고 또한 그다음 해에는 합병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전을 보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형법대전」은 1909년 칙령 제238호 「한국인에 관련된 사법에 관한 건」 제1조 규정 '통감부 재판소는 본 령 그 밖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위를 제외하고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한국법규를 적용한다.'에 따라 병합 이후에도 그 효력이 존속하였다. 따라서 「형법대전」은 병합 이후까지도 조선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으나, 1912년 4월 형사령 제정시 조선인에 대해서는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에 한해서 「형법대전」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은 모두 폐지되었다. 그런데 그 후 공통법(共通法)의 제정 실시를 보기에 이르렀을 때 위 「형법대전」에 남아있던 조항도 폐지되었고 이에 「형법대전」은 모두 그 모습이 사라지고 말았다.

22) 태(笞) 장주척 3척5촌, 대구경 2분7리, 소두경 1분7리
23) (역자주) 거의수형(去衣受刑) 옷을 벗기고 태형을 집행하는 것
24) (역자주) 단의수형(單衣受刑) 속옷을 입힌 채로 태형을 집행하는 것

교정 시설 내 마약류 사범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연구

이수명령을 받은 마약류 사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장민기
광주지방교정청 심리치료센터 교사

목차

Ⅰ. 서 론
Ⅱ. 방 법
Ⅲ. 결 과
Ⅳ. 논 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법원에서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마약류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진행되는 회복믿음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북에 있는 K교도소에 수용된 마약류 사범 가운데 이수 명령을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집단인 처치집단과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기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처치집단과 대기통제집단 각각 12명씩 배정되어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처치집단에는 2주 동안 총 17회기에 걸친 회복믿음 프로그램과 개별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대기통제집단에는 개별 상담만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에게는 단약 효능감, 변화 준비단계, 우울, 불안, 스트레스 및 충동성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집단 내 프로그램 사전 사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1.0 프로그램을 통해 점수 데이터를 통계 처리하였다. 사전 검사 결과를 토대로 Mann-Whitney U 검정을 통해 처치집단과 대기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Wilcoxon Signed-Ranks Test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이수명령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은 회복변화 준비단계 및 스트레스에서는 사전-사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자기효능감, 우울, 불안, 충동성에서는 사전-사후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정 시설에서 시행하는 이수 명령 프로그램이 단약에 대한 효능감의 증진과 더불어 충동적 성향을 낮추면서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의 완화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기술하였다.

※ 주제어 : 이수명령 프로그램, 단약 자기효능감, 변화준비성, 충동성, 우울, 불안, 스트레스

I. 서 론

1. 연구 목적

중독은 특정 행동이 건강과 사회생활에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집착적 강박이며(한국중독심리학회, 2013), 그 특징상 언제나 쾌감을 제공하지만 결국은 중독자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손상시키고 주위 사람을 파멸시키며 균형 있는 생활과 통제력을 상실하게 한다(Yun, 1997). 특히 마약류와 관련된 중독은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약범죄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8,437건으로, 이는 하루 평균 23건이 발생한 것이며, 인구 10만명 당 약 20명이 한 해 마약에 연루되고 있다(이데일리, 2022). 또한 2022년에 발생한 마약류 사범은 18,395명으로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였으며(마약류 범죄백서, 2022), 마약류 투약 사범이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살인, 강도, 난동 등 2차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류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최근 5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마약류 범죄백서, 2022). 아울러 마약류 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투약 사범은 2018년 6,177명이었으나 2022년 8,489명(마약류 범죄백서, 2022)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인 46.1%가 투약 사범이었다. 하지만 마약류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수치심 등으로 인해 신고하기를 꺼리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 즉 '암수 범죄' 개념에 근거하여 검거된 마약사범 수의 10배에 달하는 마약류 사용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며(박성수, 2018), 마약 투약자의 인터뷰를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암수율을 27.57배로 추산한 연구도 있다(Park & Baik, 2019).

인터넷과 SNS를 통해 다양한 계층에서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면서 합성 대마 및 불법 성폭행을 위한 마약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뉴스 및 대중 매체를 통해 연예인들의 마약범죄 재범에 관한 기사가 수시로 보도되고 있는 등, 마약으로 인해 공중보건상의 위해를 가져옴은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역 사회 내에서 마약류 범죄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형사사법비용 1,193억 원, 건강보험과 연관된 보건·의료비용 33억 원 등 총 1,705억 원으로 추산된다(박성수, 2018). 또한 마약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교정 시설과 지역 사회를 반복해서 드나드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약물이다.

2022년 적발된 마약류 사범 중 재범 인원은 6,436명으로 35%의 높은 재범률을 나타내고 있으며(마약류 범죄백서, 2022),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 10명 중 8명이 초범이라는 부분(동아일보, 2021)과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되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혹은 약물로 인하여 최초로 입건되는 연령이 낮을수록 재범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김은경(2006)의 연구를 감안할 때 2022년 검거된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10,988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의 59.8%(마약류 범죄백서, 2022)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접근이 민간이나 정책적인 면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 마약법 제50조와 1979년 향정신성 의약물관리법 제31조에서 마약류 중독자의 강제수용과 치료를 규정하였지만, 대부분 마약사범은 공소 제기가 되면 재판을 통해 형벌이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엄벌주의를 고수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구금 위주의 정책은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전의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대마 관리법이 2000년 10월 31일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대통령령)」으로 개정 및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치료보호 기관에 직접 입원을 신청하도록 개선하고, 마약류 재사용 우려가 있는 환자에 대해 1년간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이종세, 2001). 이를 시작으로 경미한 투약 사범에 대해 치료보호 조건부 및 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할 때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류 범죄 특히 투약 사범에 대해 종래의 처벌 위주의 형사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치료와 재활의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마약류 사범의 전체 재범률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 이수자의 재범률을 비교해 볼 때 교육 이수자가 훨씬 낮은 재범률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전영실, 김유근, 허황, 2019), 재범 예방에 있어서도 재활교육이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재범률이 높은 마약류 사범의 특성상, 교정 시설 내에서 마약 중독에 대한 교육에 대해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지만 과거 법무부 내에서 구금·격리 등의 법적 조치를 받고 있는 중독자 중 약 7% 정도만이 국립법무병원에서만 재활 프로그램을 받는 등(김범식, 김학범, 2011), 교정 시설 내에서 마약 수용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인식은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2020년 12월 4일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2를 통해 유죄판결이나 약식 명령을 받은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을 대상으로 200시간 내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의무

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된 부분은 본격적으로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정본부에서는 2011년 마약퇴치본부와 협약하여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하였으며, 단약동기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현재까지 마약류 사범에 대해 누범 횟수 및 재범위험성평가(REPI)를 통해 등급을 나누어 단기, 기본, 집중, 심화과정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정 시설 내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이 이수명령을 받은 마약류 사범에게 미치는 효과성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진행되는 중독에 관련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가. 마약류의 종류

마약(narcotics)이라는 단어는 무감각을 뜻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단어로, 수면 및 혼미를 초래하여 동통을 완화해주는 물질을 말한다. 이전에는 '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를 전부 포함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지만 현재에는 이들을 모두 일컫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검찰청 홈페이지, 마약류의 정의). 또한 국가마다 '마약류'의 법적 명칭이 다를 수 있는데, 한국은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미국은 '통제 물질(controlled substance)', 영국은 '통제 약물(controlled drug)'이라고 명명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9).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약물 사용에 있어서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사용 약물의 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사용을 중지하게 된다면 전신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금단증상),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부정적인 피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적인 정의로서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 관리법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가 200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으로 통합되었으며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2조에 의해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대마를 일컫는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5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가 아닌 제품을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경우,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1) 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마약은 양귀비 및 양귀비에서 유래된 물질과 코카인 및 코카인에서 유래된 물질을 말하며, 양귀비에서 추출되는 물질과 유사한 화학 물질을 합성하여 진통이나 진정 목적으로 합성하는 물질 혹은 약품을 말한다(마약류 범죄백서, 2022). 최근에는 양귀비 종자 샐러드, 드레싱 등 양귀비 종자를 가공하여 상품화한 마약류 제품군 밀수 사례가 다수 적발되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마약류 압수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평년 치를 회복하거나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마약 시장에서는 나라별로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불법 마약 밀매조직의 규모가 대형화되어 약물 중독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마약류 범죄백서, 2022).

2)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각성, 진통제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개발 및 사용되었으나, 투여 시 의존성 및 중독성이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제 대상 물질을 말한다(마약류 범죄백서, 2022). 주요 향정신성의약품은 메스암페타민과 MDMA, LSD, 날부핀, 덱스트로메토르판 등이 있으며 기타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합성 대마, 크라톰, 케타민, 야바, GHB, 프로포폴 등이 있다(마약류 범죄백서, 2022). 향정사범은 마약류 사범 가운데 50%를 웃돌기 시작하면서 2022년 65.4%까지 차지함으로써 향정신성 의약품(특히 메스암페타민)이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보여주고 있다(마약류 범죄백서, 2022).

3) 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대마는 1977년부터 '대마 관리법'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씨앗의 생성 시기에 풍부하게 생성되는 THC(tetrahydro cannabinol)라는 물질이 주요성분으로 제조 방법에 따라 대마초와 해시시로 나뉘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물질이다(마약류 범죄백서, 2021). 대마의 경우 금단증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알코올과 헤로인 같은 물질 사용에서 보이는 심각한 신체적 금단증상군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Compton, Harris, Lichtman, & Martin, 1996; Smith, 2002)도 있지만, 불안, 신경과민, 불면, 발한, 설사,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보고되는 연구(Budney & Hughes, 2006)도 있고, 지속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경우, 40% 이상이 조현병의 정신 분열적

증상을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Moore et al., 2007). 하지만 대마는 남용 이후 강력한 마약으로 빠질 수 있는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약물로 최근에는 대마를 활용한 식품(껌, 초콜릿 등)을 밀반입하거나 JWH계열의 합성 대마(일명, 스컹크, 스파이스)와 더불어 대마 추출액을 카트리지로 사용하는 전자 대마초까지 등장하고 있어 우려가 큰 부분이 있다.

4) 임시 마약류(신종 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해당하며,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 · 통제하는 물질을 말한다(마약류 범죄백서, 2022). 현재 Alkyl nitrite(알킬 니트리트류)와 1P-LSD가 현재 대표적인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각 2013년과 2016년에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어 법적인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마약류 중독의 특성

마약류의 중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물질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DSM-5에서는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Substance-Related and Addictive Disorder)로 분류하고 특정한 물질 즉 알코올, 약물, 마약으로 인한 중독은 물질-중독관련장애(Substance-Related Disorder)로 도박, 게임 등은 행위로 인한 비물질-중독관련장애(Non-substance-Related Disorder)로 나누어 물질 사용 기간 및 빈도의 상승, 조절 능력 상실, 조절 시도 실패, 물질 사용으로 인한 직장 또는 가정 손상, 대인관계 손상, 사회활동 또는 여가 활동 축소,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의 물질 사용, 내성 및 금단증상, 갈망 등의 11개의 진단 기준으로 나누어 위험 기준을 판단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은 재범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교정 시설에 입출소의 반복으로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여 사회적 낙인과 함께 자존감이 낮아지고 재발로 인해 가족관계와의 단절까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들은 마약을 사용하게 되는 원인으로 주로 호기심 때문인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통증 완화, 성적 쾌감, 수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래 집단의 유혹 또는 주변의 권유, 가족관계의 악화, 경제적 어려

움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 역시 마약류 사용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강은영, 조소연, 2014).

다. 교정시설 심리치료 프로그램

교정 시설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범죄자들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범죄 악풍 감염 및 사회와의 단절 등을 이야기하며 출소 이후의 폐해들을 이야기한다(Clear, Cole., & Reisig, 2009). 하지만 실제 교도소 구금 이전에 이미 불규칙한 생활과 비행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스스로를 위험한 상황과 해로운 환경에 노출시켰던 일부 범죄자들이 일반 사회에서 받지 못했던 교육 기회를 규칙적인 교도소 환경 내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부족했던 상황이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되는 경우들도 있으며(McGuire, 2002), 직업 훈련 및 취업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됨으로써 출소 후 재범 가능성도 줄어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Dahl & Mogstad, 2020).

또한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갈등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교도소에서 해결하게 되고, 시설 내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됨으로써 폐렴 등 악화된 건강 상태를 회복하는 경우도 있으며(Mumola, 1998; Palmer & Hollin, 2006), 미국 코네티컷에서 Daley 등(2004)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교정 심리치료 프로그램 하나"가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국가 교정 수용 경비를 약 1.8배에서 5.7배까지 줄여주는 큰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Daley, et al., 2004).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법무부 내 교정본부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하여 수용자 심리치료 처우의 전문성과 교정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폭력, 마약류, 알코올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까지 이상동기범죄, 소년수형자 등 10개의 범죄 유형과 수형자 특성을 고려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 교정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마약, 스토킹, 가정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이수명령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이수 명령 대상자의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확대와 더불어 전문인력양성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등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정 시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과 특유의 폐쇄성 등으로 인해 수용자들이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중요성이 인식되고는 있지만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본 연구를 비롯하여 교정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심리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1)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이론

교정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이는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와 동기 면담 방법(Motivational Interview) 그리고 좋은 삶 모델(Good Lives Model) 등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인지 체계와 행동 태도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Compton, Jackson, & James, 2016, McGuire, 1964; 유철민, 2009; 윤정숙, 김민영, 이태헌, 2020; 이수정, 2008), 이와 같은 부분은 교정 시설 내의 범죄자들이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출소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의 상황적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또다시 같은 행동을 저지르지 않도록 올바른 인지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접종이론(Inoculation Theory)"에서 말하는 강력한 심리적, 인지적, 행동적 재범 방지 면역체계를 교도소 내 심리치료 현장에서 먼저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범죄자 스스로 건강한 면역 시스템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Matusitz & Breen, 2013), 수용자가 출소 후 범죄 유혹이나 공격에 쉽게 설득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사전에 "약한 설득 메시지"에 범죄자를 미리 노출시키는 전략이다(McGuire, 1964). 접종이론은 순수한 교정학 이론은 아니지만, 강한 설득 공격 상황에서도 제대로 저항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한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Compton, Jackson, & James, 2016; McGuire, 1964), 강한 설득의 힘을 발휘하

는 상대로부터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기술을 배운다는 논리인데 범죄자들이 출소 후 범죄 합리화 기제를 거부해내는 태도를 배우게 하는 기술과 의사소통 내 설득이론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Compton, Jackson, & James, 2016). 범죄자는 긍정적인 노출 경험을 통해 반대되는 자신만의 분명한 자기 의지 관철 방식을 경험하였으며, 합법적 선택과 합리화 사고방식 및 태도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출소 후 유사한 범죄 유혹 환경에서 어느 정도 자신만의 합법적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Compton, Jackson, & James, 2016). 접종이론에서는 설득에 대한 저항을 키우는 방법으로 보강 처치(supportive treatment)와 접종 처치(inoculation treatment)를 제시하였는데(McGuire & Papageorgis, 1961), 이는 '위협(threat)'과 '반박적 선점(refutational preemption)' 이라는 두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이상경, 2007). 그중에서 위협은 가장 핵심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요소인데, 사람들의 기존 신념에 반하는 주장을 제시하고 자신의 믿음이 공격당할 것을 경고함으로써(McGuire & Papageorgis, 1962), 기존 태도의 취약성과 공격받을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다(Pfau, 1996). 위협은 사람들의 방어기제를 자극하고 기존 태도를 강화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실제로 Pfau와 그의 동료들(Pfau et al., 1997)이 위협과 접종 효과 간의 관계에서 위협이 접종 효과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통계적으로 제시한 이후 가장 최근 연구까지도 그 결과가 실증적으로 검증되어(Van der Linden et al., 2017), 접종이론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접종 처치의 또 다른 요소는 반박적 선점이며 처치에서 제시되는 위협에 저항하고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로 제공한다(Pfau et al., 1997). 이러한 반박적 선점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존 신념을 방어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을 제공한다(Pfau et al., 1997). 반박적 선점을 통해 수용자들은 공격에 대해 반박할 지식과 함께 예시(exemplars)를 제시받아 위협과 설득하는 공격에 대한 저항성을 갖추게 된다(Wyer, 1974).

2) 해외 교정 시설 심리치료 선행연구

미국 등에서는 교정 시설 내 수용자들에 대한 다양한 심리치료 연구들 즉 교정 프로그램이 범죄자의 재범 억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Andrews & Bonta, 1994; Andrews, Bonta, & Hoge, 1990),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실제 얼마만큼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47%에서부터 86%에 이르기까지 연구마다 그 결과가 매우 다양해 효과성 설명 비율 범위가 매우 크다고 한다(Gendreau & Ross, 1979; Lab & Whitehead, 1988).

미국 워싱턴 州 공공정책 연구소(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발행된 보고서에서 미국 전역과 영어권 국가에서 지난 35년간 시행된 총 291개의 심리치료 교정 프로그램들에 대한 메타분석으로 평가한 결과, 많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실제 성인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Aos, Miller, & Drake, 2006). 이 보고서에서는 심리치료 평가에서 "근거 중심 프로그램 (Evidence-Based Programs)" 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면서 범죄자의 재범률이 낮아지는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 모델을 적극 활용하였는데 평균적으로 행동치료(Behavioral Therapy, BT)들이 재범 감소 효과가 매우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8년 동안의 추적조사를 시행한 결과, 재범 감소율이 약 8.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약물사범 중독 심리치료가 재범 방지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Aos, Miller, & Drake, 2006).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재범 방지 차원에서 고려했을 때, 그 의미를 강화하는 것은 전문 심리치료의 개인적인 능력과 치료 프로그램 운영 기술(effective therapists and therapeutic techniques)인 것으로 나타났다(Beech & Fordham, 1997; Serran, Fernandez, Marshall, & Mann, 2003; Shingler & Mann, 2006; Yates et al., 2000).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심리치료 요법이나 신경 외과적 수술 방법은 재범 방지에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Orlikowski & Yates, 2002; Yates, 2003),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 처방 차원의 약리적 개입활동요법(pharmacological interventions)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rossman, Martis, & Fichtner, 1999; Meyer, Cole, & Emory, 1992).

교정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요소는 해당 범죄의 강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며, 이는 기본, 집중, 심화 등과 같은 심리치료 레벨에 대한 강도(level of intensity)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저위험급 성범죄자에게 심화급에 해당하는 강도 높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면 오히려 재범 가능성이 더 증가할 우려가 있다(Andrews & Bonta, 2010; Lowenkamp & Latessa, 2002; Lowenkamp, et al., 2006). 따라서 최근의 교정 시설 내 심리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하여 수형자들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프로그램 투입을 전제로 한 결과 분석인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Völm, Craissati, Grubin, & Skett, 2019).

또한 심리적, 신체적 금단증상이 강하고 재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마약류 중독의 특성으로 인해 교정 시설 내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하지만, 미국은 1970년대부터 중독 약물 사범에 대해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왔으며 사법부와 연계된 교정 의료 대안 모델이 1990년 이후 큰 주목을 받아왔다(Belenko, Foltz, Lang, & Sung, 2004). 네브래스카주에 있는 더글러스 카운티(Douglas County)에서 약물 법원의 명령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범죄자가 약 19% 정도 재범을 한 반면, 약물치료를 경험하지 않은 범죄자 집단은 35%의 높은 재범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서는 재범 변수를 교정 시설에 재입소가 아닌 "경찰 체포"로 넓게 간주하였다(Spohn, Piper, Martin, & Frenzel, 2001). 또한 약물 법원(Drug Court)의 명령으로 심리치료를 경험한 집단의 재범 발생률이 약 10%인 반면, 심리치료를 경험하지 않은 약물 사범은 약 20%의 높은 재범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Listwan, Sundt, Hlosinger, & Latessa, 2003).

미국경제자문위원회(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에서는 교도소 내에서 약물 남용에 대한 상담, 약물남용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을 통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재범률은 21% 감소시키고, 약물남용 프로그램은 재범률을 17%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2018). 또한 미국 내 교정 시설 내에서의 수반성 관리(Contingency Management, CM)는 약물(코카인)중독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얼마 가지 못해 3개월 이내에 감소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인지행동치료(CBT)와 함께 진행한다면 12개월까지 약물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보고도 있다(Epstein, et al., 2003).

유사하게, 행동치료(Behavioral Therapy, BT)는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대마초 사용 빈도, 심각도, 심리·사회적 기능 면에서 66% 이상의 향상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avis et al., 2015). 또한 수반성 관리를 활용한 심리치료 방식은 코카인 연구에서 효과성이 입증되었으며, 메스암페타민, 아편계 마약중독치료에도 쓰이면서 효과성이 입증되었다(McDonell et al., 2013; Roll et al., 2006).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을 활용한 약물중독 중범자 처벌(substance abuse felony punishment) 프로그램에서도 심각한 약물남용의 병력을 가진 남녀환자들에게서 재범률의 감소를 확인하였다(Inciardi, et al., 1997; Lipton, 1995). 또한 동기강화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 MI)을 활용한 동기증진치료(Motivational Enhancement Therapy, MET)는 대마초 중독 상담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Lundahl, Kunz, Brownell, Tollefson, & Burke, 2010).

국내에서도 마약 중독자들이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통해 단약 자기효능감 증진의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되었다(김용진, 1998; 조중현, 손정락, 2013). 또한 교도소 내에서의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MBCT)를 통하여 단약효능감이 유의미하게 증가되었고, 우울감과 충동성은 크게 감소되었다는 보고도 있다(조중현, 손정락, 2013).

3) 마약류 사범 치료·재활 원칙

2000년에는 UN에서 발표한 '마약류 수요감축 원칙에 관한 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 on the Guiding Principles of Drug Demand Reduction)'을 바탕으로 2003년 마약 및 범죄국(UNODC)에서 회원국들이 마약류 치료 재활 정책에 실제 적용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인 '마약중독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천 지침(Drug Abus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A Practical Planning and

Implementation Guide)'을 마련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문제의 틀을 마련하였다(UNODC, 2003).

첫째로 마약중독치료와 재활에 관한 국가적 정책 혹은 전략적 계획이 존재하는가? 또한 그러한 정책에 성과평가기준과 단계적 목표점검이 포함되어 있는가? 둘째로 치료를 요하는 마약류 중독 문제의 사정(assessment), 특히 특정 지역 사회 또는 인구집단이 필요로 하는 치료유형을 판별하는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셋째로 효과적인 마약류 중독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러한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국제적 연구자료에 뒷받침된 객관적 평가를 받는가? 넷째로 기존의 치료 재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치료 재활시설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가? 다섯째, 마약 치료재활과 관련된 여러 기관의 서비스 간의 효과적인 연계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가? 여섯째, 개별 마약 치료 재활 프로그램들의 실행과 성과를 모니터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효과적인 치료 재활 정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요청된다(UNODC, 2003). 첫째, 협력 기관 단체의 참여와 지역공동체와 치료 재활 대상자의 참여, 둘째, 정책적 투자확보와 적절한 기획과 평가, 셋째, 구체적 정책 필요에 따른 자원 배분과 해당 연구조사의 뒷받침, 넷째 치료 재활에 있어서 점진적 개선방식의 개발과 치료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서의 협력, 조정과 통합 증진, 다섯째, 지역공동체의 대응 방안 마련과 치료 재활시설의 활용 용이성 확보 및 치료 재활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점검을 들 수 있다.

4) 마약 중독에서의 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는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주는 역기능적 인지구조를 변화시켜서 인간의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변화시키려는 치료 방법이다(Beck, 1976). 인지적 관점에 의하면, 사람들이 특별한 상황을 해석하는 인지적 방식은 그들의 감정, 동기 및 행동에 영향을 준다. 중독자들이 마약에 빠져드는 이유도 마약에 대하여 가지는 긍정적 가치관이나 비합리적 신념 때문이며, 이러한 신념들이 중독물에 대한 갈망, 생리적 반응 및 불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eck, Emery & Greenberg, 1985). 중독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신념은 상황적 사건에서 자신과 환경,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핵심 신념, 불쾌한 감정, 마약 사용과 관련된 중독적 신념, 마약 사용에 대한 갈망의 경로를 거쳐 일어나게 되는데, 중독자의 마약 사용 여부는 갈등적 신념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갈등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채규만, 2002). 이는 중립적 상황도 약물 중독자들에게는 자극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식을 내담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역기능적 신념의 변화와 자극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교정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치료들은 일반적으로 "인지-행동 개입 치료(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를 가장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 요소로 보는 추세에 있다(Andrews & Bonta, 2010; Hanson, Bourgon, Helmus, & Hodgson, 2009). 실제 심리치료 효과성을 평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재범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활동이 인지행동치료 활동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öel & Schmucker, 2005). Nancy(1991)와 김기봉(2000)은 알코올 의존 및 약물 중독은 낮은 자존감에서 발생한다고 하고, 김용진(1998)은 마약류 중독자들은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자기 효능감이 낮다고 주장하였다. 김용석(1998)은 단약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대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지만 낮은 경우에서는 부적절한 대처 기술을 사용하며 손쉬운 대처 방식의 하나로 약물복용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단약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약물 중독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통해 단약 자기효능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Brown, Goldman 및 Inn(1985)은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의 신념 체계를 6단계로 제시했는데 이 모델에 근거해서 마약 중독에 이르는 가치체계를 제시하면, 1) 마약을 사용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2) 마약을 사용하고 나면 사회적, 신체적인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3) 마약을 사용하면 일상적인 일의 능률이 향상될 것이다. 4) 마약을 사용하면 삶에 대한 통제감이 올라갈 것이다. 5) 마약을 사용하면 좀 더 사

회적으로 적극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6) 마약을 사용하면 내적인 긴장이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내적인 가치체계나 믿음 때문에 중독자는 마약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Prochasksa(1992)는 마약 중독자가 변화하는 것은 5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했다. 즉, 1) 사전 숙고: 적절하지 않은 문제성이 있는 행동을 바꾸거나 변화를 시도해야겠다고 인식하는 단계 2) 숙고: 마약 중독과 연관된 문제를 조사 하고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단계 3) 준비단계: 실질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단계 4) 행동 실천 단계: 변화하기 위하여 행동을 취하는 단계 5) 변화된 행동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은 변화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단계에 있어 변화 동기는 다면적인 구성개념으로서 효과적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다(Beckman, 1980). 중독의 문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경험이 쌓여가면서 자신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고 치료에 대해서도 순응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기 부여식 접근은 변화에 저항하거나 변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전숙고단계와 숙고 단계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며, 인지행동과 재발 예방전략은 변화를 이루고 유지하는 후기변화단계(행동단계와 유지단계)를 지원하는데 뛰어난 수단이 된다고 한다(최송식, 2013). 또한 변화 동기는 각각 분리된 변화단계로 보기보다는 변화 준비라고 하는 연속선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러한 가설은 약물중독 관련 동기 연구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왔다(Bandura, 1999).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은 새로운 행동을 고려하고, 시도하고, 유지하는 동안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거쳐 가게 되는 일련의 단계이다(Prochaska & Dclemente, 1992). 또한 마약 중독자는 중독 때문에 생활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 동기를 부여하며 마약 사용으로 인해 겪는 문제점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채규만(2002)은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마약을 사용할 당시의 상황, 감정 등의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면서 내담자의 부정적인 정서나 문제를 일으키는 역기능적인 인지를 재구조화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약물 중독의 재발과 관련한 대표적 특징인 충동성에 대하여 김교헌(2006)은 중독이 만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통제력을 잃어버려 반복적으로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고, Grant(2007)는 충동성이 약물 남용과 의존의 약 50~75%의 공병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DSM-5에서 11개의 약물 사용 장애 진단 기준 가운데 '조절 능력의 상실'은 충동적인 성향이 약물 중독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인지행동 프로그램에서 충동성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회복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마약의 복용은 알코올 의존 및 정신질환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를 이중 진단(dual-diagnosis)이라고 한다(대한의사협회 편저, 필수의학용어집). 마약류 중독자는 자존심이 낮고, 우울하며, 빈약한 자기개념을 가지고, 충동 조절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삶의 태도나 성격의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있다(박상규, 2004, 2007; Campbell & Stark, 1990). 대인관계에서도 약물로 문제를 도피 및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와 동시에 절망과 외로움, 그리고 자기혐오도 함께 느낄 가능성이 높다(김용진, 2000). 또한 그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 사범인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양극성 장애, 우울 및 불안장애, 강박 장애, 수면장애, 정신병적 장애들이 중독 또는 금단 중 흔하게 발병하며(Kim, 2020), 중독의 특성상 자신의 정신과 질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치료 의지 또한 일반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2008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서 일반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들 가운데 약 6.4%가 힘든 수준의 정신건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서적으로 취약한 마약류 사범이 교정 시설에서 겪는 상황들로 인해 불안, 우울 및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상황이 지속되어 출소 이후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통해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대처방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구 문제

앞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법적 이수 명령을 받은 마약류 사범들에게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이수 명령 프로그램(이하 회복믿음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회복믿음 프로그램은 이수 명령을 받은 마약류 사범들의 단약효능감, 변화 준비성, 우울, 불안, 스트레스 및 충동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II. 방 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북 소재 K교도소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로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을 집행 중인 마약류 수용자이며 법원에서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사람들로 한다. 이들 중 임의 표집 방식에 의해 회복믿음 프로그램 참여자를 실험처치 집단(12명)으로 하고, 프로그램 미참여자를 대기통제집단(12명)으로 구성하였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교도소 내에서 실시하는 회복믿음 프로그램이 교정 시설 내에서 마약류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처치 집단 및 참여하지 않은 대기통제집단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사전과 사후 통제 집단 설계를 사용하였다. 처치 집단에게는 회복믿음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대기통제집단은 무처치집단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았다.

〈표 1〉 연구 설계

	사전 검사	실험 처치	사후 검사
처치집단	O1	X	O2
대기통제집단	O3		O4
O1, O3 : 사전검사 (단약자기효능감, 변화준비도 및 치료열망단계척도, 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 충동성척도)			
O2, O4 : 사후검사 (단약자기효능감, 변화준비도 및 치료열망단계척도, 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 충동성척도)			
X : 인지행동치료			

3. 회복 믿음 프로그램

가. 대상자 선정

이 연구의 대상자는 교정 시설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을 집행 중이며, 처치 집단 및 대기통제집단 모두 법원에서 마약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수용자이다. 처치 집단은 전국 교정 시설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북에 있는 K교도소로 이송을 온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제집단은 기존 K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마약류 사범으로 이수 명령 프로그램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처치 집단과 대기통제집단 모두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전달하고 자발적으로 지원한 수용자들을 선발하였으며, 이 연구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만 65세 미만인 자 2) 임상적 면담에서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고 정신증적 증상이 없는 자 3)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나. 프로그램의 구성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교정본부에서 2021년 6월에 발간한 마약류 프로그램 기본과정 매뉴얼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회기별 주제로 약물로 인한 피해 자각, 단약 동기 증진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총 17회기 34시간으로 진행하였다. 각 회기별 소요 시간은 120분가량으로 범죄심리사 및 정신보건 전문요원 자격이 있는 연구자가 진행자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교정직 공무원이 보조 진행자가 되어 2인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진행자는 프로그램 내에서 사전사후면담과 프로그램의 진행방향을 보조진행자와 의논하고 회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각 회기 이 후 보조진행자와의 사후 논의과정을 통해 구성원들과의 집단 역동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조 진행자는 대상자의 사전사후면담과 더불어 사후 논의과정을 통해 주 진행자가 놓쳤던 부분이나 참여자의 반응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프로그램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각 회기별로 활동지를 제공하여 작성 후 발표하고 느낀 점을 토론 형식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에 의해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종결 후 단약효능감, 변화준비단계, 충동성,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에 대한 사후 검사를 시행하여 상태를 평가하였으며, 추수 상담 및 검사는 프로그램 대상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부분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마음 치유 프로그램은 동기강화(Motivational Enhancement), 재발방지(Relapse Prevention), 건강한 삶(Healthy Life)이라는 3가지 모듈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이 세 가지는 프로그램에 구성된 회기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로 1회기부터 7회기 동안 진행되는 동기강화 모듈(Motivational Enhancement)은 '내면의 준비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 내면의 준비 원칙이란 변화를 위하여 나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대하여 주도적인 입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영실 외의 연구(2019)에서 교정 시설 내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를 살펴볼 때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나 관심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95.4%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치료과정에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이기 위하여 개인의 변화에 대한 준비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첫 번째 모듈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희망감을 느끼고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참여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약물이 정신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약물의 폐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독에 이르는 과정과 단계를 이해하여 변화를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재발방지 모듈(Relapse Prevention)은 8회기부터 12회기까지 진행되며 동기강화 모듈을 경험한 참가자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복용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위하여 보다 실질적인 방법을 안내한다. 변화단계모델에서의 회복과정에서의 재발은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되며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회복과 재발을 반복하는 과정을 겪는다. 조성남 등(2021)은 이렇게 회복 중에 일어나게 되는 재발은 이전과 같지 않고 조금씩 성장·발전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은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모듈에서는 '자기 혁신의 원칙'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기존의 중독에 취약한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을 회복적인 사고와 지지적 생활양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또한 스몰스텝(small step)의 전략 즉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성공의 연속을 통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모듈에서는 다양한 공통적인 중독 위험요인과 각 구성원의 고유의 위험요인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대처 방안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로 13회기부터 17회기까지 이루어지는 건강한 삶(Healthy Life) 모듈에서는 '생활 관리의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과거 수동적인 삶의 태도를 보다 더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도전하는 자세를 마련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또한 대상자들이 재발 방지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면서 다양한 삶의 영역을 회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회복유지를 위하여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변에 위기 상황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찾아보고 금전적인 관리 등 중독으로 낮아진 일상생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인 회기의 구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2〉 프로그램 회기 구성

회기	모듈	주제	목표 및 개요	내용	비고
1	동기강화	자기 탐색 / 나를 찾아서	- 프로그램 목적 및 활동 내용을 이해하고 집단 참여에 대한 초기 긴장감을 완화 -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자신의 마음 상태 인식	- 프로그램 및 진행자 소개 :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자기 소개를 통해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임을 설명 - 별칭 정하기 - 구성원 소개 : 진행자료 1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느낌에 대해 이야기함	1일 2회 (오전.오후) 2시간 총 17회기 1일 2회 (오전.오후) 2시간 총 17회기
2		집단 상담의 이해	- 집단 규칙의 이해 - 집단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한 생각 공유	- 집단 상담의 이해 : 집단 상담의 참여 유무를 확인하고 상담이 주었던 경험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 - 집단 규칙 정하고 규칙 준수를 통한 희망 키우기 : 집단프로그램에서 도움이 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보고 진행자료 2-1 작성을 통해 각자 느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함 - 진행자료 2-2 작성을 통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생각과 바꿀 수 있는 생각에 대해 발표하고 공유함	
3		마약이 몸에 미치는 영향	- 마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단약의 동기를 고취	- 약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및 영향 : 진행자료 3을 토대로 약물의 종류 및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함 - 약물 사용 경험 나누기 : 약물 사용 경험과 중단(단약)경험을 나누면서 해당 경험의 느낌과 기간, 계기등을 파악하고 약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및 영향에 대해 이야기함	
4		중독의 이해	중독의 개념 및 특징과 중독 문제의 특성 살펴보기	- 중독에 대한 이해 : 진행자료 4-1을 통해 중독의 생물학적 사회문화학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진행자료 4-2를 통해 약물 중독에 빠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서 구성원 개인이 겪었던 경험에 대해 토론 형식으로 이야기함 - 중독 문제의 특성 : 실험적 단계, 상황적/간헐적 사용단계, 심화적 사용단계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중독의 기준과 주요 특성 및 공동의존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각자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함	
5		변화 단계 모델	변화의 정의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변화단계를 인식	- 단계 이해 및 인식 : 진행자료 5를 참고하여 인식전단계, 인식단계, 준비단계, 실행 단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각 단계 별 특성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짐 - 변화 의지 다지기 : 현재 단약 유지를 위하여 모인 모임이라는 사실을 상기 시키면서 서로가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조력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함	

회기	모듈	주제	목표 및 개요	내용	비고
6	동기 강화	변화 결심	양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약물 사용으로 인한 득실찾기	- 양가감정 이해하기 : 진행자료 6-1을 통해 양가 감정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변화의 과정에서 양가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약물사용을 변화하는데 있어서 목표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함 - 결정저울 : 진행자료 6-2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해야할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 또한 각자 가장 큰 손실과 그에 대한 경험까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함	1일 2회 (오전.오후) 2시간 총 17회기 1일 2회 (오전.오후)
7		내 삶의 의미 찾기 / 가치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삶의 변화 동기를 고취	- 가치로 이루어진 삶 : 진행자료 7-1, 7-2를 통해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서 내 삶의 최고의 순간에 대해 각자의 경험에 대해 공유함 - 가치가 이끄는 삶으로의 변화 : 진행자료 7-3에서 가치가 이끄는 삶 활동지를 작성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도록 진행함	
8	재발 방지	재발 과정 이해	재발의 과정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재발위험 요인을 인식함	- 선행사건(A), 해석(B), 결과(C) 파악하기 : 진행자료 8-1을 통해 재발의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 볼 수 있도록 하고 재발 모델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나의 약물곡선 : 진행자료 8-2에서 나의 의존정도와 연령들을 고려하여 약물 사용 곡선을 그림	
9		재발 분석 및 대처1	재발분석을 통하여 자신의 재발위험 요인을 인식하고 자신의 위험 요인, 고위험 상황을 구분	- 재발 분석 : 재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고 약물 곡선에 나오는 부분을 참고하여 진행자료 8-3을 통해 사용약물과 그에 따른 생각과 감정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발표함	
10		재발 분석 및 대처2	위험요인 및 고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구축함	- 진행자료 10의 작성을 통해 약물의 위험요인 및 고위험 상황에 대해 파악 하면서 약물의 유혹에 대해 극복했던 순간에 대해 함께 공유 하는 시간을 가짐	
11		생각과 감정관리	회복유지를 위하여 생각과 감정의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독적인 사고를 회복적인 사고로 전환할 수 있음	- 생각과 감정관리 : 재발과 관련하여 생각과 감정이 왜 중요한지 토론형식으로 진행하고 약물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찾아보면서 위기 생황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함 - 감정피자 : 진행자료 11을 통해 약물 사용과 관련된 감정을 떠올리고 감정의 크기를 정하여 피자를 만든 후 소개함	
12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되는 사람	주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확장하면서 긍정적인 관계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 연습	- 나의 사회관계망 이해 : 나의 관계도를 그려보면서 진행자료 12를 작성하면서 갈망상태(고위험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기	
13	건강한 삶	관계 회복	나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개선, 유지하는 방법들을 공유함	- 사회지지체계 살펴보기 : 나와 주변인의 감정 이해하고 슬기로운 관계는 어떤 것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함 - 거절 기술 훈련하기 : 수동적인 대화와 공격적인 대화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마약을 권할 때 어떤 방식으로 거절할지 roll-play를 통해 연습함 - 사회지지체계 살펴보기 : 나와 주변인의 감정 이해하고 슬기로운 관계는 어떤 것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함 - 거절 기술 훈련하기 : 수동적인 대화와 공격적인 대화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마약을 권할 때 어떤 방식으로 거절할지 roll-play를 통해 연습함	1일 2회 (오전. 오후) 2시간 총 17회기
14		마음을 여는 대화법	의사소통 시 자신의 대화습관에 대해 인식하고 약물 사용으로 인해 바뀐 대화의 태도가 관계에 미친 영향을 자각함	- 나 전달법과 너전달법 : 마음을 여는 대화방식을 익히면서 나전달법과 너전달법에 대해 이해하고 회복 도중에 나올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함	
15		미래의 삶 설계하기	스마트계획(SMART) - 구체적, 측정가능, 실천가능, 실현가능, 달성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해하고 실행해보기.	- 변화 행동계획 : 스마트계획에 대해 살펴보면서 신체 심리적 건강계획과 경제 계획에 따른 목표 행동 어려움 및 대처방안을 떠올리고 목표 달성 후 나의 모습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함	
16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되는 사람	주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확장하면서 긍정적인 관계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 연습	- 갈망상태(고위험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원들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받을 수 있음	
17		건강한 사회복귀 / 자조모임	자조 모임의 종류와 긍정적 관계 유지	-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조 모임을 소개하고 진행자료 17을 통해 지역사회자원에 대해 인식하면서 긍정적 지지 관계를 도울 수 있도록 함	

다. 프로그램 적용

회기 구성에 이어 각 회기 목표에 따라 9일 동안 진행하였다. 첫 주에는 10회기로 5일 동안 매일 오전, 오후 각 2시간씩 진행하였고 두 번째 주에는 7회기로 4일 동안 오전 오후 각 2시간씩 진행하였으며, 각 회기 별 해당 주제에 따른 활동지와 진행 자료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라. 프로그램 평가

1) 사전 평가 : 개입 시작 1주일 전

본 연구를 위하여 대기통제 집단 및 처치 집단의 대상자들에게 개입 전 연령 및 범죄 횟수, 징역 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면담을 시행하였고, 사전 평가지를 제공하였으며, 개입 1회기 시작 전 각 집단들의 평가지를 수거하였다.

2) 사후 평가 : 개입 종료 후

회기가 진행 되는 동안 대기통제 집단 및 처치 집단에게 동일하게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평가에 대해 공지하였다. 프로그램 종결 이후 처치 집단과 대기통제 집단 모두에게 사전평가지와 동일한 척도로 구성된 사후 검사 및 사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속한 전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을 거쳐 승인된 내용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였으며(IRB 승인번호 2022-12-019-001),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 인간(수용자 및 직원) 대상 연구 윤리 안내에 따른 협조」 요청을 통해 연구 대상자를 수집하였다.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는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서 연구의 목적과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연구 참여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자유의사에 의한 참여 및 동의 철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동의받았다.

4. 측정 도구

가. 단약자기효능감 척도(Drug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단약자기효능감 척도는 DiClemente 등(1994)이 개발한 금주 자기효능 척도(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AASE)를 김성재(1996)가 번역하여 활용한 자기 보고식 단약 자기효능감 척도이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매우 자신 없음'(0점)으로부터 '매우 자신 있음'(5점) 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성재(1996)의 연구에서 Cronbach ┌는 .92이다. 총점은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단약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나. 변화준비도 및 치료열망단계 척도(K-Stage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D : K-SOCRATES-D)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에 대한 준비를 위한 객관적인 도구로써 변화 준비척도(K-SOCRAT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Miller와 Tonigan(1996)이 개발한 변화 준비단계 및 치료 열망 척도(SOCRATES: stage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를 신수경(2014)이 흡입제 의존자, 메스암페타민 의존자, 대마초 의존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판 변화 준비도 및 치료 열망 단계 척도를 타당화한 것이다.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5점)'로 평정되는 5점 Likert식 척도이다. 신수경(1994)의 연구에서 Cronbach ┌는 .819였으며, 행동 실천 요인은 .917, 인식요인은 .857, 양가감정요인은 .742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변화준비도 및 치료열망단계 척도

변화단계	측정 척도	항목 설명	구성 문항	문항 수
인식 전단계	*	*		
인식단계	양가감정 요인	자신의 물질 사용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는 정도	2,6,11,16	4
준비단계	인식 요인	약물 사용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고 변하지 않으면 해로운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각의 정도	1,3,7,10,12, 14,15,17	8
실행단계 유지단계	행동 실천 요인	변화과정에서의 행동 실천 정도	4,5,8,9,13, 18,19	7
전체				19

다. 한국판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척도(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 DASS 21)

Antony 등(1998)이 우울, 불안,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하위요인별 12개 문항 총 42개 문항을 개발하면서 전체 버전(42문항)과 단축형 버전(21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단축형 버전만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임상군 및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확인하였다(Henry & Crawford, 2005; Shea 등,

2009; Slnclair 등, 2012; Trauer 등, 2007). 이후 21문항 척도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은현(2005)이 21문항의 척도를 국내에서 타당화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는 전체 척도의 경우 .93이었고, 우울은 .84, 불안은 .85, 그리고 스트레스는 .90이었다. 피검자들은 0점(전혀 해당하지 않음)에서 3점(거의 대부분 해당함)까지의 4점 Likert식 평정척도에 응답하고, 채점은 전체 점수 및 하위요인별 문항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총점 범위는 0점에서 63점이며, 총점 및 하위요인의 사후 점수가 감소하는 경우, 긍정적 변화로 해석된다<표 4 참조>.

<표 4> 우울,불안 및 스트레스 척도

측정 척도	구성 문항	문항 수
우울	3,5,10,13,16,17,21	7
불안	2,4,7,9,15,19,20	7
스트레스	1,6,8,11,12,14,18	7
전체		21

라. Barratt 충동성 척도(Barratt Impulsiveness Scale: BIS)

Barratt 충동성(Barratt Impulsiveness Scale)척도Ⅱ(1969)판을 이현수(199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한다. 이 척도는 인지충동성 6문항, 운동충동성 8문항 및 무계획 충동성 9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이다. 총점 범위는 최저 23점에서 최고 11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현수(1994)의 연구에서 Cronbach ┌는 .81이었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처치 집단과 대기통제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램 시행 전의 사전검사 점수를 이용하여 Mann-Whitney U 검정(본 연구의 표본 크기가 작기에, 비모수 통계처리 기법인 Mann-Whitney U 검정)을 하였다. 그리고 처치 집단과 대기통제 집단에서 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의 결과값의 비교를 위해 비모수 검정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증(Wilcoxon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Ⅲ. 결 과

본 연구에서 교육이수명령을 받은 마약류 사범들이 교도소 내에서 인지행동이론에 근거한 회복 믿음 프로그램을 통해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를 시행하여 비교·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사전 동질성 검증

가. 일반적 특성

1) 연령 및 범죄 경력

연구에 참여한 24명의 집단별 참여자들의 나이, 범죄 횟수, 징역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나이에서 50~59세가 처치 집단, 대기통제집단에서 각 6명(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범죄 횟수에서는 6~10회가 각 7명(33.3%)으로 높게 나타났다. 징역 기간은 1년 이상~1년 6개월 미만이 처치 집단, 대기통제집단에서 각 7명(58.3%)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처치, 대기통제집단의 참여자들이 고른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연구 참여자 특성

구분	분류	빈도(%)	
		처치집단	대기통제집단
연령	30~39세	2(16.7%)	2(16.7%)
	40~49세	4(33.3%)	4(33.3%)
	50~59세	6(50%)	6(50%)
	60세 이상	0(0%)	0(0%)
범죄횟수	1~5회	3(25%)	3(25%)
	6~10회	7(33.3%)	7(33.3%)
	11~15회	2(16.7%)	2(16.7%)
징역	1년 이상~1년 6개월 미만	7(58.3%)	7(58.3%)
	1년 6개월 이상~2년 미만	4(33.3%)	4(33.3%)
	2년 이상~2년 6개월 미만	1(8.3%)	1(8.3%)
	2년 6개월 이상~3년 미만	0(0%)	0(0%)

2) 이수 명령 분포도

연구에 참여한 24명의 집단별 참여자들의 이수 명령 시간을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이수 명령 시간이 40시간을 받은 사람이 처치 집단과 대기통제집단 각 10명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이수 명령 시간이 100시간과 120시간을 받은 대상자가 각각 1명으로 두 집단 간 동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표 6> 이수명령 분포도

구분	시간	처치 집단	대기통제집단
이수명령시간	이수명령시간없음	0	0
	40시간	10(83.3%)	10(83.3%)
	100시간	1(8.3%)	1(8.3%)
	120시간	1(8.3%)	1(8.3%)

나.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사 결과

프로그램 시행 전 처치 집단과 대기통제집단 간 단약자기효능감, 변화준비도 및 치료열망단계, 한국판 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 충동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 U 검정을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단약자기효능감, 충동성 척도에서 처치 집단과 대기통제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한국판 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에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하위요인별 요인에서도 처치, 대기통제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변화 준비도 및 치료열망단계척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 볼 때 행동실천 및 양가 감정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인식요인에서 처치 및 대기통제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사전 동질성을 충족할 수 없었다.

<표 7> 사전 동질성 검사

구분	요인	집단(N)	평균순위	순위합	Mann-Whitney U	Z
단약자기 효능감		처치(12)	14.33	172.00	50.000	-1.271
		대기통제(12)	10.67	128.00		
변화준비도 및 치료열망 단계척도	행동실천	처치(12)	13.08	157.00	65.000	-.406
		대기통제(12)	11.92	143.00		
	인식	처치(12)	8.46	101.50	23.500	-2.810*
		대기통제(12)	16.54	198.50		
	양가감정	처치(12)	10.29	123.50	45.500	-1.540
		대기통제(12)	14.71	176.50		
한국판 우울,불안 스트레스 척도	우울	처치(12)	12.38	148.50	70.500	-.087
		대기통제(12)	12.63	151.50		
	불안	처치(12)	10.50	126.00	48.000	-1.401
		대기통제(12)	14.50	174.00		
	스트레스	처치(12)	12.21	146.50	68.500	-.203
		대기통제(12)	12.79	153.50		
충동성		처치(12)	11.21	165.50	56.500	-.897
		대기통제(12)	13.79	171.50		

* p<.05

2. 프로그램 효과 분석

본 연구 분석으로 처치 집단 및 대기통제집단 내의 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비모수 통계 윌콕슨 부호-순위검정(Wilcoxon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고, 각 집단 내의 척도별 사전-사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프로그램이 단약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회복 믿음 프로그램이 단약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처치 집단 및 대기통제집단 내의 사전·사후 점수를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단약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요인	집단(N)	사전	사후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Z
		M(SD)	M(SD)	N	평균 순위	순위 합	N	평균 순위	순위 합		
단약자기 효능감	처치 (12)	3.41 (0.93)	4.07 (0.39)	3	3.67	11.00	9	7.44	67.00	0	-2.197*
	대기통제 (12)	3.89 (0.90)	3.74 (0.87)	7	5.14	36.00	3	6.33	19.00	2	-.866

* p<.05

사전·사후 점수 차이에 대한 윌콕슨 부호-순위검정 결과, 회복믿음 프로그램을 실행한 처치 집단과 대기통제집단의 단약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살펴볼 때 처치 집단의 점수는 사전평균 3.41에서 사후평균 4.07로 대기통제집단에서는 사전평균 3.89에서 사후평균 3.74의 결과를 보였으며, 대기통제집단은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처치 집단은 단약자기효능감에 대한 통계(Z=-2.197,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프로그램이 변화준비단계에 미치는 효과

회복 믿음 프로그램이 변화준비단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처치 집단 및 대기통제 집단 내의 사전·사후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변화준비단계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구분		집단 (N)	사전 M(SD)	사후 M(SD)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Z
					N	평균 순위	순위 합	N	평균 순위	순위 합		
변화 준비도 및 치료열망 단계척도	행동 실천 요인	처치 (12)	4.07 (0.74)	4.22 (0.88)	6	6.08	36.50	6	6.92	41.50	0	-.197
		대기통제 (12)	4.11 (0.89)	3.86 (0.84)	8	6.63	53.00	3	4.33	13.00	1	-1.79
	변화 인식 요인	처치 (12)	4.32 (0.74)	4.27 (0.67)	7	5.07	35.50	4	7.63	30.50	1	-.223
		대기통제 (12)	3.23 (0.82)	3.39 (0.80)	4	4.25	17.00	5	5.60	28.00	3	-.654
	양가 감정 요인	처치 (12)	3.29 (0.91)	3.04 (1.39)	5	6.30	31.50	5	4.70	23.50	2	-.408
		대기통제 (12)	2.77 (0.56)	2.83 (0.77)	4	7.13	28.50	6	4.42	26.50	2	-.103

* p<.05

변화준비도 및 치료열망단계척도에서 사전·사후 점수 차이에 대한 윌콕슨 부호-순위검정 결과 행동실천요인에 대해 처치 집단은 사전평균 4.07에서 사후평균 4.22, 대기통제집단은 사전평균 4.11에서 사후평균 3.86으로 나타났고, 양가감정 요인에 대한 처치 집단은 사전평균 3.29에서 사후평균 3.04, 대기통제집단은 사전평균 2.77에서 사후평균 2.83으로 나타났다. 변화인식요인에 대한 처치 집단은 사전평균 4.32에서 사후평균 4.27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을 시행한 처치 집단에서 행동실천요인에서 긍정적 변화는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양가감정 요인에서도 처치집단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 프로그램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

회복 믿음 프로그램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처치 집단 및 대기통제집단 내의 사전·사후 점수를 검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우울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요인	집단 (N)	사전 M(SD)	사후 M(SD)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Z
				N	평균 순위	순위 합	N	평균 순위	순위 합		
우울	처치 (12)	2.58 (0.36)	1.48 (0.55)	12	6.50	78.00	0	0.00	0.00	0	-3.061*
	대기통제 (12)	2.48 (0.35)	2.63 (0.33)	4	6.25	25.00	8	6.63	53.00	0	-1.115

* p<.05

사전·사후 점수 차이에 대한 윌콕슨 부호-순위검정 결과 우울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점수에서 처치 집단은 사전평균 2.58에서 사후평균 1.48, 대기통제집단은 사전평균 2.48에서 사후평균 2.63으로 나타났으며, 대기통제집단은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처치 집단은 우울에 대한 통계(Z=-3.061,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라. 프로그램이 불안에 미치는 효과

회복 믿음 프로그램이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처치 집단 및 대기통제 집단 내의 사전·사후 점수를 검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불안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요인	집단 (N)	사전 M(SD)	사후 M(SD)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Z
				N	평균 순위	순위 합	N	평균 순위	순위 합		
불안	처치 (12)	2.52 (0.21)	1.45 (0.39)	11	6.00	66.00	0	0.00	0.00	1	-2.938*
	대기통제 (12)	2.61 (0.28)	2.66 (0.30)	3	4.50	13.50	5	4.50	22.50	4	-.637

* p<.05

사전·사후 점수 차이에 대한 윌콕슨 부호-순위검정 결과 불안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점수에서 처치 집단은 사전평균 2.52에서 사후평균 1.45, 대기통제 집단은 사전평균 2.61에서 사후평균 2.66으로 나타났으며, 대기통제 집단은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처치 집단은 불안에 대한 통계(Z=-2.938,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마. 프로그램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회복 믿음 프로그램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처치 집단 및 대기통제 집단 내의 사전·사후 점수를 검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스트레스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요인	집단 (N)	사전	사후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Z
		M(SD)	M(SD)	N	평균 순위	순위 합	N	평균 순위	순위 합		
스트레스	처치 (12)	2.33 (0.32)	2.19 (0.22)	5	4.60	23.00	2	2.50	5.00	5	-1.552
	대기통제 (12)	2.50 (0.25)	2.50 (0.36)	6	4.33	26.00	3	6.33	19.00	3	-.418

* p<.05

사전·사후 점수 차이에 대한 윌콕슨 부호-순위검정 결과, 처치 집단과 대기통제 집단의 스트레스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점수에서 처치집단은 사전평균 2.33에서 사후평균 2.19, 대기통제집단은 사전평균 2.50에서 사후평균 2.50으로 나타났다. 대기통제 집단에서는 스트레스 지수의 차이가 없었으며, 처치 집단에서는 스트레스 지수에 대해 긍정적 변화는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바. 프로그램이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회복 믿음 프로그램이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처치 집단 및 대기통제 집단 내의 사전·사후 점수를 검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충동성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요인	집단 (N)	사전	사후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Z
		M(SD)	M(SD)	N	평균 순위	순위 합	N	평균 순위	순위 합		
충동성	처치 (12)	2.63 (0.35)	2.33 (0.17)	10	6.45	64.50	1	1.50	1.50	1	-2.805*
	대기통제 (12)	2.73 (0.33)	2.68 (0.37)	6	7.50	45.00	6	5.50	33.00	0	-.471

* p<.05

사전·사후 점수 차이에 대한 윌콕슨 부호-순위검정 결과 충동성에 대한 사전 사후 비교 점수에서 처치 집단은 사전평균 2.63에서 사후평균 2.33, 대기통제집단은 사전평균 2.73에서 사후평균 2.68로 나타났다. 대기통제집단은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처치 집단은 충동에 대한 통계(Z=-2.805,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법원에서 재활교육 이수 명령을 받은 마약류 사범이 교정 시설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도소에 복역 중인 마약류 사범들을 대상으로 이수 명령 프로그램에 참여한 처치 집단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기통제집단을 비교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수 명령 프로그램이 단약 자기효능감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기통제 집단에서는 단약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변화가 없었던 반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처치 집단에서는 단약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보호관찰소에서 마약류 사범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단약 자아존중감에 대해 유의미한 추세를 보였던 Kim(200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예측할 수 없는 고위험 상황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했을 때, 그 요인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행동 패턴을 조직적으로 적용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원유수, 2020; 장경호, 2010; Bandura, 1995),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한 행동에 대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대한 지각 정도나, 신체적인 건강과 심리적 적응에 관여하는 개인적인 통제의 힘을 이야기할 수 있다(윤혜진, 2016).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고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 높은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문제에 대한 행동에 대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원유수, 2020).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고 및 정서적 측면과 행동을 통제하면서 자기 조절을 해야 하는 경우 자기 조절 과정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Fiske & Taylor, 2013), 회복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재발이 반복되는 약물 중독의 특성 상 단약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념이 꾸준하게 제시되고 있다. Abrams와 Niaura(1987)는 효과적으로 약물중독에 대한 고위험 상황에 대해 통

제할 수 있는 개인의 믿음을 약물중독이 결정될 수 있는 주된 요인으로 보고, DiClement(1994)도 약물중독에 대한 고위험 상황에서 그 하위 요소에 대해 사회적인 압력과 부정적 정서, 신체적 고통, 금단 및 갈망으로 나누었다. 박성균(2006)은 단약 자기효능감이 행위의 선택을 포함하여 일반화 및 유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단약 자기효능감이 약물중독을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개념이라고 하고 있으며, 손해인(1996)의 연구에서도 약물 중독자가 단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인지·행동적인 대처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훈련하여 고위험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약물 중독자들이 고위험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마약류 사범의 단약 자존감의 증가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이수 명령 프로그램이 변화준비단계에 대하여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차이 검증 결과, 측정도구 하위요인에서 대기통제집단 및 처치집단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변화에 대한 동기는 약물 사용에 대한 중단과 변화에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Flynn, Joe, Broome, Simpson, Brown, 2003; West, 2006).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Prochasksa(1992)의 5가지 변화 단계모델 즉 인식 전 단계, 인식단계, 준비단계, 실행단계 및 유지단계를 약물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양가감정 요인, 인식요인, 행동실천 요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양가감정 요인은 인식 전 단계와 인식단계를 결합한 요인으로 동일한 대상이나 상황에 있어서 상반된 감정을 지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상의 결합에서 오는 혼란스러운 감정이나 태도가 함께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인식 요인은 변화단계 모델에서 준비단계에 해당하며 약물 사용 문제에 대해 스스로 중독자임을 인정하면서 변화를 위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변화하지 못한다면 재발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의 정도를 의미한다. 인식 요인은 또한 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선택한 행동의 목록들에 대해 실행해 나아가고자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신성만, 권정옥, 손명자, 2006). 마지막으로 행동실천 요인은, 변화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이나 경험, 환경 등을 수정하며 단약을 지속하는 과정을 말한다. 본 프로그램이 변화준비단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이유를 살펴 볼 때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약물 사용 중단이나 변화에 대해 양가감정을 나타내기도 하며(Choi & Yu, 2013; Shin, Min, 2012, 2013), 약물 재활치료에 있어서 비교적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구권에서도 약물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Brown & Needle, 1994; Sobell, Sobell, & Toneatto, 1992). 이들이 중독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낮은 동기 때문인데(Rapp, Xu, Carr, Lane, Redko, Wang, & Carlson, 2007) 일반적으로 동기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인 내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교정 시설에서 복역 중인 마약류 사범은 법원이나 교정 시설에서 자발적 참여가 아닌 명령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강요받았을 때 치료적 개입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거나 또는 치료적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는 등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발적인 프로그램의 참여가 재발 방지의 중요한 동기가 되지만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이수 명령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면서 약물에 대한 변화준비 단계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Gossop, Stewart, Marsden(2003)은 동기가 결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이는 변화 동기가 없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치료 과정에서 동기가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독자가 변화 과정을 실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중독에서의 치료적 관점에서 마약류 사범의 변화에 대한 욕구를 이끌어 내면서 효과적인 치료적 관계의 유지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재발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실제 프로그램 참여는 이수명령에 의한 것이지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지각된 자발성을 높여 주는 것이 변화준비 단계의 효과를 높여 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Gossop, Stewart, Marsden(2003)의 주장에 따라 마약류 사범의 변화에 대한 욕구를 잘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이수 명령 프로그램이 우울과 불안 및 스트레스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차이 검증 결과에서 대기통제집단에서는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척도에서 모두 변화가 없었지만, 프로그램을 시행한 처치 집단에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우울과 불안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이 결과는 회복믿음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우울과 불안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스트레스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수용자의 우울을 비롯한 정신건강 문제는 수용시설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사회복귀에 대한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전동일, 오봉욱, 2019; Hart & Hemphill, 1989). 우울은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 등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알려져 있는데(정슬기, 김지선, 2020; WHO, 2020), 구금시설의 특수성과 폐쇄성이라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수용자의 우울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교정 시설에서 수용자가 느끼는 불안은 구금으로 인한 엄격하고 긴장된 상황으로 인해 상태 불안이 일반인들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인지적 왜곡, 공격성 등 여러 가지 심리·행동적인 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홍성렬(2002)의 연구에서 보듯이, 수용자의 불안 감소가 수용 생활 내 문제 행동 및 출소 이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재범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공통으로 제시된 심리적 특성에서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은 우울과 불안이었으며(권지은, 박현선, 1998; 김경아, 2019; 김철호, 2004; 장희숙, 2010), 중독에 있어서도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재발의 방지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회복믿음 프로그램이 마약류 사범에게 우울과 불안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편, Toch(1977)는 수용자의 심리적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는 수용자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 나타나는 결과이며 수용 생활에서 과밀 수용이나 엄격한 규율의 적용과 통제, 자유를 제한받은 환경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현정 등(2002)의 연구에서도 마약 중독자들이 사소한 생활 스트레스에서도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자기 통제나 조절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런 점에서 출소 이후 다시 약물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회복믿음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수용자들이 타의에 의한 프로그램 참여가 하나의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들이 자기 모습에 대해 직면할 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신념 변화를 강조하는 활동을 함께 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즉, 현행의 이수명령 프로그램 내용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측면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로 이수 명령 프로그램이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기통제집단에서는 충동성의 변화가 없었지만, 처치 집단에서는 충동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마음챙김 기반 인지행동 프로그램(MBCT)이 마약류 사범의 충동성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조중현과 손정락(2013)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Barratt과 Patton(1983)은 반응시간이 빠르고 행동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면서 상황에 대한 계획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라고 충동을 정의하였다. Moeller 등(2001)은 코카인 중독자 치료에 관한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약물 남용 및 의존자들은 충동성이 높으며, 중독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충동성의 점수가 높아 코카인 의존 환자의 치료 목표는 코카인을 하고 싶은 충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조용진(2002)의 연구에서도 충동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즉각적인 행동과 조급함이 존재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며, 모험적 상황을 선호하는 성격과 특징이 있어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충동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고려해볼 때 수용자들의 충

동성 감소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는 교정 시설 내에서 이수 명령을 받은 마약류 사범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회복믿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국내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그 효과를 실증하려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로 교정 시설의 특수 상황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회기가 끝나고 출소 등으로 인한 추수 면담 및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이 마약류사범의 특성 상 현재 교정 시설내에서의 적응 뿐만 아니라 출소 이후의 회복의 삶을 목적으로 진행되었기에 뒤늦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추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추적 검사 및 구조화된 면담과 관찰 등을 통해 이수 명령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에 관하여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로 본 연구의 표본 수가 부족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교정 시설 내에서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에 대한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처치집단과 대기통제집단에 참여하는 대상이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교정 시설에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의 동질성으로 인해 각 교정 시설마다 분산시켜 수용하는 특성상 표집 대상의 모집에 한계가 있었고, 통계적 효과성을 검증하기에는 표본의 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 수를 늘려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은영, 조소연 (2014). 약물남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검찰청 (2018). 2018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검찰청 (2021). 2021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검찰청 (2022). 2022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권지은 (1998).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거성 (2015). 필로폰 중독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교헌 (2006). 중독과 자기 조절: 인지신경과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63-105.

김기봉 (2000). 자기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마약사용극복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낭희, 서정민 (2012). 마약류사범의 약물중독, 알코올의존, 정신질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4), 50-64.

김범식, 김학범 (2011). 중독범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1), 89-113.

김용석 (1998). 미국의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과 약물중독치료의 최근 동향. 사회복지리뷰, 3, 107-120.

김용진 (1998).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성인약물중독자의 사회심리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용진 (2000). 약물중독자들의 재발 예방을 위한 단기집단 프로그램의 적용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9, 25-53.

김은경 (2006). 한국 마약류 사용사범 특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1-338.

김성재 (1996). 알코올리즘의 재발에 관한 이론적 모형구축: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성 알코올리즘 환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주은 (2020). 마약중독의 근거기반치료.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2), 186-201.

동아일보 (2021). 우울증에 혹시 도움될까 싶어… 마약 초범들 해외직구도 (donga.com).

박상규 (2002).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자기 사랑하기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임상심리학회지, 29(1), 693-703.

박상규 (2004). 마약류 의존자의 심리적 특성. 상담학 연구, 5, 899-910.

박성균 (2006). 집단치료 프로그램이 알코올의존자들의 자아존중감과 단주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성수 (2018).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비용 분석. Medicine, 29(3), 201-212.

박성수 (2018).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비용 분석. 치안정책연구, 51, 191-22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9). 주요국의 마약류 규제동향 보고서.

신수경 (2014). 약물용 한국어판 변화준비도 단계 및 치료열망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2), 973-985.

윤정숙,김민영,이태헌 (2020).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 회복믿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47.

윤혜진 (2016). 집중명상(Samatha) 프로그램이 마약중독자의 갈망, 자아존중감 및 단약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佛敎學報, 285-313.

원유수 (2020). 약물중독자의 회복자본과 단약 자기 효능감의 관계 사회적 회복자본과 물질적 회복자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데일리(2022). 하루 23건씩 연일 마약에 찌드는 한국(edaily.co.kr).

이상경 (2007). 사전 접종을 이용한 기업의 선행적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은현 (2005).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성 검증. 간호학탐구, 14(1), 73-87.

이종세 (2001). 마약중독과 치료 및 재활 실태에 관한 연구: 마약중독과 치료 재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현수 (1992). 충동성검사. 서울: 한국가이던스.

인현정, 김교헌 (2002). 약물남용자의 자기노출이 부적 정서와 신체병리경험 및 약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7(1), 111-124.

손해인 (1996). 약물남용 청소년의 재발 예방을 위한 집단활용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신성만, 권정옥, 손명자 역(2006). 동기강화상담 변화준비 시키기. 시그마프레스. Miller, R. W & Rollnick, S., Motivational interviewing.

전동일, 오봉욱 (2019). 교정 시설 수용자의 우울 잠재집단 유형과 설명 요인, 교정복지연구, 58, 51-70.

전영실, 김유근, 허황 (2019). 마약류 통제기법 선진화 방안-치료, 재활제도를 중심으로. 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11-1280000-000298-01).

정슬기, 김지선 (2021). 한국 성인의 우울을 예측하는 사회적 결정요인,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9(1), 229-258.

조용진 (2002). 청소년들의 컴퓨터 게임 중독현상에 관한 연구: 플로우 및 개인적 성향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성남, 강향숙, 김선민, 김주은, 문봉규, 박상규, 신성만(2021).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치료. 학지사.

조중현, 손정락 (2013).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MBCT) 프로그램이 마약류중독자의 우울, 충동성 및 단약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32(1), 13-31.

채규만 (2002). 약물중독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적 접근. 2002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최송식 (2013). 한국 사회에서 알코올중독자의 재발 예방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48, 307-348.

홍남식 (2001). 마약류관련 수용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Abrams, D. B. & Niaura, R. S. (1987).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Guildford press.

Andrews, D. A., & Bonta, J. (1994).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Cincinnati, OH: Anderson Publishing Co.

Andrews, D. A., & Bonta, J. (2010). Rehabilitating criminal justice policy and practice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6, 39-55.

Aos, S., Miller, M. G., & Drake, E. (2006). Evidence-based adult corrections programs:What works and what does not (p. 21). Olympia: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1986(23-28).

Barratt, E., & Patton, J. H. (1983). Impulsivity: Cognitive, behavioral, and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In M. Suckerman (Ed.), Biolgic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impulsivity, and anxiety. Hillsdale, N. J.: Erlbaum.

Budney, A. J., & Hughes, J. R. (2006). The cannabis withdrawal syndrome.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19(3), 233-238.

Beck, A., Emery, G., & Greenberg, R.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Beck, A. T., & Haigh, E. A. (2014). Advances in cognitive theory and therapy: The generic cognitive model.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0(1), 1-24.

Beckman, L. J. (1980). An attribution analysis of Alcoholics Anonymou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28(3), 36-52.

Beech, A., & Fordham, A. S. (1997). Therapeutic climate of sexual offender treatment program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9, 219-237.

Belenko, S., Foltz, C., Lang, M. A., & Sung, H. E. (2004). Recidivism among high-risk drug felons: A longitudinal analysis following residential treatment.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40(1-2), 105-132.

Brown, B. S., Needle, R. H. (1994). Modifying the process of treatment to meet the threat of AIDS,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s, 29(13), 1739-1752.

Brown, S. A., Goldman, M. S., Inn, A., & Anderson, L. R. (1985). Expectations of reinforcement from alcohol: their domain and relation to drinking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4), 419.

Cho, J. H., & Son, C. N. (2013). Effects of the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MBCT) program on depression, impulsivity, and drug abstinence self-efficacy of drug addic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 13-31. (in Korean).

Choi, J. H., Yu, M. (2013). The effect of development assets on substance abus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1B), 277-292. (in Korean).

Clear, T. R., Cole, G. F., & Reisig, M. D. (2009). American corrections, 8th edition. Thomson Wadworth, Thomson Learning, Inc.

Compton, J., Jackson, B., & Dimmock, J. A. (2016). Persuading others to avoid persuasion: Inoculation theory and resistant health attitudes, Frontiers in psychology, 7, 122. https://doi.org/10.3389/fpsyg.2016.00122.

Dahl, G., & Mogstad, M. (2020). The benefits of rehabilitative incarceration. NBER Reporter, (1), 18-21.

Daley, M., Love, C. T., Shepard, D. S., Petersen, C. B., White, K., & Hall, F. B. (2004). Cost-effectiveness of Connecticut's in-prison substance abuse treatment.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39(3), 69-92.

Davis, M. L., Powers, M. B., Handelsman, P., Medina, J. L., Zvolensky, M., & Smits, J. A. J. (2015). Behavioral therapies for treatment-seeking cannabis users: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Evaluation & The Health Professions, 38, 94-114.

DiClemente, C. C., Carbonari, J. P., Montgomery, R. P. G., Hughes, S.O. (1994). The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55(2), 141-148.

Epstein, David H.,Hawkins, Wesley E., Covi, Lino, Umbricht, Annie, Preston, Kenzie L. (2003)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7(1), 73-82.

Fiske, S. T., & Taylor, S. E. (2013). Social cognition from brains to culture(2nd ed), CA: Sage Publications Inc.

Flynn, P. M., Joe, G. W., Broome, K. M., Simpson, D. D., Brown, B. S. (2003). Looking back on cocaine dependence: reasons for recovery, American Journal on Addictions, 12, 398-411.

Grant, J. E. (2009). 충동조절장애. 김교헌. 이경희, 이형초, 권선중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8년에 출판).

Grossman, L. S., Martis, B., & Fichtner, C. G. (1999). Are sex offenders treatable? A research overview. Psychiatric services, 50(3), 349-361.

Hanson, R. K., & Morton-Bourgon, K. E. (2005). The characteristics of persistent sexual offenders: A meta-analysis of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 1154-1163.

Hanson, R. K., Helmus, L., & Thornton, D. (2010). Predicting recidivism amongst sexual offenders: A multi-site study of Static-2002. Law and Human Behavior, 34(3), 198.

Hart, S. D., & Hemphill, J. F. (1989). Prevalence of and service utilization by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t the Vancouver Pretrial Services Centre. Report submitted to the British Columbia Corrections Branch in fulfillment of contract No. COR-22153.

Henry, J. D., & Crawford, J. R. (2005). A meta-analytic review of verbal fluency deficits in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neuropsychology, 27(1), 78-101.

Kim, Y. J. (2000).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hort-term group activity pro for relapse prevention of substance abusers. Mental Health & Social Work, 9, 25-53. (in Korean).

Matusitz, J., & Breen, G. M. (2013). Applying inoculation theory to the study of recidivism reduction in criminal prison inmates. Journal of Evidence-Based Social Work, 10(5), 455-465.

McDonell, M. G., Srebnik, D., Angelo, F., McPherson, S., Lowe, J. M., Sugar, A., & Ries, R. K. (2013).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contingency management for stimulant use in community mental health patient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0, 94-101.

McGuire, W. J., & Papageorgis, D. (1962). Effectiveness of forewarning in developing resistance to persuasion. Public Opinion Quarterly, 26(1), 24~34.

McGuire, W. J., & Papageorgis, D. (1961). The relative efficacy of various types of prior belief┌defense in producing immunity against persuasion.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2), 327.

McGuire, W. J. (1961). The effectiveness of supportive and refutational defenses in immunizing and restoring beliefs against persuasion. Sociometry, 24(2), 184-197.

McGuire, W. J. (1964). Inducing resistance to persuasion. Some contemporary approaches. CC Haaland and WO Kaelber (Eds.), Self and Society. An Anthology of Readings, Lexington, Mass.(Ginn Custom Publishing) 1981, pp. 192-230.

McGuire, J. (2002). Integrating findings from research reviews. Offender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Effective programmes and polices to reduce re-offending, 1-38.

Miller, W. R., Tonigan, J. S. (1996). Assessing drinkers' motivation for change: the 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 (SOCRATE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0, 81-89.

Moeller, F. G., Dougherty, D. M., Barratt, E. S.,Schmitz, J. M., Swann, A. C., & Grabowski, J. (2001). The impact of impulsivity on cocaine use and retention in treatment.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21, 193-198.

Moore, T. H., Zammit, S., Lingford-Hughes, A., Barnes, T. R., Jones, P. B., Burke, M., & Lewis, G. (2007). Cannabis use and risk of psychotic or affective mental health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The Lancet, 370, 319-328.

Mumola, C. J.(1998). Substance abuse and treatment: State and prisoners 1997. 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U.S. Department of Justice.

Nancy, G. S. (1991). Fighting alcohol and substance abuse among Indian and Alaskan Native Youth. Clearinghouse on Rural Education and Small Schools.

Listwan, S. J., Sundt, J. L., Holsinger, A. M., & Latessa, E. J. (2003). The effect of drug court programming on recidivism: The Cincinnati experience. Crime & Delinquency, 49(3), 389-411.

Lipton, D. (1995).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 for drug abusers under criminal justice supervision.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ovember, 23-33.

Löel, F., & Schmucker, M. (2005).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 for sexual offenders: A comprehensive meta-analysis.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1, 117-146.

Lundahl, B. W., Kunz, C., Brownell, C., Tollefson, D., & Burke, B. L. (2010). A meta-analysis of motivational interviewing: Twenty-five years of empirical studie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20, 137-160.

N`akhaee, N, Ziaaddini, H, & Karimzadeh, A., (2009), Epidemiologic study on drug abuse among first and second grade high school students in kerman. Addiction and health, 1(1), 31-36.

Orlikowski, W. J., & Yates, J. (2002). It's about time: Temporal structuring in organizations. Organization science, 13(6), 684-700.

Park, S., & Baik, M. (2019). A qualitative study on the hidden crime rate measurement of drug crimes.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18, 151-170. (in Korean).

Pfau, M., Van Bockern, S., & Geenkang, J. (1996). The effectiveness of peer and adult inoculation videos in promoting resistance to smoking in adolescents. Communication Monographs, 62, 19-33.

Pfau, M. (1997). The inoculation model of resistance to influence.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 133-172.

Pfau, M., Tusing, K. J., Koerner, A. F., Lee, W., Godbold, L. C., Penaloza, L., et al. (1997). Enriching the inoculation construct: The role of critical components in the process of resistanc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4 , 187-215.

Pfau, M., Tusing, K. J., Lee, W., Godbold, L. C., Koerner, A., Penaloza, L. J., et al. (1997). Nuances in inoculation: The role of inoculation approach, ego┌involvement, and message processing disposition in resistance. Communication Quarterly, 45 , 461-481.

Prochaska, J. O. (1992). Stages of change in the modification of problem behaviors. Progress in behavior modification, 28.

Rapp, R. C., Xu, J., Carr, C. A., Lane, D. T., Redko, C., Wang, J., Carlson, R. G. (2007). Understanding treatment readiness in recently assessed, pre-treatment substance abusers. Substance Abuse, 28(1), 11-23.

Regier, D. A., Kuhl, E. A., & Kupfer, D. J. (2013). The DSM-5: Classification and criteria changes. World psychiatry, 12(2), 92-98.

Spohn, C., Piper, R. K., Martin, T., & Frenzel, E. D. (2001). Drug courts and recidivism: The results of an evaluation using two comparison groups and multiple indicators of recidivism. Journal of drug issues, 31(1), 149-176.

Toch, H. (1977). Living in prison: The ecology of survival. Free Press.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2003). Drug Abus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A Practical Planning and Implementation Guide. United Nations Publications.

Van der Linden, S., Leiserowitz, A., Rosenthal, S., & Maibach, E. (2017). Inoculating the public against misinformation about climate change. Advanced Science News, Global Challenges, 1~7.

Völm, B., Craissati, J., Grubin, D., Skett, S., & Williams, F. (2019). Learning from research: Adapting interventions for sexual offending to improve outcomes.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29(4), 227-238.

Wyer, R. S. (1974). Cognitive organization and change: An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Taylor & Francis.

Yang, O. K., Lee, K. Y., Jhoo, S. H., & Hyeon, J. H. (2008). Mental health and human rights survey on extremely vulnerable class.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Korean).

Yun, G, N. (1997). Hidden Addiction. Seoul: Chammedia. (in Korean).

교정시설 치료공동체에 대한 질적 메타 종합 연구(하)

유숙경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마약류 수형자들이 교정치료공동체와 치료공동체에 참여한 경험을 다룬 8편의 질적 연구 결과를 질적 메타 종합 연구 방법으로 종합하였다. 질적 메타 종합연구는 유사한 주제를 다룬 개별적 질적 연구의 구술 데이터를 통합하여 좀 더 일반화 가능성이 있는 설명 체계를 도출하는 연구로 현상에 대한 확장된 해석과 심화된 설명 모델을 도출할 수 있는 동시에 증거 기반 실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이다(Marlowe, 2011; Sandelowski, Barroso & Voils, 2007:100-109; Zimmer, 2006:311-318). 본 연구에서 질적 메타 종합 연구의 최종적 목표는 교정치료공동체와 치료공동체의 연구 주제와 관계된 연구물을 종합하여 교정치료공동체의 새로운 실천 아젠다를 발굴하고 기본 철학을 제시한 것이다. 마약류 수형자의 교정시설 교정치료공동체 참여 경험과 지역사회 치료공동체 참여 경험 과정에서 중독에서 회복에 영향을 미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에 주목하여 자료 분석하였다. 선정된 선행 연구의 구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7개의 통합 주제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 주제 10개를 생성하였다. 10개의 핵심 주제를 3개의 부정적 요인과 7개의 긍정적 요인으로 나눠 제시하였다. 마약류 수형자가 경험한 교정치료공동체와 치료공동체 부정적 요인의 종합적인 경험은 '생명력 없는 프로그램', '관행적 실천', '상호신뢰 기반의 동요'이다. 또한, 마약류 수형자의 교정치료공동체와 치료공동체의 긍정적 요인의 종합적 경험은 '사회로 가는 디딤돌', '치료 집중구조', '서로에게 배움', '인격의 재구조화', '윤리적 인간으로의 진화', '자기주도적 단약효능감 생성', '인본주의적인 치료 공간'으로 개념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제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시설에서 운영하는 치료공동체에는 기본 철학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Burdon et al., 2002). 하지만, 한국은 교정치료공동체의 철학, 가정, 구성 모듈이 없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에 교정치료공동체의 어떠한 상황과 맥락적 조건 등이 재범 예방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그래서 교정시설 내의 치료공동체 도입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모듈 물론 기본 철학 그리고 운영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박현나, 2021: 370-372; 유숙경, 2020:92). 이처럼 연구가 부족한 교정치료공동체는 지역사회 치료공동체와는 달리 핵심 철학이 체계적이지 않다. 그에 반해 지역사회 치료공동체의 핵심 철학은 삶에 대한 책임, 더 높은 가치의 봉사, 공동체의 성숙한 가치의 내면화, 동료 상호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등으로 제시하고 있었다(정현숙, 나동석, 2019:425-426; 이은진, 김정열, 2020:255). 또한, 치료공동체의 기본적인 요소는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공동체 환경,

역할을 통한 변화, 서로 간에 책임감 있는 모델, 치료적 관계의 구성, 집단 학습, 개방성과 의사소통, 공동체의 목표와 개인적 목표의 균형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정현숙, 나동석, 2019:425-426; 강성례, 2017:273; 이은진, 김정열, 2020:255). 교정기관의 교정치료공동체는 사회와 격리된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참여자들이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고 수형 중이어서 교정치료공동체의 철학은 지역사회 치료공동체의 핵심 철학을 기반으로 교정기관에 특수한 환경에 맞게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철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정치료공동체는 수형자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디딤돌 역할을 해야만 한다. 마약류 사용자들이 교정시설 내에서 실행하고 있는 재활 의지를 강화하고 단약을 유지하기 위한 재범 예방프로그램은 교정기관의 의도와 달리 마약 사용과 검거를 피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마약 학교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마약 확산에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Galassi, Mpofu & Athanasou, 2015). 이러한 교정기관의 구조적 문제는 사회복귀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마약류 수형자의 중독에서 회복을 위해서는 가족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마약류 수형자들은 교정기관에서 출소 이후 단약을 유지하고 있지만, 마약류 중독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 그리고 차별로 인한 기회 배제 등으로 인해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어려움은 재사회화의 실패로 재범에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Santos da Silveira et al., 2018:15-23). 중독에서의 회복은 약물 사용을 중단으로 보지 않고 한 개인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Dawson et al., 2005:281-291). 그래서 중독에서 회복은 중독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동기 유발에서 시작한다. 이처럼 마약류 수형자의 회복의 동기 유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은 교정시설이며, 교정시설의 전문인력이 확보는 회복에 중요한 긍정적 요인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치료공동체와 교정치료공동체에서는 치료공동체 담당자, 심리 전문가,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인적자원이 참여한다. 하지만, 외국 역시 다양한 전문인력이 부족은 한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대부분 소수의 전문가가 다수 수형자를 대상으로 회복을 돕는 치료공동체 시스템으로 개별화된 접근이 어렵기에 치료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치료공동체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에 교정기관 심리치료 관계자, 상담 전문가, 종교인과 지역사회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중독통합관리센터와 정신건강지원센터 등과 함께 지역사회 연계망을 활용한 회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협력적 관계와 탄력적 사례관리를 통해 회복과 재활이 유지할 수 있는 다리가 되는 기본 철학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치료공동체는 많은 부분이 치료 중심으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화된 방식에 철학적 기틀이 함께 한다면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사회 참여를 꿈꾸는 회복자라는 철학이 될 것이다. 셋째, 교정치료공동체는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정치료공동체를 관리 감독하는 치료공동체 담당자들은 전문성이 없고 자격이 없다고 수형자는 간주하여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래서 교정치료공동체 효과는 미흡하고 오히려 부정적 요인만 부각 된다. 현재의 교정과 교화의 교정 이념에서 재활과 회복이라는 교정 이념의 변화에 맞춰 교정기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교정기관은 수형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재사회를 통해 재범 예방을 돕기도 하지만, 수형자들의 범죄에 대한 응보적 관점에서 형사처벌의 받는 양가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Pallone & Hennessy, 2003:2-3). 이러한 징벌 또는 응보 차원의 관점은 치료 및 재활과 양립될 수 없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지나치게 응보적 차원은 치료공동체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기 없는 형식적 참여나 관료주의의 불신 풍조 등은 교정치료공동체 효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치료 효과가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전문성을 갖춰 신뢰감이 형성되면 건전한 노동, 도덕성 회복, 사회적 책임 등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교정치료공동체의 기본 철학은 치료는 재활을 제일주의로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넷째, 적절한 보상을 통한 단약 동기를 유발하고 단약 효능감을 강화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료공동체에서 긍정적인 행동 변화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 단약효능감과 회복에 기대를 강화하였다. 현재 마약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시설 내에 재범 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프로그램은 주로 심리치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직업재활 또는 가족 관계 회복 등과 같은 다양한 접근을 활용한 통합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마약류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단순한 수형보다는 교정치료공동체의 통합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참여 태도와 행동을 평가하여 치료 조건부 가석방과 처우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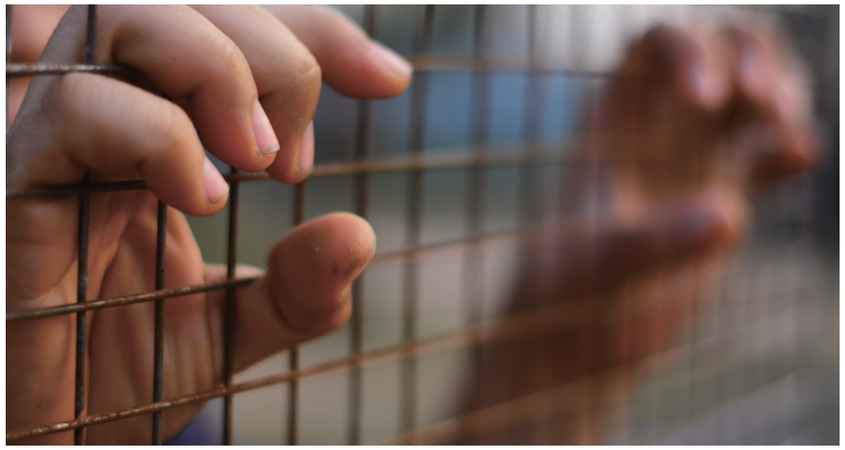

을 조정하는 제도 활용을 적극 주장하였다(김재한, 2015:27). 최근 마약류 수형자가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성적이 우수한 경우 법무부가 평가를 거쳐 가석방 심사를 반영하고 있다(법률 신문, 2024. 4. 1). 외국의 경우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특히, 교정기관과 별개로 외부 사업체와 연계하여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 교정기관에서도 노동은 물론 직업 훈련 등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강선경, 최미경, 2020:232). 수형자에게 교정기관 내부에서의 노동과 교정기관 외부에서의 노동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교정기관 내부에서의 노동은 단순한 노동이고 때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응보의 대가로 인식할 수 있지만, 교정기관 외부에서의 노동은 사회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인식이 높다. 교정치료공동체 모듈에는 명확한 사정과 평가를 거쳐 단약과 재활 의지가 높은 마약류 수형자에게는 교정기관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교정치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국외 치료공동체와 교정치료공동체의 연구물을 포괄적으로 종합하였다. 이를 통해 교정치료 공동체의 마약류 수형자의 치료공동체 경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정치료공동체 철학과 모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마약류 수형자의 재범 예방과 재활에 교정치료공동체의 역할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국외의 질적 연구물을 대상으로 교정치료공동체와 치료공동체 참여 경험을 과정 중심으로 분석하여 교정치료공동체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연구물의 한계가 있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모두 분석하는 통합적 문헌 분석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면 교정치료공동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경험과 양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민아, (2020), '교정시설 내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마약류 사범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선경/최미경, (2020), '남성 마약중독자의 회복활동가로의 생애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2(2), pp.231-258.

강성례, (2017), '치료공동체에 거주하는 남성 알코올의존자의 회복과정',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7(2), pp.267-276.

김재한, (2015), '중독범죄자의 사회복귀 활성화 방안-치료조건부 가석방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법무보호연구, 1, pp.25-56.

대검찰청, (2023), '마약류 백서', 서울:대검찰청.

박근정/진성주/박병선, (2023), '공중보건 모델에 따른 마약류 범죄 예방대책', 교정상담학연구, 8(1), pp.79-105.

박현나, (2021), '약물 남용 및 중독 문제가있는 수감자 치료: 미국 교정 기관에서 치료 공동체 (TC)의 효과에 대한 평가', 교정담론, 15(1), pp.369-394.

성경숙, (2021). 마약류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처우제도의 개선방안-미국의 약물치료법원 (Drug Treatment Court) 과 LEAD 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51, pp.255-291.

법무부, (2023), '교정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유숙경, (2020),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남성 마약류 중독자들의 마약사용 경험연구: 근거이론 접근', 교정복지연구, (65), pp.59-95.,

(2021). 교정정책 마련을 위한 마약 밀매자의 마약 밀매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남성회복자를 중심으로. 矯正硏究, 31(2), pp.111-147.

이은진/김정열, (2020), '도박중독자의 치료공동체 경험',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9(3), pp.253-263.

정현숙/나동석, (2019), '알코올 중독자 회복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치료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6), pp.424-440.

■외국문헌

Aguirre, R. T., & Bolton, K. W. (2014). Qualitative interpretive meta-synthesis in social work research: Uncharted territory. Journal of Social Work, 14(3), pp.279-294.

Ashdown, J. D., Treharne, G. J., Neha, T., Dixon, B., & Aitken, C. (2019). 'Māori men's experiences of rehabilitation in the Moana House Therapeutic Community in Aotearoa/New Zealand: A qualitative enquiry',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3(5), pp.734-751.

Azbel, L., Rozanova, J., Michels, I., Altice, F. L., & Stöver, H. (2017). 'A qualitative assessment of an abstinence-oriented therapeutic community for prisoners with substance use disorders in Kyrgyzstan', Harm reduction journal, 14, pp.1-9.

Belenko, S., Hiller, M., & Hamilton, L. (2013). 'Treating substance use disorder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urrent psychiatry reports, 15, pp.1-11.

Burdon, W. M., Farabee, D., Prendergast, M. L., & Messina, N. P. (2002). 'Prison-based therapeutic community substance abuse programs-Implementation and operational issues', Fed. Probation, 66, 3.

Corrigan, P. W., Kuwabara, S. A., & O'shaughnessy, J. (2009). 'The public stigma of mental illness and drug addiction: Findings from a stratified random sample', Journal of Social Work, 9(2), pp.139-147.

Da Cruz Domingues, G. G., Mendonça Corradi-Webster, C., & Ruzzi-Pereira, A. (2021). 'Occupational performance of users careers at Child and Youth Psychosocial Care Center', Saúde e Pesquisa, 14(4).

Davidson, K. M., & Young, J. T. (2019). 'Treatment engagement in a prison-based Therapeutic Community: A mixed-methods approach',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103, pp.33-42.

Dawson, S. A., Grant, B. F., Stinson, F. S., Chou, P. S., Huang, B., & Ruan, W. J. (2005). 'Recovery from DSM-IV alcohol dependent: United States, 2001-2002', Addiction, 100(3), pp.281-292.

Debaere, V., Vanheule, S., & Inslegers, R. (2014). 'Beyond the "black box" of the Therapeutic Community for substance abusers: A participant observation study on the treatment process', Addiction Research & Theory, 22(3), pp.251-262.

Doogan, N. J., & Warren, K. L. (2017). 'Saving my life: Dynamics of peer and staff corrections among therapeutic community residents', Substance use & misuse, 52(11), pp.1429-1438.

Finfgeld-Connett, D., & Johnson, E. D. (2011). 'Substance abuse treatment for women who are under correctional supervision in the community: A systematic review of qualitative finding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32(10), pp.640-648.

Galassi, A., Mpofu, E., & Athanasou, J. (2015). 'Therapeutic community treatment of an inmate population with substance use disorders: Post-release trends in re-arrest, re-incarceration, and drug misuse relaps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2(6), pp.7059-7072.

Greenall, P. (2004). 'Life in a prison-based therapeutic community: one man's experience', The British Journal of Forensic Practice, 6(1), pp.33-38.

Hamja, H., Hakim, L. N., & Kartini, M. (2022). 'The Effectiveness of Coaching Prisoners With The Therapeutic Community Method in The Cirebon Class IIA Narcotics Penitentiary', Jurnal Dinamika Hukum, 22(1), pp.87-110.

Hodge, A., L. Warren, K., & V. Linley, J. (2014). 'Behavioral and demographic predictors of staff ratings of role model status in a corrections-based therapeutic community for women', Therapeutic Communit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rapeutic Communities, 35(4), pp.159-167.

Inciardi, J. A., Martin, S. S., & Butzin, C. A. (2004). 'Five-year outcomes of therapeutic community treatment of drug-involved offenders after release from prison', Crime & Delinquency, 50(1), pp.88-107.

Karberg, J. C., & James, D. J. (2005). 'Substance dependence, abuse, and treatment of jail inmates, 2002.

Malterud, K. (2019). 'The impact of evidence-based medicine on qualitative metasynthesis: benefits to be harvested and warnings to be give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9(1), pp.7-17.

Marlowe, D. B. (2011). 'Evidence-based policies and practices for drug-involved offenders', The Prison Journal, 91(3_suppl), pp.27S-47S.

Melo, M. C., & Corradi Webster, C. M. (2018). 'Meanings constructed by drug users regarding treatment in therapeutic communities', Psicologia em Estudo, 23.

Mitchell, O., Wilson, D. B., & MacKenzie, D. L. (2012). 'The effectiveness of incarceration-based drug treatment on criminal behavior: A systematic review', Campbell Systematic Reviews 2012: 18. accessed on, 19(02), 2013.

Noblit, G. W., & Hare, R. D. (1988). 'Metaethnography: Synthesizing qualitative studies', Newbury Park, CA: Sag

Pallone, N. J., & Hennessy, J. J. (2003). 'To punish or to treat: Substance abuse within the context of oscillating attitudes toward correctional rehabilitation',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37(3-4), pp.1-25.

Sandelowski, M., Docherty, S., & Emden, C. (1997). 'Focus on qualitative methods qualitative metasynthesis: Issues and technique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0, pp.365-371.

Sandelowski, M., Barroso, J., & Voils, C. I. (2007). 'Using qualitative metasummary to synthesiz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escriptive finding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30(1), pp.99-111.

Santos da Silveira, P., Andrade de Tostes, J. G., Wan, H. T., Ronzani, T. M., & Corrigan, P. W. (2018). 'The stigmatization of drug use as mechanism of legitimation of exclusion', Drugs and social context: Social perspectives on the use of alcohol and other drugs, pp.15-25.

Sattler, S., Escande, A., Racine, E., & Göritz, A. S. (2017). 'Public stigma toward people with drug addiction: A factorial surve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78(3), pp.415-425.

Saum, C. A., O'Connell, D. J., Martin, S. S., Hiller, M. L., Bacon, G. A., & Simpson, D. D. (2007). 'Tempest in a TC: Changing treatment providers for in-prison therapeutic communiti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4(9), pp.1168-1178.

Tompkins, C. N., Neale, J., & Strang, J. (2017). 'Qualitative study of welcome houses: a recent initiative designed to improve retention in therapeutic communities', Addiction Research & Theory, 25(2), pp.168-175.

Welsh, W. N., & Zajac, G. (2013). 'A multisite evaluation of prison-based drug treatment: Four-year follow-up results', The Prison Journal, 93(3), pp.251-271.

Welsh, W. N., Zajac, G., & Bucklen, K. B. (2014). 'For whom does prison-based drug treatment work? Results from a randomized experiment',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10, pp.151-177.

Wexler, H. K., & Prendergast, M. L. (2010). 'Therapeutic communities in United States' prisons: effectiveness and challenges', Therapeutic Communities, 31(2), pp.157.

Werb, D., Kamarulzaman, A., Meacham, M. C., Rafful, C., Fischer, B., Strathdee, S. A., & Wood, E. (2016). 'The effectiveness of compulsory drug treatment: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Drug Policy, 28, pp.1-9.

Zhang, S. X., Roberts, R. E., & McCollister, K. E. (2009). 'An economic analysis of the in-prison therapeutic community model on prison management cost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7(4), pp.388-395.

Zimmer, L. (2006). 'Qualitative meta-synthesis: a question of dialoguing with tex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3(3), pp.311-318.

■기타자료

법률신문, 기사검색, https://www.lawtimes.co.kr/news/191065(검색일 : 2024. 03. 31). 법무부, 마약 중독 수형자 재활치료 강화 가석방 반영.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6140800004(검색일 : 2024.03.10.),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 이수하면 가석방에 반영

천륜을 저버린 범죄, 친족 성범죄

최우진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교위

"아빠 딸이잖아" 누구의 목소리인가? 아빠에게 성폭력을 당한 자녀가 생전 밖으로 내지 못한 울부짖음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 전달하는 간곡한 메시지이다. 최근 가정 내 성폭력이 매스컴을 통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고,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가족 간 성범죄는 비단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발생해왔고 음지에서는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애써 외면해 왔다. 낯설고 충격적인 사건을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특정 정신질환자의 병리적 행동으로 치부하며 관심에서 밀어냈기 때문이다. 비윤리적 범죄 행위에 강한 분노를 표출하지만, 그러한 분노는 일시적이고 쉽게 잊혀지곤 했다. 반면, 피해자는 사회의 무관심과 가족들의 외면에 홀로 상처를 견뎌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친족 간 성범죄의 형태는 다양한데, 주로 부녀(父女)가 동거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친부에 의한 성폭력 빈도가 높다. 또한 재결합 가정에서의 발생하는 계부에 의한 성폭력, 그 외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조손, 형제, 친인척 간, 그리고 직계존속에 대한 성폭력 등이 있다. 2013년 6월 19일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전부 개정하였는데 친족 성범죄와 관련된 주목할만한 변화가 있었다. '친족의 처벌 대상 확대와 친고죄 조항 폐지'가 그것이다. 과거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던 것을 법률 개정 후 동거인까지 친족으로 포함했다.
또한 그동안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처벌할 수 없었던 범죄가 친고죄 폐지 후 수

면 위로 드러나면서 매스컴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모범적인 가장으로 자신을 꾸미던 이들이 결국은 교정시설에 들어오고 있다. 필자는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서 고위험군 범죄자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면서 이들을 만나고 있다. 자주 접하는 범죄 유형은 성범죄이고, 친족 간 성범죄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많아졌다. 빈도수가 증가한 만큼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은 사회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필자도 범죄 이전에 이러한 일이 윤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고, 가장 편안해야 할 가정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성범죄의 온상이 되는지 궁금했다. 이러한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강구할 때이다.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친족 성범죄자는 일반 성범죄자에 비해 범행 책임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인 성범죄자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여 억울함을 주장하나, 친족 성범죄는 범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경향이 높다. 생각건대,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공고하여 은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갑자기 범죄자로 탈바꿈되어 범행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혹 범행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두 가지의 변명을 한다. 하나는 피해자를 처(妻)로 오인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모(母)가 조종하여 무고했다는 것이다. 전자는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처(妻)로 오인하여 성관계했으나 음주가 지나쳐 범죄 상황임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범행 책임을 면책받고자 하는 심리이다. 후자는 갈등 관계에 있는 처(妻)가 자신을 처벌받게 하려고 딸과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갈등을 유발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갈등 관계에서 비롯된 피해자 측의 과도한 억측임을 부각하고자 하는 주장이다. 성폭력이라는 비난을 피하려고 정서적 혹은 신체적 폭력은 인정하고, 경한 범죄를 인정함으로써 중한 범죄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심리이다. 처음에는 이러한 변명도 수긍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변명은 언제나 한결같았고, 매번 예상된 답변을 벗어나지 않았다. 살피건대, 세련되지 못한 주장이기는 하나 그들에게는 윤리적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변명거리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친족 간 성범죄를 처벌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4년이다. 1992년 김보은/김진관 사건이 발단이다. 피해자는 9세부터 21세가 될 때까지 12년간 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친모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두려워 묵인했던 사건이다. 피해자는 대학생이 되고서야 성폭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 남자친구와 공모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범죄 동기가 밝혀지면서 가정 내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인식되기 시작했고, 결국 특별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가해자는 검찰수사관으로 가정 및 사회에서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고, 그러한 우월한 지위가 성범죄에 이용되었다. 통상 우월한 지위는 가정 내 성범죄에 주요한 범행 수단이 된다. 반대로 피해자의 상반된 지위가 범행 은폐에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가 고소하기 어려운 사정, 그리고 이들 간에 신뢰 관계, 나아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클수록 범행은 장기화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해자는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지 못한다. 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식수준이 동일 연령대의 평균 수준보다 낮아 동등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둘째,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낮다. 계부모 밑에서 성장하여 신체·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고, 성장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낮다. 그 결과 또래 및 이성 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성인기 이후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여 고립된 경우가 많다. 또 다른 가해자의 특징으로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부의 모습을 답습한 경우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높아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여 대인관계가 협소하다.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갈등 상황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잦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같은 3가지 유형은 사회적 관계에서 위축된 특징이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반대로 가정에서는 절대적인 지위를 확보하려는 특성을 갖는다. 외부로부터 박탈된 지위가 가정에서는 특권의식으로 발현되고,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성 착취 대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사회적 고립은 성적 욕구와도 밀접하다. 일상생활을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성인 이성과의 성적 만남을 어렵게 한다. 그 결과 성적

욕구는 음란물을 통해 해소하고, 나아가 자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이 되고 있다. 음주 역시 범죄를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스트레스를 술로 해결하고, 주취 상태에서 욕구가 증가할 때마다 가까이에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습관적으로 범행한다. 주취 상태에서 범행은 자각 능력이 떨어져 죄책감을 덜어주기에 더 끊어내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고립은 성적 욕구를 억누르고, 자녀에 대한 성폭력 행위는 부녀간 사과와 용서가 반복되며 만성화되는 특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 특성을 이해하는 것 또한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 첫째,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 확률이 높다. 아직 성인지가 발달하지 않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딸과 함께 목욕하며 씻겨주거나 신체를 닦아주는 행동이 학령기까지 이어진다면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 또한 성적으로 예민해진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아빠의 성기를 장남 삼아 만지는 경우, 팔을 베고 취침하거나 TV를 볼 때 다리 위에 앉는 경우 등도 홀로 양육을 책임지는 가장에게는 성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다. 둘째, 자녀의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에 범행이 많다. 예를 들면, 포옹하는 과정에서 볼록한 가슴 부위가 닿는 경우, 노브라 옷차림을 목격한 경우, 샤워 후 속옷 차림으로 머리를 말리는 경우, 옷을 갈아입는 동안 맨몸 신체를 목격한 경우, 잠자리를 살피던 중 취침 중인 피해자의 속옷이나 신체를 목격하거나 이불 속에서 민감한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의 생리대나 옷을 갈아주거나 예민한 부위에 약을 발라주는 경우 등이 있다. 사춘기 자녀의 급격한 신체 변화와 성숙한 신체를 목격하는 것은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극적인 요소가 반복되면 성적인 행동으로 발전된다. 셋째, 가해자는 피해자가 TV, 컴퓨터, 혹은 핸드폰 등에 집중하고 있을 때 범죄를 시도한다. 피해자가 다른 상황에 몰입하여 범죄 행동임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우회적으로 접근한다. 넷째, 지적장애가 피해자가 많다. 이들은 성폭력에 항거하거나 성폭력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적 수준이 낮아서 상황판단력이 부족하고, 가해자의 낯선 행동에도 크게 경계하지 않는 특성이 범행에 이용된다.

범행 동기 및 접근 과정을 보면 가해자들은 자녀의 친밀한 행동을 성적 행동으로 오인한다. 현재 혹은 과거에 이성과의 친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주목할만한 성적 행동은 자극적인 상황에 피해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려는 시도가 있다. 피해자의 예민한 부분을 만져 부끄러운 웃음을 유발하고 재미난 장난으로 받아들이도록 반복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자신의 예민해진 성기에 호기심을 가질 때 의도적으로 접촉하고, 피해자를 향해 일부러 성행위를 묘사하는 듯한 자세로 접촉하기도 한다. 한편 피해자가 문제 행동을 질책하고 이를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접촉할 때도 있다. 또 피해자와 장난치듯 서로의 신체를 만지는 것으로 기회로 피

해자 신체를 깊게 접촉하는 경우 등이 두드러졌다. 최초 접근은 친근감 있는 행동으로 위장하여 신체적 접촉을 먼저 시도하며 성적 행동으로 오해받지 않으려고 장난처럼 접근한다. 성적으로 행동하기 전 마사지 등 신체적 접촉을 먼저 시도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범행 수위를 높여간다. 이때 피해자의 거부반응이 없는 경우 장난스레 추근대며 성적 접촉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인 성적 행동은 피해자가 취침 중에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면, 음주 후 늦게 귀가하여 숙면에 든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를 탐닉하는 행동,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동, 피해자 옆에 누워 음란물을 시청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행동 등이 있다. 만약 피해자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감이나 압력 때문에 거부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행동을 오해하게 된다. 첫 범죄에서 들통나지 않았거나 다음날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의 범죄 행위가 발각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범죄 행동을 강화하고 추후에도 들키지 않을 것이란 기대심을 갖도록 한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거나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범행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취침 중이라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고, 이러한 생각이 확신으로 이어지면 재범하게 된다. 그래서 가해자의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적절한 의사 표현은 더 큰 범행을 차단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될 수 있다.

환경 요인도 범죄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거하는 가족들의 관심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인 아버지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피해자인 딸이 가해자인 아버지를 고소하기란 어렵다. 친모마저도 피해 사실을 함구하도록 요구하면 더 이상 범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과거 생계가 어려운 중산층 이하의 삶에서는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구속되면 그 고통은 오롯이 남은 가족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가족들의 방관이 있었다. 친고죄가 적용되던 시기에 이러한 현실은 더욱 심각했다. 결국 가족들의 무관심은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가족 중에서도 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모가 지적 능력이 떨어진 경우, 외모상 자신감이 없는 경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생계를 전적으로 가장에게 의존하는 경우, 그리고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실질적으로 훈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경우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부부가 갈등이 심하거나 맞벌이 등 기능적으로 결손 된 환경에서 범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부부 중 한쪽의 역할이 부족하여 훈육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는 부모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방임된 상태에서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이혼하여 모의 역할이 부재할 때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부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에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반증한다. 부가 사회적 활동에 참여 없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위험한 환경이다. 성적 자극은 누적되고 욕구를 해소할 기회는 박탈되어 성적 호기심을 자녀에게까지 드러낸다. 일시적인 감정이기보다 누적되어 온 억눌린 욕구가 음주 후 발현되고 통제력을 잃어버린다. 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도 친족 성범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재범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우리 사회는 가정이 급격히 해체되면서 가정폭력, 직계 존·비속 폭행, 동반자살, 이제는 성범죄까지 가정으로 파고들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이혼 및 재결합 가정이 증가하고 사실혼(동거) 가정도 보편화되어 가족 구조의 변화가 근친 성범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처럼 신고를 해태한 것과 달리 지금은 피해자에 의한 직접 신고나, 학교 등 다양한 루트로 신고되어 처벌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지위와 교육 수준과도 무관하다. 그동안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도소로 직행하고 있으며,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범죄가 이루어져 형량도 높게 선고받는 추세이다. 가정 내 성범죄는 한 세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 걸쳐 가정을 파탄 낸다. 한 번 파탄 난 가정은 회복이 힘들고, 법적인 문제 이전에 근친 간 성범죄라는 윤리적 문제로 대두되어 더 이상 정상화가 어렵다. 바로 이것이 친족 성범죄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부부가 이혼 후 부녀 동거 가정의 가장인 된 사람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고립되고, 음주가 반복되는 일상이라면 고위험 상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친족 성범죄의 가해자를 한 사람의 병리적인 행동으로 치부하여 관심에서 밀어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이끌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정시설 등 형사사법기관을 통해 성 윤리 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의무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나 직장 교육을 통해서도 친족 성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예방 교육에 힘써야 한다. 또 이혼이나 재혼 과정에서 의무적 교육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혼 후 친권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위험 요인이 높은 사람을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학교 등 외부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처럼 외부와의 교류와 소통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사회적 자원을 통해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다행히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강화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점이다. 그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적절하게 분리되지 못하여 피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공간에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절벽 앞에서 진로도 퇴로도 없는 상황처럼 말이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절벽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 물을 게 아니라 절벽에 다다르기 전에 길을 열어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 빛을 보여준 사람도 부모요, 아름다운 세상을 등지게 한 사람도 부모다. "아빠 딸이잖아!"의 의미가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아빠 딸로서 태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행복함을 담을 수 있는 표현이기를 가슴 아프게 소망한다. 이 글은 성범죄가 가정까지 침투하여 성 윤리 의식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태에 대한 고찰이다. 또한 예쁘게 낳아 사랑으로 키워야 할 자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나쁜 아버지가 되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친족 성범죄가 메스컴을 통해 하루가 멀다하고 회자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엄중 관리 대상자 관련 판례 연구(하)

김지영
서울지방교정청 교감, 변호사

목차

Ⅰ. 엄중 관리 대상자 관련 판례의 검토 의의
Ⅱ.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
Ⅲ.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
Ⅳ. 관심 대상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
Ⅴ. 맺음말

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2행정부 2021. 3. 24. 선고 2010구합1411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해제 거부처분 취소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해제 거부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해제에 관한 원고의 각 주장

가. 제1주장

○○구치소장은 원고와 공범 관계에 있는 □□□의 체포영장에 원고가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해제 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에 대한 판결에는 원고가 신청량리파의 두목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의 공범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고려할 때,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3호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원고가 □□□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를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한 것(이하 '이 사건 지정 처분'이라 한다)은 처음부터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이거나, □□□에 대한 판결에 따라 원고가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 설령 □□□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판결을 통해 원고를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현갑에 대한 판결에 원고가 신청량리파의 두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의 범행에 대한 경위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재만으로 원고가 조직폭력 사범에 해당한다거나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주장

이 사건 제1심 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의 기재는 원고를 조직폭력 사범이라고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거나, 경위 사실에 불과하여 위 부분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 원고를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한 것은 공갈 부분이고,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공갈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 단서의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제3주장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에서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으로 정한 '조직폭력 사범'이란, 수용자의 수용 원인이 된 당해 범죄가 조직폭력 범죄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당해 범죄의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었던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해야 하고, 나아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에서 정한 재판서 등의 문서가 작성될 당시에 조직폭력 사범인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신현갑에 대한 판결이나

이 사건 제1심판결 및 항소심 판결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수용 원인이 된 당해 범죄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판결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었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라. 제4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정 처분이나 이 사건 거부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실제로 폭력조직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해보지 않았다.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으로 인한 원고의 기본권에 가해지는 제한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심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

마. 제5주장

위 주장들에 의하면, □□□에 대한 판결 및 이 사건 제1심판결, 항소심 판결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집행유예 선고 실효 판결의 이유에는 원고가 조직폭력 사범이라고 직접 표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집행유예의 실효에 따라 원고에게 집행할 형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형의 집행을 근거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

원고의 각 주장에 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 198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범 등의 재판서'를 해당 재판서에 조직폭력 수용 대상자를 공범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거나,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한 부분이 범행에 대한 경위 사실을 기재한 것일 경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의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3호는 '공범·피해자 등'이라고 규정하여 문언의 해석상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이 되는 재판서 등을 공범의 것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에서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 대상을 '재판서 등에 조직 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명시된 부분의 기재 내용이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이어야 한다거나 명시된 내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형집행법 제1조). 일반적으로 수용자의 처우를 정함에 있어서는 구금의 목적,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 수용자들의 생활환경, 위생 및 의료, 징벌 등 다양한 규율대상에 대한 교정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63 결정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형집행법 제104조 등에서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관리를 위하여 '조직폭력 수용자' 등 엄중 관리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라도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이나 해제거부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외에도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에 따른 개별적인 처분이나 처우가 위법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별도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③ 조직폭력 사범은 일반적으로 조직폭력의 사회적 위험성과 집단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재범률을 보이며, 외부 폭력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고 세력을 모으는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칠 위험성이 크다. 이에 따라 조직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여 예방적인 교정행정을 운용할 필요성이 크다. 조직폭력 사범을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고 가벌성의 관점에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④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3호는 피해자의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도 지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당해 수용자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범죄사실 등에 기재되어 있는 당해 수용자의 조직폭력 관련 기재 내용은 경위 사실에 해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는 조직폭력 사범의 기재가 범죄의 구성요소인지 경위 사실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조직폭력 사범에 해당한다는 기재 내용이 단순히 검사나 피고인 측의 주장을 기재한 것이 아닌 법원의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경위 사실의 기재라 하더라도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규정의 문언이 '공범 등'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문언보다 축소하여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의 원인이 된 재판서 등에 그 대상자가 명시적·직접적으로 공범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조직폭력 사범의 기재가 범행의 경위 사실에 해당할 경우 지정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교도소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형집행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형집행법 제199조 제2항 단서가 말하는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 해제 사유인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수용자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등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었거나 조직폭력 범죄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라 조직폭력 사범으로 표시되었거나 조직폭력 범죄가 적용된 부분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든지 또는 형사재판 결과 최종적으로 판결 등에서 법원의 실체적 판단에 따라 조직폭력 사범 또는 조직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처분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수사 과정에서 발부 가능한 것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 반면, 그 지정을 해제하는 처분은 공소장 변경, 재판 확정에 따른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에 공소제기 된 이후의 공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② '공소장 변경'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판 계속 중 법원의 심판 대상을 변경하는 것이고, '재판 확정'이라 함은 형집행법의 취지상 통상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등에 관한 실체적인 판단을 의미하므로, 위 두 가지는 모두 공판절차에서의 실체

판단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전제하고 있다.

3)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에 대한 체포영장에 원고가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지정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에 대한 판결의 기재 내용을 볼 때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현갑에 대한 판결에는 원고가 신청량리파의 두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조직폭력 사범임을 명시한 것이다. 위에서 살핀 바와 □□□에 대한 판결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이상 원고는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집행유예 실효 판결에서 원고는 위 신현갑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았으므로 □□□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3호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조직폭력 사범임을 명시한 내용이 범행의 경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에 대한 판결에서 처벌받은 범죄는 신청량리파의 위세를 이용하였거나 신청량리파의 조직원으로서 행한 것이므로 원고가 조직폭력 사범이라는 기재가 범죄사실과 연관이 없는 경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원고가 폭력조직에 가담한 전력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각 범행을 할 당시 원고가 신청량리파의 두목이라는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를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이 사건 제1심판결은 위 부분에서 "집창촌 지역에서 조직폭력 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인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기재 내용은 문언 자체로 원고가 조직폭력 사범임을 명시한 것이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행의 경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임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 또한 위 기재 내용은 원고가 위 범행의 피해자인 삶도시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연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의 기재가 조직폭력 사범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거나 경위 사실에 불과하여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에서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공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위 공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살펴보면 공갈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상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폭력조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을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가 규정하는 재판서 등이 작성될 당시에 수용자가 조직폭력 사범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는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 또는 「형법」제114조가 적용된 수용자'를 지정 대상으로 삼고 있어, 위와 같은 해석은 명문의 규정에 반한다. ②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에서 규정한 재판서 등은 해당 범행에 대한 판단을 기재한 문서들로 수용 원인이 된 범행 당시에 수용자가 폭력조직에 가담하고 있었음은 위 재판서 등을 작성한 법원 등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 반면, 재판서 등이 작성될 당시에 수용자가 폭력조직에 가담한 상태였는지는 위 재판서 등의 판단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조사를 거쳐야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③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소장에게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의 재판서 등이 작성될 당시에 수용자가 폭력조직에 가담하였던 사실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소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형집행법의 목적에 반한다.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에서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으로 정한 '조직폭력 사범'을 수용자의 수용 원인이 된 당해 범죄가 조직폭력 범죄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당해 범죄의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었던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수용 원인이 된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에 기재된 범죄의 실행 당시 원고가 폭력조직인 신청량리파에 가담 중이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1심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은 청량리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진행하면서 집창촌 지역에서 조직폭력 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원고에게 삶도시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하였고, 원고가 위 삶도시 주식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범죄사실 내용은 원고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범죄사실 중 이종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부분에서 "그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신청량리파 두목인 피고인 △△△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그대로 인용되었다. 더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2017고합○○○』 및 『2017고합○○○』사건에 관한 판단에서 원고가 2016. 10. 21.경 ◇◇◇와의 통화 과정에서 자신이 청량리 지역의 조직폭력배 부두목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음을 자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양형의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로서 청량리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것을 기회로", "조직폭력배가 반드시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력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를 부당하게 제압하는 것이 조직폭력배의 본질적인 모습이며"라고 설시하였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도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들은 청량리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로"라고 설시하였다. ③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의 공갈죄를 무죄로 판단한 주된 이유는 ▽▽▽이 원고에게 돈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원고가 폭력조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집행유예 실효 판결의 원고에 대한 유죄 부분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공범 10여 명이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집행유예 실효 판결은 쟁점에 관한 판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의 후배 조직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정신을 잃었다.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구타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을 인정하였고, "피고인들의 후배 조직원 △△△는", "피고인 ○○○이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불러낸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도 인정한다."는 등으로 원고의 폭력조직 가담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며, 양형의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⑤ 관련 보도자료에서 원고는 신청량리파의 두목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및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개입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라. 제4주장에 대한 판단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의 문언에 비추어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장이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수용자가 실제로 폭력조직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에게 심사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 및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로 판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지정 처분이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마. 제5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 및 항소심 판결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집행유예 실효 판결의 범죄사실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Ⅲ.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 대상은 ① 체포영장 · 구속영장 ·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 ② 위 ①에 해당하는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이다.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장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하고, 현재의 수용 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마약류 수용자의 해제와 관련하여 소장은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①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②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 수용자로서 수용 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다만,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 수용자로 한정함)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1.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의 처분성 판단 판례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법원은 소장이 수용자를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하고 해제하는 업무를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여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마약류 수용자 지정과 해제의 처분성 관련 법원의 판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교정시설의 장(이

하 '소장'이라 한다)이 수용자를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하는 행위와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가) 소장은 마약류 사범·조직폭력 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는데(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 마약류 수용자에 대하여 소장은 마약 반응 검사를 할 수 있고(제206조),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및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 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것을 불허하며(제207조), 마약류 수용자의 영치품 및 소지물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므로(제208조),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된 자는 다른 수용자들과는 다른 처우를 받게 된다.

나)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은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공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고, 한번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방할 때까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본문), 마약류 수용자 지정의 효과는 계속성을 갖고 있어 지정된 수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수인할 것을 강제하는 성격이 있다.

다) 위와 같은 마약류 수용자 지정이나 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면, 실제로 마약류 수용자가 아닌데도 지정된 사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정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강요받게 되고 다른 수용자들과 색깔이 다른 표식을 달게 됨으로써 인격적 이익을 침해받게 된다.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도록 규정한 형집행법 제4조나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집행법 제5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 광주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12388 분류 처우개선 신청 거부처분

2. 마약류 수용자 지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광주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12388 분류 처우개선 신청 거부처분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9. 18.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 위 형이 2018. 4. 20. 그대로 확정된 후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을 완납하고, 2019. 6. 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마약류 수용자 지정 해제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05조 제2항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마약류 수용자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은 마약류 사범·조직폭력 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 제1호는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를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은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고, 다만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 처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계 법령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마약류 수용자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형집행법상 '수형자'는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고(제2조 제2호), '수용자'는 위 수형자 외에도 미결수용자, 사형 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1호).

2)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 대상을 정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 제1호는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 관련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기 이전 단계인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에만 마약 관련 형사 법률이 적용되더라도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하도록 하고(다만, 제205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가 가능함), 마약 관련 형

사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나 마약 관련 형사 법률 위반죄로 선고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 명령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같이 마약 관련 형사 법률을 원인으로 수용된 수형자뿐만 아니라 이보다 범위가 더 넓은 마약 관련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를 지정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는 마약 관련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 즉 마약 관련 형사 법률이 아닌 별건으로 수용된 자도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소장은 마약류 수용자에 대하여는 마약 반응 검사를 할 수 있고, 외부인의 물품 교부를 엄격히 제한하며, 마약류 수용자의 영치품 및 소지물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관리는 마약류의 경우 의존성이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대부분 분말 등의 형태라 다른 물품에 비하여 반입이 용이한 점, 미세한 양이라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경우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점, 만일 적은 양이라도 마약류가 교정시설에 반입되어 이를 수용자들이 복용한다면 교정 질서를 크게 해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 제205조가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 대상을 마약 관련 형사 법률을 원인으로 수형 된 자뿐만 아니라 마약 관련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로 하되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고와 같이 마약 관련 형사 법률을 원인으로 수형된 자가 아닌 수용자도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되고 그 지정에 따른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반입을 철저히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 대상 기준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Ⅳ. 관심 대상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

관심 대상 수용자의 지정 대상은 ① 다른 수용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용자, ②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前歷)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 대상 행위를 할 우려가 큰 수용자, ③ 수용 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각종 이물질을 삼키는 수용자, ④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 수용자(조직폭력 사범으로 행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조직폭력 수용자로서 무죄 외의 사유로 출소한 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사람, ⑥ 상습적으로 교정시설의 설비 · 기구 등을 파손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용자, ⑦ 도주(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⑧ 중형 선고 등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⑨ 자살을 기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살할 우려가 있는 수용자, 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수용자, ⑪ 징벌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징벌을 받는 등 규율 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용자, ⑫ 상습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기도하는 수용자, ⑬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이다.
관심 대상 수용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장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한다. 다만,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1조 제1항).
관심 대상 수용자의 해제와 관련하여 소장은 관심 대상 수용자의 수용 생활 태도 등이 양호하고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

소장은 수용자를 관심 수용자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담당 교도관 또는 감독교도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1조 제3항).

1. 관심 대상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의 처분성 관련 판례

관심 대상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소장이 수용자를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고 해제하는 업무를 처분성이 없다고 하여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소를 각하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가 있다.

○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919 도주 우려자 지정 처분 무효 확인

☞ 2017. 05. 18. 원고의 소 각하 판결 선고

○ 광주고등법원 2017누3983 도주 우려자 지정 처분 무효 확인

☞ 2017. 10. 19.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 선고

○ 대법원 2017두68233 도주 우려자 지정 처분 무효 확인

☞ 2018. 02. 28. 원고의 상고 기각 판결 선고

다만, 소장이 수용자를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고 해제하는 업무를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여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분성 없음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심 대상 수용자 지정과 해제의 처분성 관련 법원의 판단(부정)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도주 우려자 지정처분의 존재 여부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도주 우려자는 관심 대상 수용자 지정 대상 중 하나에 불과하여 관심 대상 수용자 지정과 별도로 원고가 주장하는 도주 우려자 지정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 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등 참조).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은 '소장은 마약류 사범·조직폭력 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4조는 형집행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수용자를 '조직폭력 수용자, 마약류 수용자, 관심 대상 수용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 형집행법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0조는 관심 대상 수용자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지정 기준 중의 하나로 '도주(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가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체계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라는 것은 관심 대상 수용자 지정기준으로서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이어서, 관심 대상 수용자 지정 행위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도주 우려자 지정 처분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204조는 조직폭력 수용자,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거나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0조는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도주 사실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 광주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3983 도주 우려자 지정 처분 무효 확인

2. 관심 대상 수용자 지정 관련 판례

가. 춘천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구합118 관심 대상 지정수용자 처분 취소

(1)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3. 9. 11.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노○○○○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감금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3도○○○○)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결과, 원고는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징벌 처분을 하였다.

1) 2014. 4. 3.경 '교화공연 관람 중 수용자 □□□과 언쟁을 하여 □□□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금치 10일에 징벌 유예 2개월의 징벌 처분(이하'이 사건 제1 징벌 처분'이라고 한다).

2) 2014. 11. 6.경 '허가 없이 자신의 의약품인 졸로프트 10알을 수용자 △△△에게 건네주고, 트리돌 10알 등 도합 49알의 의약품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금치 21일의 징벌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징벌 처분'이라고 한다).

3) 2015. 1. 7.경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로부터 코털 제거용 면도기, 보드마카 등을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금치 9일의 징벌 처분(이하 '이 사건 제3 징벌 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는 2015. 1. 12.경 원고가 1년 이내에 총 3회의 규율 위반을 하는 등 원고에게 규율 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1조 제1항, 제210조 제11호에 의하여 원고를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였다.

(2) 관심 수용 대상자 지정과 관련한 판례의 주요 내용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를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한 이 사건 지정 행위는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원고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정 행위에 관한 부분은 대상 적격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210조에서 정한 지정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여(제211조 제1항),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표시하고(제195조 제1항 제1호),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며(제196조 제1항), 작업을 부과할 때는 형집행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도록(제197조)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도소 등에서 질서유지와 규율 확립을 위해 수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높은 수용자에 대한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한 내부적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위 시행규칙에 따라 원고를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심 대상 수용자로의 지정 그 자체로 말미암아 원고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권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등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정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정 행위에 관한 부분은 대상 적격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각하 판결).

나.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 지정 관련 판례(대전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2 구합 2018 행정처분 취소)

(1)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09. 5.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7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어 있

었다.
원고는 2012. 4. 18.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접견을 하면서 '원고가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할 경우 대사관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와 원고가 교정시설 내에서 미국법상 효력을 갖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을 심경의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판단하여 2012. 4. 19. 계호업무지침(법무부 훈령 제818호) 제15조 제9호,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로 지정하였다.
피고는 2012. 5. 31. '그동안 세밀한 동정 관찰 및 상담을 통하여 생활지도를 해 온바, 일상생활에서 특이한 동정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담당 근무자의 지시에 순응하고 관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으므로 교정사고 우려가 낮아졌다.' 라고 판단하여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에서 해제하였다.

(2)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 지정 관련 판례의 주요 내용

2. 원고의 2012. 8. 6. 자 청구변경 신청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로 지정됨으로써 그와는 별도로 무차별적인 서신 검열 및 서신에 대한 봉함 금지 조치도 함께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 지정을 해제하였음에도 위 서신 검열 등의 각 조치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위 서신 검열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한다는 취지로 2012. 8. 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변경 신청'이라고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소제기 이후 그 소송 대상인 처분이 다른 내용의 처분으로 변경되어 존재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애초에 취소를 구할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 지정처분 자체는 이미 해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그것이 다른 처분으로 변경되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청구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른 청구의 변경 역시 변경 전후의 청구 사이에 그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 지정 처분과 서신 검열이나 서신 봉함 금지 등의 처분 각각은 일응 서로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그 각 처분의 존부나 당부 등에 관한 판단자료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변경 신청은 위 규정에 따른 청구변경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변경 신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수용자를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순수한 사실행위로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2012. 5. 31. 이미 그 지정이 해제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 지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철회 또는 해제되는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제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그 처분이 있었던 사실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2012. 4. 19. 원고를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로 지정하였다가 2012. 5. 31. 그 지정을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미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한 피고의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만일 피고가 과거에 원고를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로 지정한 행위가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Ⅴ. 맺음말

이 글에서는 엄중 관리 대상자 지정과 해제 업무와 관련된 판결을 중심으로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조직폭력 수용자, 마약류 수용자, 관심 대상 수용자 지정과 관련하여 판결문에 조직폭력 관련 범죄 사실이 무죄로 명시되는 경우, 마약류 범죄 관련 형기가 종료되고, 마약류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으로 형집행지휘가 이루어져 복역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지정 해제를 검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과 같은 각 엄중관리 대상자별 지정 해제의 절차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해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통계와 사례로 이해하는 미국의 교정현안 및 문제점

홍원태
샘휴스턴주립대학교(Sam Houston State University)
형사정책 대학원(College of Criminal Justice)
교감

목차

1. 들어가며
2. 통계와 사례로 이해하는 미국 교정의 당면 과제
3. 나가며

1. 들어가며

한국의 교정행정 시스템은 다른 나라와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도입된 일본의 잔재가 일부 남아있는 동시에, 해방 이후 서양의 교정시스템이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현재의 교정행정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대교정에는 일본 시스템의 영향이 매우 미미하며, 대부분 미국, 캐나다 및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교정행정 시스템에 관한 연구와 적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미국의 교정행정 시스템의 장점, 단점 및 당면한 과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향후 맞이할 수 있는 수용 관리적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교도관은 미국의 교정행정 시스템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보다는, 단편 기사나 일부 사례가 나오는 동영상을 통해 미국의 교정행정 시스템을 단정 짓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 대학원 수업을 통해 (Crim & Corrections, Courts as Organizations, Critical Analysis Of Justice Administration) 미국의 교정행정 시스템이 직면한 과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 우리 교도관들이 막연히 알고 있던 미국 교정행정 시스템의 현안 및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여,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제어 : 교정행정, 미국 교정, 형사 정책, 교정 정책

2. 통계와 사례로 이해하는 미국 교정의 당면 과제

2-1) 도대체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수용자가 있을까?

만약 누군가가 2022년 우리나라의 일일 평균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 물어본다면, 우리는 교정통계연보(2023년)를 확인하여 2022년 기준으로 수용정원이 48,990명이며 일일 평균 수용인원은 51,117명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교도관이나 교정행정 전문가에게 미국의 일일 평균 수용인원을 비롯한 수용통계를 물었을 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수천 개의 교정 시설과 수시로 변하는 수용인원 때문에 통계의 신뢰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정확한(또는 근사한) 수용인원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교정행정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와 구별되는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연방 교도소(Federal prison), 주교도소(State prison), 그리고 카운티 감옥(County Jail)으로 구분하여 교정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방 교도소는 주로 연방 법률을 위반한 범죄자들이 수용되며, 이 시설은 연방 교도국(BOB, Bureau of Prisons)에 의해 관리됩니다. 반면 주교도소는 각 주(State)의 주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로, 주의 법률을 위반한 범죄자들이 수용됩니다.

한국의 교도소와 달리, 미국은 50개 주가 각기 다른 교정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텍사스 교정국(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은 텍사스주 내 주교도소의 운영과 수용관리를 책임지며, 사형집행도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반대로 콜로라도(Colorado)주는 콜로라도 주에 위치한 주 교도소를 운영하고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지만 최근 사형집행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림 1〉 텍사스 교정국(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홈페이지 모습

마지막으로 생소할 수 있는 카운티 감옥(County Jail)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카운티 감옥은 특정 카운티에 있는 교정시설로, 주로 미결 피의자, 단기 형 집행 수용자, 보석금 미납자, 가석방 조건을 위반한 범죄자 등을 수용합니다. 이러한 감옥은 그 카운티 내의 보안관(Sheriff)이 운영의 주체가 됩니다. 보안관의 장은 해당 카운티에서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또한, 각 카운티의 예산에 따라 인력 운용 및 교정프로그램 진행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선진국이며 강대국이기 때문에 모든 교정시설에서 우리보다 더 좋은 수용 환경과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운티 감옥의 운영상의 문제는 예산확보 입니다. 원칙적으로 카운티 감옥은 해당 카운티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카운티 감옥은 과밀수용, 직원 부족, 비리 및 수용자 인권 침해와 같은 문제로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전체 수용인원을 추정하기 위해 연방 교도소, 주교도소 및 카운티 감옥의 수용인원을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비영리 기구인 베라연구소(Vera Institute of Justice)가 발표한 2022년 People in Jail and Prison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총 수용 인원은 2022년 가을 기준 1,827,100여명입니다. 이 숫자는 연방 및 주교도소 그리고 카운티 감옥의 수용 인원을 모두 합산한 결과입니다.

〈표 1〉 미국 수용 인구 개요 및 지역별 변화(Vera Institute of Justice)

Overview of incarcerated pop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changes by region

			Change between mid-2020 & mid-2021			Change since mid-2021	
	Mid-2020	Mid-2021	Change	% change	Full 2022	Change	% change
Total	1,816,300	1,763,300	-53,000	-3	1,827,100	63,800	4
Prisons	1,311,100	1,199,381	-111,719	-9	1,218,554	19,173	2
Jails	545,200	634,000	89,200	16	677,000	42,600	7
Urban	131,300	149,900	18,600	14	157,600	7,700	5
Suburban	102,400	119,400	17,000	17	130,400	11,000	9
Small/Midsize metro	190,100	220,200	30,100	16	235,300	15,100	7
Rural	121,300	144,900	23,600	19	153,700	8,800	6

Note: Total incarceration numbers are adjusted downward slightly to avoid double counting people held in local jails under contract for state prisons. See "Methodology and Source Notes" at http://www.vera.org/publications/people-in-jail-and-prison-in-2022.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체 수용인원이 다소 감소했지만, 최근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이 수용인원은 실로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총인구는 1,798,435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의 인구(3.3억)가 한국(5.1백만)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해도 전체 수용인원이 전라남도의 인구보다 많다는 것은 미국의 교정시스템과 환경이 미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의 수용인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많은 숫자를 유지해왔을까요? 미국의 수용인원이 이렇게 증가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숨어있을까요?

2-2) 수용인원의 증가 원인

미국은 원래부터 이렇게 많은 수용인원을 유지해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1970년대 초반에는 지속적인 수용인원 감소로 인해 교도소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범죄학자도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용인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형사정책 학자인 마크 마우어(Marc Mauer)에 따르면, 1972년 미국 교도소(State and Federal Prison)의 수용인원은 33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120만 명 이상의 수용 인원을 기록하며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나마 현재의 수치는 교정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워 가석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무려 140만 명을 육박하였습니다.

〈표 2〉 20세기 미국 연방· 주교도소 (State and Federal Prison) 수용인원 증가 추이(by Marc Mau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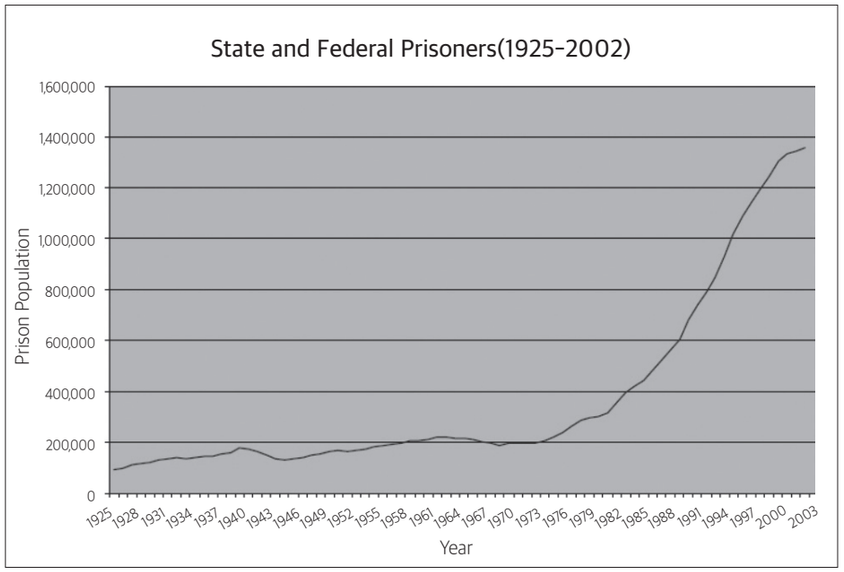

〈표 2〉의 그래프 추이만 확인해도 1970년대 중반까지 매우 완만한 수준의 수용인원이 유지되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970년 중반부터 세계 경제 강국인 미국도 버거워할 만큼의 수용인원 급증 추세가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범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살인 및 마약 범죄 등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전체수용인원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적인 예로, 1960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5.0명의 살인율이었지만, 1974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9.8명으로 거의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1970년대는 마약이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1980년에는 약 40,000명의 마약 관련 범죄자들이 교도소와 감옥에 수용되었으나, 이 수치는 2000년대 들어 약 450,000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수용 인원의 4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형사정책의 변화에 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닉슨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과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주를 이루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의무형 및 정해진 형량 선고로의 전환(shifting toward mandatory and determinate sentencing), 사법적 재량권의 제한(restrictions on judicial discretion), 그리고 교도소 수용을 선호하는 제재의 강조(a greater emphasis on imprisonment as a preferred sanction)는 정부, 언론, 학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책적 성역(聖域)이 되었습니다.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정책은 수십 년 동안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가 되어 쉽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다만 2000년대에 들어서 각 주는 범죄자 관리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교육 및 공공서비스를 제한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범죄자에 대한 격리와 강력한 대응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과밀수용이 위헌으로 판결된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교도소 신설이 주민 반대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과 비교하면 비교적 안정된 수용 환경과 수용인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급격한 수용인원 증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용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수용 관리 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2-3) 미국에는 '교도관 구하기' 가 하늘의 별따기?

미국에서 뉴스나 라디오를 듣다 보면 심심치 않게 교정 관련 뉴스가 나옵니다. 수백만 명이 수용되다 보니 각종 사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이슈는 수용자 관련 내용이 아닌 교도관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도관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내용이 아니라 바로 교도관을 채용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은 한국보다 교도관에 대한 처우나 사회적 인식이 조금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에 직면하고 대규모 사직으로 인해 국가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동기도 3년간의 교도관 생활을 청산하고 대학원생이 되었는데 졸업 이후에도 다시는 교도관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젊은 청년들은 교도관이 되기를 꺼려하고 있을까요?

우선 미국의 심각한 교도관채용 부족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표 3>을 살펴보면, 수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을 포함한 직원 수가 2019년 이후 약 10%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수용자 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2022년 현재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의 교도관 전체 인원은 최근 20년 사이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도관 수의 감소는 수용 인원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수용 관리를 위해 교도관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표 3> 교도관 채용인원 및 주 교도소 수용인원 비교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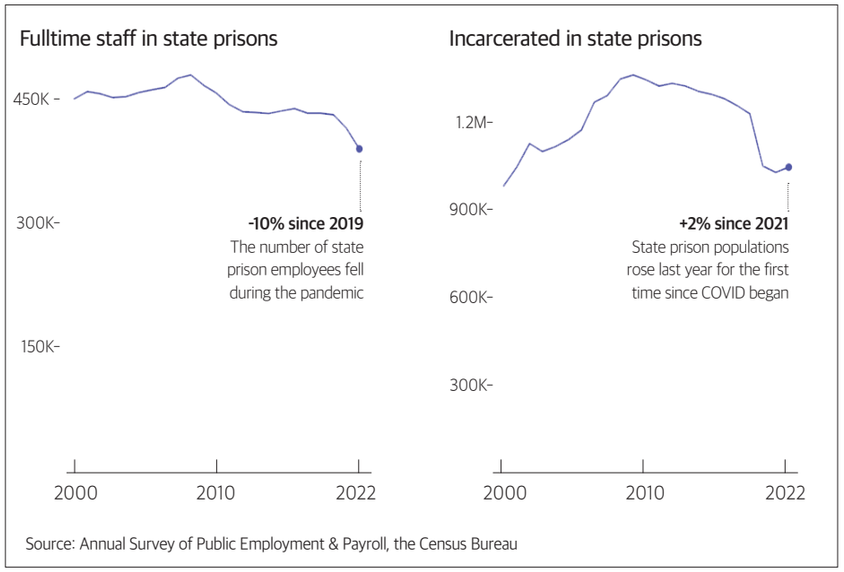

미국의 50개 주에서 운영되는 상당수의 교도소에서 교도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도관 부족 문제는 교도관의 복지와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조지아(Georgia)주의 스미스 교도소(Smith State Prison)에서는 직원 부족으로 인해 인원 파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71세의 수용자 안소니 조셉 지노(Anthony Joseph Zino)가 사망한지 5일만에 발견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교도관 부족으로 인한 수용관리 부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부 주(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플로리다(Florida), 뉴 엠프셔(New Hampshire))는 교도관 부족으로 국가 경비대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용관리를 보강한 사례가 있으며, 위스콘신(Wisconsin) 주에서는 교도관 부족으로 인해 수용자 이동이 전면 중지되어 접견과 교화 프로그램이 장기간 정지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주가 교도관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주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지아(Georgia)주와 아칸소(Arkansas)주는 각각 29%와 20% 교도관 감소를 보이는 등 다른 주에 비해서도 교도관 확보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2 > 미국 각 주별 교도관 부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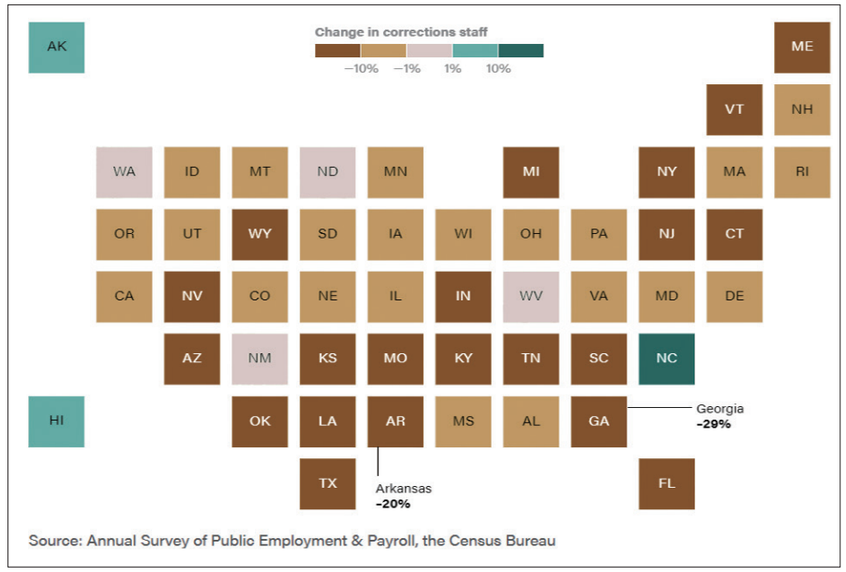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미국에서 교도관이란 직업이 인기가 없고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현재 미국에서는 교도관 뿐만 아니라 경찰관과 소방관 등 제복공무원 채용이 이전과 달리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교도관의 채용은 가장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가 다니는 대학원에서도 사진1처럼 전단지를 돌리며 경찰관, 교도관, 심지어 FBI에서도 직원 채용을 위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진 1 직원채용을 위한 홍보 전단지〉

특히 교도관 부족 상태가 심각한 조지아(Georgia)주는 취업연령대의 젊은 층에게 대규모 홍보 메일을 발송하거나 취업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페이스북을 포함한 소셜 미디어에서 꾸준한 채용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주리(Missouri) 주는 2017년 대비 급여를 40%나 인상하여 직원 부족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청년층에서 교도관이 인기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다양한 사건·사고의 증가 때문입니다. 일부 교도소에서는 전기가 끊기는 경우가 허다하고, 직원 부족으로 인해 신입 교도관이 최대 600명의 수용자를 혼자서 관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수용관리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미국에는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등 심각한 정신 질환을 가진 수용자의 숫자가 320,000명 이상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교도관 채용의 어려움은 기존 교도관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가져오며, 일부 주의 교도소는 수시로 2교대 운영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도관 부족은 직원복지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 교정과 교화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교도관의 이직을 줄이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과 노력이 있었지만, 과밀수용현상과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단기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교도관 부족 문제는 직원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직원 사기문제는 수용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국은 교도소의 근본적인 목표인 범죄자 재범 방지와 재사회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발생하는 교도관채용 문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2-4) 독거구금(Solitary Confinement)은 교도소에서 필요악일까 ?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자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현재의 수용인원은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더욱이, 과거 범죄와의 전쟁(The war on crime)과 마약과의 전쟁(The War on drug)으로 수용된 젊은 수용자들이 이제는 고령의 수용자로 변하면서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을 수용관리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 간의 폭행 및 직원에 대한 폭행사고 증가하여 일부 교도소는 형사문제로 인해 고소·고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교도소의 입장에서 정신질환 및 신체질환을 호소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수용자를 관리하는 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수용자를 독거수용하면서 처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이하 '처우제한 독거수용, Use of Restrictive Housing). 2015년 미 법무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 , BJS)은 전국의 교도소 및 감옥의 처우제한 독거수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체 미국의 수용인원 중 교도소(Federal & State Prison) 수용자의 약 20%와 카운티감옥(County Jail) 수용자의 18%가 지난 12개월 동안 처우제한 독거수용을 경험한 바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조사가 실시된 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년 동안 전체수용자의 20% 가까운 인원이 다른 수용자와 함께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얻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처우제한 독거수용의 비율이 높은 교도소 일수록 규율이 무너지고 수용자가 가지는 교도관 대한 신뢰가 낮았습니다. 또한, 폭력성향의 수용자와 다수의 범죄 경력을 가진 수용자의 비율도 높았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수용자의 비율이 더 높은 동시에 성소수자의 비율도 상당하였습니다.

〈표 4〉 처우제한 독거수용 이력이 있는 수용자의 특성*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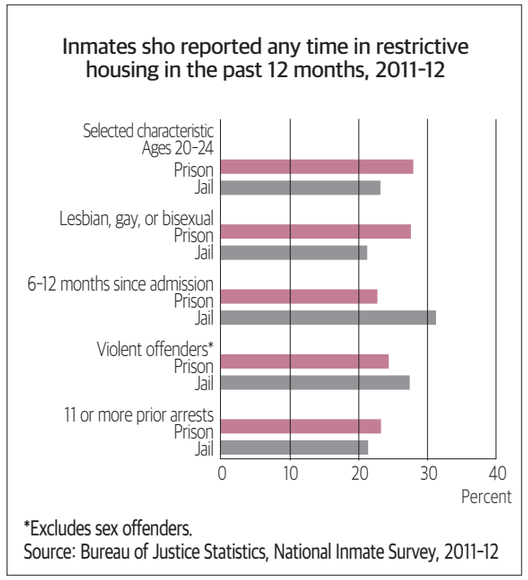

* 젊고, 성소수자이며. 학력이 낮은 동시에 폭력 전과가 있는 재범 이상의 수용자가 일반적인 수용자에 비해 처우제한 독거수용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사실 우리와 유사한 시설 구조로 되어 있는 미국의 교정시설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고 직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수용자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교도소에는 최소한의 수용관리를 위해 처우제한 독거수용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수용자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처우제한 독거수용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교도관들이 무력함을 호소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형사정책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가 처우제한 독거수용을 하는 경우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더욱 악화되며 결국 출소를 한 이후에도 직업을 구하거나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우제한 독거수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합니다. 또한 처우제한 독거 수용이 교도관들의 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시행되어 인권침해의 요소가 크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도관들의 입장에서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가 이뤄지지 않고 처우환경이 악화되는 실정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제한 독거수용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수용자에 처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우제한 독거수용의 문제점만 부각되는 상황이 교도관과 수용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상황으로 몰고 있습니다.

2-5) 교도소내 마약 반입 문제가 이 정도였어?

얼마전 텍사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느 텍사스 교도소에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던 수용자와 이를 도운 교도관 13명이 기소되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공범과 모의하여 마약 성분인 펜타닐이 묻어있는 종이를 편지처럼 위장하여 교도소 내부로 밀반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은 한 장당 $1,000에 다른 수용자에게 판매하여 총 $333,000의 부당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밀반입이 매우 흔해져서 택사스주에 위치한 교도소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한 기회로 학교에서 주최하는 마약 반입방지 워크숍을 참석하여 실제 교도소 내 마약반입 문제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2〉 미국 교도소장 대상 마약 반입방지 관련 워크숍

우선 텍사스 소재 교도소의 마약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과거와 달리 일부 조직폭력 수용자나 마약 수용자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까지도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에 중독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반입을 방지하고자 각 교도소 별로 마약반입방지전담팀을 구성하여 외부에서 반입되는 모든 종이에 대해서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한 워크숍의 목적이 각 교도소 별로 실시하는 마약반입금지전담팀의 운영에 통일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도소장들은 현재에도 직원부족 및 정신질환자 수용관리로 어려움

을 겪는 상황에서 마약반입 방지를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훈련을 실시하여 교도소 운영에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미국의 심각한 마약반입 관련 문제가 근시일 안에 우리의 교정현장에 나타날 확률은 미미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교도소의 마약류 사범의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2018년 1,329명에서 2022년 2,169명)하고 기존의 마약과 더불어 추적이 쉽지 않은 신종마약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은 걱정입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마약사범의 증가는 정신질환자의 증가 및 교정사고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선제적인 연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나가며

미국의 교정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밀수용현황, 과밀수용의 원인, 교도관 채용 문제, 처우제한 독거수용 논란 및 마약밀반입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거나 혹은 앞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여 활발한 논의를 펼치는 것은 의미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형사정책 전문가의 지적대로 교정관련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교정조직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 지금 미국

교정현장의 어려움을 초래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가장 변화된 생각은 우리의 교정시스템과 수용관리 역량이 개선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느 나라 못지않게 뛰어나며 안정된 수용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 보다는 자긍심으로 가지고 변화를 도모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되는 동시에 더 많은 선후배 교도관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 봅니다.

참고문헌

National correctional statistic year book. (2023). Korea Ministry of Justice, Korea Correctional Service. https://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103/subview.do?enc

유병철. (2012). 우리나라 교도소 행형의 연원 (淵源). 교정연구, 56, 229-264

Kang-Brown, J., Montagnet, C., & Heiss, J. (2023). People in Jail and Prison in 2020. The Vera.

Mauer, M. (2003). Comparative international rates of incarceration: An examination of causes and trends presented to the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The Sentencing Project, 1, 1-16.

the Mashall Project (2024). New Data Shows How Dire the Prison Staffing Shortage Really Is. https://www.themarshallproject.org/2024/01/10/prison-correctional-officer-shortage-overtime-data

The Atlanta Journal Constitution(April 19, 2024) EXCLUSIVE: Days pass before Georgia prison notices decomposing body of inmate, https://www.ajc.com/news/investigations/days-pass-before-georgia-prison-notices-decomposing-body-of-inmate/S4GSG4NCKBBKNDTGC3D5EXVOI4/

Torrey, E. F., Kennard, A. D., Eslinger, D., Lamb, R., & Pavle, J. (2010). More mentally ill persons are in jails and prisons than hospitals: A survey of the states. Arlington, VA: Treatment Advocacy Center, 1-18.

Beck, A. J. (2015). Use of restrictive housing in US prisons and jails, 2011-12.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23.

Frost, N. A., & Monteiro, C. E. (2016). Administrative segregation in US prisons. Restrictive housing in the US: Issues,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1-48.

Arrigo, B. A., & Bullock, J. L. (2008).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solitary confinement on prisoners in supermax units: Reviewing what we know and recommending what should change.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2(6), 622-640.

San Antonio News (Dce 19,2023) . 13 indicted for $300K Texas prison drug smuggling ring. https://www.mysanantonio.com/news/local/article/texas-prison-drug-smuggling-18563825.php

교정본부 N / E / W / S

교정본부장, 서산지소 정책현장 방문

일시·장소 8. 1.(목) 10:00, 서산지소
주요 내용 기관 운영 및 하절기 수용관리 실태 점검 등

폭염 대비 수용관리 철저 재강조 지시 시달

추진 배경 전국적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 발생 등 교정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주요 내용
- 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 집중 관리
- 폭염 대비 수용관리 특별 대책 이행 철저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등

교정본부장, 제56회 '백석쿰캠프' 행사 참석

일시·장소 8. 1.(목) 14:00, 백석대학교(천안)
주요 내용 전국 아동 복지시설 및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대상 인성교육 캠프 '백석쿰캠프*' 참석

* 1998년부터 개최/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인성교육, 진로 비전 개발을 위한 취업역량 개발 지원 캠프

24년 7월 우수 수사관 및 정보관 증서 수여식

일시·장소 8. 30.(금), 교정본부장실
주요 내용 우수 수사관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 교위 공영일
우수 정보관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 교위 박제현

교정기관 N / E / W / S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박소영

차세대 KICS(교정) 서울청 직원 대상 교육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8월 20일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차세대 KICS) 운영에 대비하여 서울지방교정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차세대 KICS)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서울구치소 / 교위 임완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참관 시행

서울구치소는 8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신임 위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의료과와 진료실, 약제실 등 의료시설을 중점적으로 참관하였으며 참여 위원들은 서울구치소 의료처우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안양교도소 / 교도 현민준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안양교도소는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협력하여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안양교도소 직원들은 자발적인 헌혈 운동 참여를 통하여 반복되는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고 이웃 사랑과 고귀한 생명나눔을 실천했다.

수원구치소 / 교사 안태진

창룡도서관과 교도관 문화생활 지원 업무협약

수원구치소는 교도관 문화생활 지원 등을 위해 8월 24일 수원시립 창룡도서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현우 소장은 "독서 증진을 통해 교도관들의 자기 계발은 물론 수용자 삶의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인도네시아 교정 공무원 대표단 참관 시행

서울동부구치소는 8월 2일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우호증진 및 스마트 경비 시스템 운영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교정 공무원 대표단에 대한 시설 참관을 실시했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찾아가는 공공부문 통일교육 실시

인천구치소는 8월 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찾아가는 공공부문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통일교육원의 윤효영 강사는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민의 끊임없는 관심이 있어야 통일에 한발 다가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이준구

수용자 문화예술 교화예술 교회공연 개최

서울남부구치소는 8월 12일 교정협의회의 후원으로 평양 민속예술단과 수용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화공연을 개최했다. 평양 민속예술단은 이날 북한의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반갑습니다', '찔레꽃'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사 심우현

을지연습 드론 침투 실제 훈련 시행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8월 20일 을지연습 2일 차에 외부 정문을 배경으로 드론 침투 대응 및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인근 유관기관인 군부대와 경찰관서와 협력하여 적 특작부대의 침투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하였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한창우

의정부교도소 교정협의회 생수 68,000병 기부

의정부교도소 교정협의회 및 각 교화분과 위원회에서 수용자 교정사고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총 7차례 생수 68,000병을 기부했다. 기부된 생수는 여름철 수용자의 더위를 시키는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여주교도소 / 교사 남형인

국제사이버대학교 참관

8월 9일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여주교도소 참관을 했다. 학생들은 수용동은 물론 장애인 재활센터와 작업 동을 참관하며 여주교도소 수용자들의 생활 여건을 확인했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실시 중인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김재현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원장 등 참관 시행

서울남부교도소는 8월 13일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원장 및 직원들의 참관을 진행했다. 박은숙 연수원장과 그 일행은 인쇄, 패션비즈니스, 플라스틱창호 · 청소, 웹툰 등 직업훈련시설을 참관했다. 참관 후 직업훈련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위한 대화를 진행했다.

춘천교도소 / 교도 박상혁

직원 대상 음주운전 가상 체험 시행

춘천교도소는 8월 30일 도로교통공단 소속의 외부 강사를 초빙해 '음주운전 고글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체험은 직원들이 음주상태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특수고글을 착용하는 등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깨닫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원주교도소 / 교위 천병훈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업무협약 체결

원주교도소는 8월 8일 혹서기 수형자 영상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원주영상미디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8월 한 달 동안 총 9회에 걸쳐 원주교도소 대강당에서 수형자들에게 영화 상영을 시행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채동용

24년 제4기 석방 전 교육

강릉교도소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한국보호복지공단 이정애 등 5명의 외부 강사를 초빙해 제4기 석방 전 교육을 했다. 석방 전 교육을 통해 형기 종료, 가석방 등 출소예정자에게 사회복귀 지원 안내와 신용관리 및 금융 관련 상담을 하고, 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 안내 등의 교육을 했다.

영월교도소 / 교사 김준일

진로 체험 교육 협의회 개최

영월교도소는 8월 14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진로 체험 교육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진로 체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개최하였으며, 영월교도소, 영월농업기술센터, KOICA 글로벌 인재개발원 등 우수기관의 발표도 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성명제

혹서기 수용자 생수 기증 행사

강원북부교도소는 8월 8일 원각사로부터 생수 3,000개 및 빙과류 600개를 기증받았다. 속초시 원각사 설혜 스님은 "이번 기증으로 수용자들도 자신들의 과오를 참회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박세영

중앙통제실 현대화사업 준공행사

평택지소는 8월 8일 2층 중앙통제실과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통제실 현대화사업 준공행사를 진행했다. 기존의 중앙통제실 설비가 노후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최신의 카메라 및 설비로 교체하였고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여 완벽한 감시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소망교도소 총무과 / 주임교도관 박성호

소망교도소 전환관리팀, 시각 장애인 쉼터 '심청이골' 환경정화 봉사활동

교정기관 N / E / W / S

여주 소망교도소 수용자들이 8월 13일 시각 장애인 쉼터 '심청이골'을 찾아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앞으로도 소망교도소는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태도

을지연습 연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8월 22일 '2024 을지연습'과 연계해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했다. 이번 민방위 훈련은 공습 대비 훈련으로, 적의 공습이나 미사일 발사 등 공격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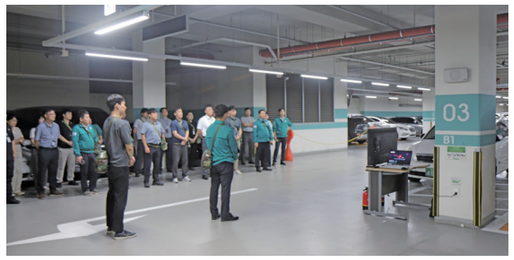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전시 교정 행정 교류 국군교도소 참관 시행

대구교도소는 8월 22일 국군교도소장 등 5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2024년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전시 상황에서 국군교도소와의 업무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현대화된 교정시설의 홍보를 위해 마련되었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외부 인권 강사 초청,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부산구치소는 8월 5일 건전한 직장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정은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을 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문현배

광복절 맞이 추념 행사 신돌석 장군 유적지 방문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8월 14일 광복절을 맞아 신돌석 장군 유적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최진규 소장 및 각 부서장과 7월 29일 신규 임용된 직원이 함께하여 추념 행사의 의의를 높였다.

창원교도소 / 교위 김난희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와 장유엠아이병원 생수 2만 병 기증

창원교도소는 8월 13일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와 장유 엠아이병원으로부터 생수 2만 병을 기증받았다. 윤순풍 소장은 "수용자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정협의회와 신정호 이사장에게 감사드리며,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산교도소 / 교위 고병우

수용자 검정고시 응시

부산교도소는 8월 8일 부산교도소 고사장에서 2024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실시했다. 중졸 검정고시 3명, 고졸 검정고시 4명 등 총 7명의 수용자가 시험에 응시하였다. 제1회 검정고시에서는 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예병웅

포항지원 형사재판부 교정시설 참관

포항교도소는 8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판사 및 실무관 등 6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연근

진주교도소 을지연습 연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시행

진주교도소는 8월 22일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화재진압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소방장비 사용법을 숙달하는 등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교정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구구치소 / 교사 곽재원

대구가정법원 수강명령 대상자 참관

대구구치소에서는 8월 9일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2명과 가정법원 수강명령 대상자 9명의 참관을 했다. 한 참관자는 "수용자들의 생활모습을 보고 나니, 저의 지난 행동을 다시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양혁모

반부패·청렴 실행 결의대회 개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8월 5일부터 12일까지 2024년 반부패·청렴 실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반부패·청렴 실행 결의대회를 통해 직원들은 청렴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였다.

안동교도소 / 교도 이성규

안동교도소 교정연합회 생수 기증

안동교도소는 8월 2일 교정연합회로부터 생수 10,000개를 기부받았다. 윤영주 소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을 통해 수용자 교정교화에 더 힘쓸 수 있게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박승수

아이스크림 기부 행사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8월 6일 ㈜하나레이저로부터 아이스크림 530개를 기부받았다. 이영성 소장은 "무더운 날씨에 수용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게 되어 교정교화에 도움이 되었다. 교도관들도 수용자 교정교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송상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대상 참관 시행

김천소년교도소는 8월 13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구미·김천지역협의회 선도위원 및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교정 행정의 투명성과 관내 기소유예 청소년들의 준법정신 함양 및 경각심 일깨우기 위해 실시됐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채원기

자체 소방 훈련 시행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8월 22일 자체 소방 훈련을 했다. 이날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직원들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하였다. 이후 직원들은 강평을 통해 소방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드론 테러 대응 유관기관 합동 방호 훈련 시행

울산구치소는 8월 21일 울산구치소 내 드론 테러 발생을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방호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울산구치소와 울주군청, 제7765부대 1대대, 울주경찰서 등 5개의 유관기관이 참가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김선영

천주교 대구대교구 교정사목후원회, 생수 기증

경주교도소는 8월 23일 천주교 대구대교구 교정사목후원회로부터 생수 4,800병을 기증받아 수용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대구대교구 김선희 종교위원은 "무더위에 지쳐있는 수용자들이 시원한 생수를 마시며 잠시라도 더위를 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통영구치소 / 교위 이성민

국제로터리 통영·고성지역 생수 등 기증 및 참관 참여

통영구치소는 8월 8일 국제로터리 통영·고성지역으로부터 생수 5,000병, 아이스크림 700개를 기증받고, 이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의 참관 순서는 교정 홍보영상 시

교정기관 N / E / W / S

청, 현황 청취, 시설 참관, 직원 식당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밀양구치소 / 교위 김영근

밀양구치소 교정협의회, 혹서기 수용자 물품 기부

밀양구치소는 8월 1일 교정협의회로부터 팥빙수 및 멸균우유 600인분을 기증받았다. 밀양구치소는 교정협의회의 도움으로 수용자들에게 무더위 해소 및 교정교화의 목적으로 빙과류를 제공하였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을지연습 테러·화재 대응훈련 시행

상주교도소는 8월 20일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을지연습 테러·화재 대응훈련을 했다. 테러로 인한 교정기관 시설물 파괴 및 화재, 다수의 사상자 발생을 주제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고, 자체 소방훈련도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거창구치소 / 교도 전종일

유관기관 통합 방호 훈련 시행

국가중요시설인 거창구치소는 8월 21일 유관기관과 통합 방호 훈련을 실시했다. 테러 등 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방호태세를 갖추기 위한 귀중한 훈련 시간이 되었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헌도

생명나눔 단체 헌혈 시행

대전지방교정청은 8월 23일 대전·세종·충남 혈액원과 함께 "생명나눔 단체 헌혈"을 진행했다.이번 단체 헌혈 행사는 혈액 수급에 차질이 생긴 시기에 혈액원의 요청을 받아 대전지방교정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되었다.

대전교도소 / 교위 송인혁

우리 동네 수호자 참관 행사

대전교도소는 8월 5일 우리 동네 수호자 대원 등을 대상으로 소내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은 제복 근무자 감사캠페인의 일환으로, 수호자 대원들이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직접 체험해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청주교도소 / 교사 신동우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 참관 시행

청주교도소는 8월 1일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등 11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을 통해 교정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2024년 충북 도시농업 사업'의 교도소 연계 방안에 대해 협의 후, 향후 농업 기술 지도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천안교도소 / 교도 김지현

언론매체(세계일보) 방문 취재

8월 23일 세계일보 사회부 유경민 기자가 천안교도소를 방문 취재했다. 이날 교정시설 과밀 수용에 따른 수용관리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시설 참관 후 직원들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이지은

드론 테러 대비 합동훈련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8월 20일 「2024년 을지연습」의 실제 훈련으로 국가중요시설 드론 테러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합동훈련에는 청주여자교도소를 포함하여 충북경찰청 경찰특공대, 청주상당경찰서, 제2161부대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했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커피 프린세스와 함께하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행사

공주교도소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보안청사 2층 휴게실에서 커피 동호회(커피 프린세스)와 함께 직원과 민원인에게 커피를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여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앞장섰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적극 행정교육 시행

충주구치소는 8월 13일 인사혁신처 최영범 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적극 행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홍성교도소/ 교도 이병훈

사랑의 헌혈 시행

홍성교도소는 8월 23일 사랑의 헌혈 운동을 했다. 헌혈 운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사랑과 봉사의 작은 실천으로 우리 가족, 친지의 생명을 구할 큰일이 될 수도 있다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사 구자호

2024년 을지연습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2024년 을지연습을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실시했다. 비상 대비훈련을 통해 전 직원이 국가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였다.

서산지소 / 교위 박효진

혹서기 맞이 교정협의회 기부금품 접수

서산지소는 8월 14일 혹서기를 맞이하여 기부금품 전달식을 했다. 서산지소 교정협의회는 생수 3,000개와 아이스크림 360개를 기증했다. 송재열 소장은 "기부 물품들이 수용자들에게 좋은 의미로 쓰일 것이며, 교정협의회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총무계 교도 전웅배

2024년 을지연습 실시

논산지소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했다. 이날 논산지소는 자체 통제반, 상황실, 실시부를 편성하여 연습에 임했고, 각종 상황에 대한 도상 훈련 및 강경119안전센터와의 합동 소방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진행했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장우영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교육 시행

광주지방교정청은 8월 1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사례를 토대로 기록물 평가, 이관, 폐기 절차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었고, 질의응답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교도소 / 교위 장우영

기부 행사 진행

광주교도소는 8월 8일 (주)가나다 대표(최정학 대표)로부터 삼계닭 2,200마리를 기부받았다. 최정학 대표는 "이번 기부를 통해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건강하고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2024년 을지연습 유관기관 합동 실제 훈련 시행

전주교도소는 8월 19일 2024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국가 중요시설 대상 테러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직원이 인질로 잡힌 상황을 가정하여 이를 구출하고 진압하는 훈련을 통해 테러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수용자 물품 기증

순천교도소는 8월 16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얼음 생수 8,000병

교정기관 N / E / W / S

을 기증받았다. 기증품은 수용자의 여름철 건강관리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수용자에게 전달됐다. 조병주 소장은 "생수 기증에 감사드리며, 무더위에 힘들어하는 수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관

유관기관 합동 테러 대응훈련 시행

목포교도소는 8월 20일 육군8332부대 1대대, 일로파출소, 일로119안전센터와 함께 테러 대응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을지연습과 연계한 실제 훈련으로 차량 테러에 대응해 화재진화, 범인 체포, 방호 지원 등 비상 상황 시 유관기관 간 방호 지원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이었다.

군산교도소 / 교사 윤나리

군산교도소 기독교 분과위원회 생수 기부

군산교도소는 8월 6일 군산교도소 기독교 분과위원회(드림교회·성광교회·중동교회)로부터 생수 10,000개를 기부받았다. 정진우 소장은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제주교도소 / 교도 부혁진

제주교도소-제주감귤농협조합, 농촌일손 제공 업무협약

제주교도소는 부족한 농촌 근로 인력 지원과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 적응을 위해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과 농촌일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및 외부 통근작업을 체결했다. 제주교도소는 모범수형자들을 선정해 10월부터 외부 통근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흥교도소 / 교위 윤창열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생수, 아이스크림 지원

장흥교도소는 8월 12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생수 1만 3천 병과 아이스크림 1천2백 개를 지원받았다. 장흥교도소 최국진 소장은 "우리 소는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 관리 등 폭염대비 수용관리에 힘 쏟고 있다며, 이번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수민

신규직원 임용식

해남교도소는 7월 29일 사무 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직원 임용식을 진행했다. 이번 신규 임용 대상은 교도 시보 5명(한이석, 김영서, 엄현식, 김명근, 김선록)이며 임용장 전달과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정읍교도소 / 교도 박준현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기부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는 8월 9일 정읍교도소에 생수 17,000개와 아이스크림 1,200개를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시원한 생수와 아이스크림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이 뜨거운 여름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원활히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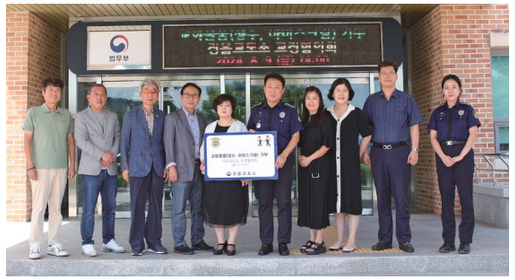

모범 공무원

인천구치소 교감 김철한

김철한 교감은 지난 28년여간 적극적인 직무수행으로 수용질서 확립 및 교정사고 방지, 원활한 출정·민원 업무수행 등 교정 행정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 업무 중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적극적인 근무로 수용자 교정 교화 및 교정 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부산교도소 교사 석동환

석동환 교사는 가스 주입을 위해 방문한 주유소 직원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주유소 직원은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의식을 찾고 회복 중으로 석동환 교사는 공직자로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무관리를 철저히 해 수용자들의 선거권 보장과 행사에 크게 이바지했다.

논산지소 교위 이후진

이후진 교위는 중앙통제실 근무자로부터 '영상계호 중인 수용자가 바닥에 무언가를 갈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즉시 수용동팀에 보고 후 직접 거실 검사를 하여 모포 사이에 숨겨둔 길이 약 8cm의 원통형 쇠막대를 발견하는 등 교정사고를 미리 방지했다. 또한 신입 및 상고 수용자의 신상 파악을 통하여 지속적인 상담 및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수용자 고충해소와 안정적인 수용 생활을 유도함으로써 수용질서 확립 및 수용자 교정 교화에 기여했다.

장흥교도소 교사 김두환

김두환 교사는 복지과 물품·피복 담당 근무자로, 물품 예산 집행에 있어 적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 피복 관련 문의에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처하는 등 교정 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선·후배들의 화합에 앞장서고 있으며, 적극적인 업무처리 및 봉사 정신으로 항상 솔선수범하면서 웃는 얼굴로 직장 분위기 조성에 크게 이바지했다.

숨은 그림 찾기

최대한 집중해야 찾을 수 있는 숨은 그림 찾기!

익숙한 시선으로 그림을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물건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두뇌 발달과 함께 창의력을 키우기에 좋은 숨은 그림 찾기에 도전해 보세요.

아래 그림을 찾아보세요!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correct2023@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퀴즈 당첨자 선물 커피 기프티콘 1만 원권 발송

찾아라!
올여름
최고의
센스는?

냉방 할 때는 문을 꼭 닫기!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도 준수하기!
안쓰는 제품 플러그 뽑기!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

온도주의

PROUD MEMBER OF ENERGY SENSE CAMPAIGN

에너지센스,
우리 모두
함께 해볼까요!